# 각종 지정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이 상 윤



# 각종 지정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이 상 윤

# 각종 지정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br>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of Various Designation Systems 

연구자 : 이상윤(부연구위원)<br>Lee, Sang-Yoon

$$
\text { 2012. 10. } 31 .
$$



## I. 배경 및 목적

$\square$ 사인에 의한 행정의 일환으로 현행법상 채택되고 행정권한 의 민간위탁의 방식, 특히 "지정기관"에 의한 행정이라는 법령차원의 현상에 관한 행정법적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되 어 왔음
$\square$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러한 지정기관의 활동적•기능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법학에서는 지정기관에 대한 통제•감독 및 국민의 권 리구제 등에 관해서는 소홀하게 취급해 왔음
$\square$ 이로부터 이 연구에서는 현행 법령상 다양하게 존재하는 지 정제도 중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특히 조사•검사•검정•관 리 등을 위한 지정기관제도의 입법유형적 체계의 특징과 현 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ㅍ. 주요내용

$\square$ 제 2 장에서는 현행법령상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지 정제도의 입법현황을 살펴보고, 지정의 법적 성격별로 유형 화하여 그 특징 및 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정제도의 유형적 다양성 및 지정기관제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음
$\square$ 제 3 장에서는 지정기관제도를 개관한 후, 지정기관제도에 관한 입법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지정기관제도의 입법구조 를 분석하여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지정기관제도의 특징 및 지정기관에 의한 행정의 법률문제를 살펴보았음
$\square$ 제 4 장에서는 제 3 장에서 고찰한 현행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전체적 현황, 유형별 특징 및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의 제도적 개선방안 및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III. 기대효과

$\square$ 이와 같이 현행법상 지정기관제도를 유형적으로 체계화한 후, 일정한 공통원리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 은 일반국민은 물론 법집행 공무원의 행정법령에 대한 이 해도의 제고와 법의 예측가능성의 확보 및 법치주의의 확 립에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음
$\square$ 또한 지정기관제도에 관한 법제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법학 적 측면에서 행해질 이론적 토론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음
$\square$ 끝으로 이 연구는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방식으로서 지정지 관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제 입안 및 심사의 참고자료 및 종 합적인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음

주제어 : 지정, 지정제도, 지정기관, 지정기관제도, 민간위탁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square$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o the private sector is a system adopted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as a way of administration by private persons. This legislative phenomenon, in particular, administration through designated institutions as been raising a number of administrative law issues.
$\square$ Yet, despite dynamic and functional significance of designated institutions, which have direct relevance to citizens' rights and obligations, issues such as control and supervision over and remedy for the violation of citizens' rights by designated institutions have so far been neglected in the study of administrative law.
$\square$ Therefore, among various designation systems existing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this study analyzes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of and problems in the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o the private sector, in particular, the designatedinstitution system for survey, inspection, certification and management, etc., by their legislative natures, and proposes ways to improve legislation for the system.

## П. Main Content

$\square$ Chapter 2 discusses current legislation regarding various designation systems, categorizes them by legal nature of designation and examines their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and, by doing so, attempts to understand diversity of the types of designation systems and relationship with the designated-institution system.
$\square$ Chapter 3 gives an overview of and examines current legislation regarding the designated-institution system. Also, by analyzing legislative structure of major designated-institution systems, this chapter derives common elements and, based thereon, examines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ated-institution system and legal issues regarding administration through designated institutions.
$\square$ On the basis of the examination in Chapter 3 on overall status and characteristics by types of and problems in the designated-institution system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Chapter 4 proposes ways to improve the system of designated institutions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and to improve legislation for the system.

## III. Expected Effects

$\square$ Proposing ways to improve the designated-institution system based on the structural categorization of the designated-institution system and the common principles derived therefrom can be highly significant for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of administrative law among not only citizens and but also public servants who enforce law, for predictability of law and for the rule of law.
$\square$ Furthermore, the legislative analysis of the designated-institution system in this study may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future jurisprudential discussions.
$\square$ Finally, this study may also serve as reference materials in drafting and reviewing bills for introduction of the designatedinstitution system as a way of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base materials for proposing ways to achieve overall improvement.

2 Key Words : Designation, Designation System, Designated Institution, Private Assignment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5
제 1 장 서 론 ..... 13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제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7
제 2 장 현행법상 지정제도의 전체현황 ..... 21
제 1 절 개 관 ..... 21
제 2 절 허가 • 인가 • 특허로서의 지정 ..... 23

1. 허가로서의 지정 ..... 23
2. 인가로서의 지정 ..... 27
3. 특허로서의 지정 ..... 30
4. 검 토 ..... 33
제 3 절 행정업무 부여로서의 지정 ..... 34
5. 행정관청 의제로서의 지정 ..... 34
6. 대행 - 위탁 - 이양으로서의 지정 ..... 36
7. 검 토 ..... 40
제4 절 지정제도의 기타 입법례 ..... 42
8. 공용제한으로서의 지정 ..... 42
9. 지원 • 육성 대상선정을 위한 지정 ..... 46
10. 규제대상선정을 위한 지정 ..... 48
11. 부관적 성격의 지정 ..... 50
제 5 절 지정기관제도와의 접점 ..... 52
제 3 장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분석 ..... 55
제 1 절 지정기관제도의 개관 ..... 55
12. 지정기관의 의의와 동향 ..... 55
13. 지정기관의 제도적 근거 ..... 56
제 2 절 지정기관제도의 현황 ..... 60
14. 개 관 ..... 60
15. 지정검사•검정 • 인증기관의 현황 ..... 74
16. 지정시험•조사•평가기관의 현황 ..... 104
17. 지정교육•전문•관리기관의 현황 ..... 118
18. 지정기관에 관한 기타 입법현황 ..... 132
제 3 절 지정기관제도의 특징 ..... 142
19. 지정기관의 지정 ..... 142
20. 지정기관의 의무 ..... 147
21. 지정기관의 감독 ..... 149
22. 수수료 및 벌칙 ..... 153
제 4 장 현행 지정기관제도의 개선방안 ..... 157
제 1 절 지정기관제도의 법률문제 ..... 157
23. 행정청과 지정기관의 관계 ..... 157
24. 지정기관과 국민의 관계 ..... 161
25. 지정기관의 헌법적 한계 ..... 165
제 2 절 지정기관제도의 개선과제 ..... 167
26. 개 관 ..... 167
27. 업무의 중립성과 투명성 확보 ..... 168
28. 권리구제와 수익자부담의 고려 ..... 170
29. 행정의 종합성과 유연성 강화 ..... 171
제 3 절 지정기관제도의 개선방안 ..... 173
30. 개 관 ..... 173
31. 지정목적의 명확화 ..... 173
32. 지정요건의 구체화 ..... 178
33. 지정취소의 객관화 ..... 185
제 5 장 결 론 ..... 199
참 고 문 헌 ..... 201
《부 록》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 209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행정의 복잡다기화 및 전문기술화에 따라 최근 행정법령에는 다양 한 행정행위의 형식이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정제도 의 경우, 관련입법의 유형적 다양화에 따라 전통적인 행정행위의 형 식에 해당하는 허가의 성격을 가지는 담배소매인의 지정(담배사업법 제 16 조)과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별정우체국의 지정(별정우체 국법 제3조) 외에도,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독점규제 및 공정개래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사용후 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원자력 법 제 35 제 2 항) 등 유사한 형태의 지정제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제도의 법적 성격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라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 등과 함께 민원사무의 일 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제2조 제2항 제1호), ${ }^{2}$ ) 현행 법령상의 유형 및 구조가 복잡-다양하여 이를 일괄적•일의적으로 민원사무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행정작용의 하 나로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정의 의의나 법적 성격 및 입법 구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 }^{3)}$

[^0]한편, 1980년대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치 적으로는 관료제의 기능적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정 부조직의 축소 및 행정의 간소화를 통한 재정위기의 타파가 주요한 과제로 등장함으로써, 민간에 대한 행정권한의 위탁이라는 방안이 제 시되었다. 이와 같이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의 실현과 정 부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충족할 수 있는 각광 받는 제도로 등장하였 으며,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특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행정작용의 경우 민간이 참여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의 행정참여에 대한 진입장벽 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최근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법령상 실제적으로는 인•허가와 유사한 구조를 취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인•허가라는 용어 대신 지정 또는 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서도 지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현재의 행정법현상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일반적 인 행정담당주체 외의 사인이 그러한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 행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행정에 있어서 이러한 행정행위의 형식적 다양화 현상은 "私人에 의한 행정"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는 사인에 대한 행정권한의 위탁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행정권한 의 민간위탁의 경우 행정권한의 "위탁"이 아닌 "지정"의 형식을 활용 하여 행정기능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지정의 성격은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근거법령인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093호, 2012.9.7, 일부개정)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1]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서는＂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적인 관계가 없는 사무＂（비권력적 행정행위）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이러한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단순사실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의 결과가 법률적 판단과 결합되어 바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 리－의무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은 행정의 사화（私化）또는 민간화로 표 현되는 사인에 의한 공행정의 수행이라는 시대적 흐름，국민의 권 리•의무와의 관계성 등을 고려하면，공법학에서의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에 해당하지만，지금까지 총론적•이론적 연구가 중심이 되어 왔 으며，현행법령에 기초한 각론적•실무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4） 또한 현행 법령상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지정에 의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지정대상 및 업무범위 등이 일관성 없이 법률，대통령령，부령에 산만하게 흩어 져 규정되어 있다．이러한 지정기관제도에 관한 산만한 규정체계로 인하여 일반국민은 물론 해당 공무원도 지정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 기 어려운 상황이며，법령을 입안•심사할 때에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입법례의 유형적 체계화를 위한 현행법령의 분석이 현안과제로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사인에 의한 행정의 일환으로 현행법상 채택되고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의 방식，특히＂지정기관＂에 의한 행정이라는 법 령차원의 현상에 관한 행정법적 문제 또는 과제에 대하여는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다．5）여기에서 말하는＂지정기관＂이란＂행정기관으로부터

[^2]지정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특정한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하는 사인 (법인•단체 등)" ${ }^{6}$ )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법령상 지정을 받은 검사 기관, 검정기관, 시험기관 등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 어는 행정법상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행 법령상 대다수의 규정 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검사•검증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행정법현상이라 하겠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러한 지정기관의 활동적•기능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행정법학에서는 지정기관에 대한 통제•감독 및 국민의 권리구 제 등에 관해서는 소홀하게 취급해 온 것이 현실이다. 바로 여기에 각종 지정제도 중 지정기관제도라는 행정법현상에 관한 연구의 필요 성이 있는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현행 법령상 다양하게 존재하는 지정제도 중 행정권 한의 민간위탁, 특히 조사•검사•검정•관리 등을 위한 지정기관제 도의 입법유형적 체계의 특징과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 2 장에서는 지정기관에 의한 행정이라는 행정법현상에 관한 법리를 현행법령상 규정하고 지 정제도의 다양성과 지정기관제도의 관련성, 지정기관제도의 법적 근

사인(私人)에 의한 행정의 한계와 신장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4, 99-117면 등을 들 수 있다.
6) 위임되는 대상이 권한인지 사무인지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논리적 차원을 달리한 다. 논리적으로는 행정담당단체가 담당하는 업무가 사무이며, 특정기관에 대한 그 사무의 담당할당과 그에 필요한 수단(행정처분, 계역체결, 지도의 실시 등)의 승인 이 행해진 경우에 그 담당자의 기관으로서의 활동범위와 내용이 결정되나, 그 범위 와 내용을 권한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기서는 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 무의 귀속은 원래 행정기관 그대로로서 그 실시권한만이 지정기관으로 이동되는 것으로서 파악한다. 환언하면 이러한 정의는 예컨대,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나 그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되는 사무이며, 사무의 귀속자체가 이동되는 것이 아니다.

거와 한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 3 장에서는 현행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전체적 현황, 유형별 특징 및 문제점을 전수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제 3 장에서 분석한 결 과를 기초로 지정기관제도에 관한 현행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현행법상 지정기관제도를 유형적으로 체계화한 후, 일정한 공통원리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국민은 물론 법집행 공무원의 행정법령에 대한 이해도의 제고와 법의 예측가 능성의 확보 및 법치주의의 확립에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정기관제도에 관한 법제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법학적 측면에서 행해질 이론적 토론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으로 이 연구는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방식으로서 지정지관제도의 도 입을 위한 법제 입안 및 심사의 참고자료 및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 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일반적•사전적 의미의 지정이란 "여럿 가운데에서 하나만을 가려 내어 정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법제처의 법령용어 한영사전에 서는 "appointment, designation"으로 사용되고 있다.7) 현행 법령상 "지 정"이라는 용어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2012년 1월 9일 현재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8)에서 "지정"이라는 용 어로 검색한 경우, 시행예정 법령을 포함하여 총 3,190 건의 법령과 13,015 개의 조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정
7) 법제처, 법령용어한영사전, 2008,360 면.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http://www.law.go.kr/main.html).

에 관한 입법례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권한의 위 탁이라는 법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을 추출한 후, 그것을 유형적으로 체계화하고, 대표적인 법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감사원 등의 헌법기관 소관법률과 행정업무의 특수성을 가 지는 행정안전부와 통일부 및 국가정보원 등의 소관법률을 제외한 법 령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201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시행예정 법령이 있는 경우에 는 시행예정 법령을 대상으로 한다.

##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우선 관련법령을 전수조사하는 법령전수조연구방법 론을 채용하여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입법례 를 분석하여 유형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한다. 또한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령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 존에 행해진 연구성과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문헌조사연구방법론을 채 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제도의 도입연역 및 운영현황 에 관하여 각 부처 담당관계자와의 면담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실 태조사연구방법론도 병행하여 채용하였다. 나아가 관련 전문가회의(부 처공무원, 학계 등) 개최, 유관기관 정책간담회 개최, 워크숍 및 전문 가회의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연구보고서의 실무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서술한 연구의 방법과 주요내용 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연구의 방법과 주요내용

| 연 구방법 | 주 요내용 |
| :---: | :---: |
| 법령전수조사연구 | ㅇ지정제도 관련법령의 전수조사를 통한 입법례의 유형 화•체계화 |
| 문헌조사연구 | - 현행법제(법률, 명령 등) 분석 <br> - 관련제도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판례 분석 |
| 실태조사연구 | - 제도도입 관련 입법연혁 및 국회심의경과 회의록의 분석 - 각 부처 담당관계자와의 면담 및 의견수렴 등 |
|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 등 개최 | - 관련 전문가회의(부처공무원, 학계 등) 개최 <br> - 유관기관 정책간담회 개최 <br> - 워크솝 및 전문가회의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 으로써 연구보고서의 실무적 가치 제고 |

## 제 2 장 현행법상 지정제도의 전체현황

## 제 1 절 개 관

현재 지정제도는 다양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전수조사 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입법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허가•인가•특허로서의 지정, 즉 일정한 영업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지정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허가•인 가•특허 등의 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둘째, 행정업무 부여 로서의 지정, 즉 행정청이 지정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업무를 하 게하는 경우이다. 셋째, 지원•육성 대상선정으로서의 지정, 즉 행정 청이 일정한 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육성 대상자를 지정 하는 경우이다. 넷째, 규제대상 선정으로서의 지정, 즉 행정청이 일정 한 자를 규제하기 위하여 규제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공용제한으로서의 지정, 즉 국가가 도시계획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 역 또는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지정제도의 대표적인 입 법유형을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으며, 이에 기초하여 이하에서는 각 입법유형별 주요 입법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2】지정제도의 입법유형

| 입법유형 | 주요 입법례 |
| :---: | :---: |
| 허가 • 인가 • 특허로 <br> 서의 지정 | 암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영업허가) <br>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른 별 정우체국의 지정(공법 <br> 상 계약, 지정해지 조항의 삭제에 따라 영업허가와 유 <br> 사하게 운용) |


| 입법유형 | 주요 입법례 |
|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 - 운영자의 지 정(공적 인증, 인가) <br> 관세법 제 327 조의 2 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사업자의 지정(공적 인증, 인가) |
|  | - 원자력안전법 제 35 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 자의 지정(특허) <br>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13 조에 따른 민 간투자사업 시행자의 지정(공기업 특허) |
| 행정업무 부여로서의 지정 | - 공직선거법 제 161 조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지정(한정 적인 공적 임무의 부여, 인적 권리능력 부여라는 의미 에서의 지정) <br> - 도로교통법 제 104 조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행정청의 의제) <br> 계량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행정청의 의제) <br> - 보훈기금법 제 4 조의 2 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행정업무의 대행, 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 정한 행위를 허용하는 의미에서의 지정) <br>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35 조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행정업무의 대행) <br> - 지방공기업법 제 33 조에 따른 출납 및 현금의 보관 업 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지정(업무의 위탁) - 산업표준화법 제 13 조에 따른 광공업품 또는 서비스 의 한국산업표준에 대한 적합성 인증기관의 지정(업 무의 이양) |
| 공용제한으로서의 지정 | - 지하수법 제 12 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 온천법 제 5 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br>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


| 입법유형 | 주요 입법례 |
| :---: | :---: |
| 지원 • 육성대상 <br> 선정으로서의 지정 | 운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 <br> 문예술단체의 지정 <br> 오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도서대상의 지정 |
| 규제대상 <br> 선정으로서의 지정 |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 <br> 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

## 제 2 절 허가•인가•특허로서의 지정

## 1. 허가로서의 지정

## (1) 담배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1988. 12. 31 제정, 법률 제4065호)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이다. 즉, 담배사업법 제 16 조에서는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 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제2항).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 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에게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제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고 있 다(제4항). 담배사업법 제17조에서는 소매인 지정의 취소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 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 하거나 60 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 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 준 및 절차 등에 필요상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 다(제3항). 담배사업법 제 22 조의 3 에서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 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호), 제 27 조의 3 에서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1호).

이러한 담배사업법에 따른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은 재정허가의 일종으로 설명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서, 법령규정형식도 허가제도와 유사하다.9) 담배사업법의 제정으로 담배전매법이 폐지되고, 담배사업 이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업 허가제도가 도입되어 담배인삼공사의 독점적 담배제 조가 해소됨으로써,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이 조성되었으나, 제조 담배소매인의 지정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현행법상의 제조담 배소매인 지정제도는 과거 국공영사업이라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게 권리를 부여하였던 법적 성격이 상당부분 완화됨으로써, 금지의 해제, 즉 순수한 제조담배소매 허가제도의 법적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 }^{10)}$ 그러 나 담배소매의 영업권을 지정인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금
9) 이와 같이 허가라는 용어가 아닌 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담배사 업이 독점적 국영사업이라는 점에서 민간사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허가와 구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공영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특허라는 용어를 사용 할 수 있었으나, 제도담배소매인은 담배사업의 독점경영에 있어 판매부분의 일부 기능만 담당할 뿐이므로 포괄적 경영권의 수여라는 의미에서의 특허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임병수, 지정제도(1996), 65-66면.
10) 오준근, 지정제도(2002), 16-17면 참조.

지의 해제와 다르며, 이러한 점에서 단순 허가와는 다른 권리부여로서 의 성격을 일부 가지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 하고 있다.

| 지정내용 |  | 담배소매인의 지정(담배사업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적 <br> 성격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ㅇㅓㅓㅁㅜ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허가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 (2) 별정우체국의 지정

별정우체국법(1961. 8. 17 제정, 법률 제683호)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이다. 즉, 별정우체국법 제 3 조에서는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 려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 은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제2항), 이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기 3 개월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 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제3항). 여기에서 말하는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은 20 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등이다(제3조의2). 피지 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 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조의3). 별정우체국법 제 15 조 에서는 지정의 취소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피지정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나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 개월 전에 고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 15 조의 2 ).

별정우체국법상 별정우체국의 지정은 공법상 계약의 일종으로 설명 되고 있는 것으로서, 법령규정형식상 허가제도와는 피지정인에게 해지 권이 법률상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허가제도에서도 피지 정인은 지정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는 경우, 폐업신고만 하면 지정 사업의 영위를 장래에 향하여 포기할 수 있으나, 공법상 계약형태의 지정에서는 피지정인에게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해지권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1998년 12월 30 일 이러한 별정우체국 지정 의 해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던 별정우체국법 제 14 조가 삭제됨으로 써,11)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많이 희석되었다. 현행법상 별정우체국의 지정제도는 오히려 별정우체국 영업허가제도와 유사하 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단순한 영업허가제도와 다른 것은 별정우체국의 영업에 관한 행정청의 독점적 권리를 민간업자에게 이 양하고, 그에게 일정한 영업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 지정내용 |  | 별정우체국의 지정(별정우체국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법적 } \\ & \text { 성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허가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11) 삭제된 제 14 조(별정우체국의 해지)에서는 피지정인이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6 개 월 이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 그 업무를 인수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또한 지정해지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에 그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할 수 없으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 고 있다(제3항).

## 2. 인가로서의 지정

## (1)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 • 운영자의 지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전 부개정, 법률 제763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 운영자의 지정이다. 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 한 법률 제 24 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 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 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자로 하고 있다(제2항). 부동산거래정모망 설치•운영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 도록 하고 있다(제3항). 부동산거래정모망 설치 - 운영자는 중개업자로 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 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 떠한 방법으로든지 중개업자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없 도록 하고 있다(제4항). 또한 지정의 취소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은 경우, 위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제5항),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6항). 그 밖에 부동산거래정모망 설치•운영 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8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거래 정보망의 지정제도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하 여 지정된 자가 공신력을 가지고 정보망을 운영하여 중개대상물에 관 한 정보를 일반에게 신속하게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지 정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대하여 공적으로 인증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지정에 해당하며, 이러한 구조는 행정법학상의 인가 제도와 유사하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 및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하되, 그 사업자에게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자임을 지정하여 공신력 을 부여하고, 그 영업능력 또는 합법성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정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반인에게 기관•단체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형식을 통하여 지정 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지정내용 |  |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운영자의 지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 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법적 } \\ & \text { 성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공무원 <br> 의제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인가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관세법(1949. 11. 23 제정, 법률 제67호; 2011. 12. 31 일부개정, 법률 제 11121 호)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이다. 즉, 관세법 제 327 조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기초하여 제 327 조의 2 에서는 관세청장에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

영하기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 즉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1항). 또한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항). 관세청장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 망 운영사업에 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고 있다(제7항). 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도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기관•단체 등을 지정형식을 통하여 지정함 으로써, 공적으로 인증하는 의미를 가지며, 행정법학에서의 인가제도 와 유사하다.

| 지정내용 |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관세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법적 } \\ & \text { 성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시명칭 <br> 시용금지 | 벌칙 |
| 인가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3) 지정통계의 지정

통계법(1962. 1. 15 제정, 법률 제 980 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이다. 즉, 통계법 제17조에서는 통계청장에게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 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등에 해당하는 통계 를 지정통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또한 통계의 지정요건으 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

한 통계,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 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를 규정하고 있다(제1항). 이러한 지정요건 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통계청장에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또한 통계청장에 대하여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 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 3 항), 지정통 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이 지정통계의 지정 또한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통계를 지정형식을 통하여 지정함으로써, 공적 으로 인증하는 의미를 가진다.

| 지정내용 |  | 지정통계의 지정(통계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적 | 지정 | 지정 | 수행 | 지정 | 기준 | 취소 | 청문 | 업무 | 지도 | 승게 | 해지 | 공무원 | 유사명칭 | 벌칙 |
| 성격 | 주체 | 목적 | 업무 | 요건 | 위임 | 근거 | 고시 | 정지 | 감독 | 승게 | 해지 | 의제 | 사용금지 | 빌칙 |
| 인가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3. 특허로서의 지정

(1) 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자의 지정

원자력안전법(2011. 7. 25 제정, 법률 제10911호)에 따른 사용후핵연 료 처리사업자의 지정이다. 즉, 원자력안전법 제 35 조에서는 사용후핵 연료 처리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 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 관리규정,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 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 출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원자력안전법 제36조에서는 지정의 기준

으로서, ${ }^{12)}$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 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 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등을 들 고 있다. 또한 지정을 받은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검사결과 일정한 경우 핵연료주기사업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제37조). 원자력안전법 제38조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 년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지정을 취 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01조).

이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 35 조에서는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제도 와 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자의 지정제도를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또는 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제도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의 지정제도가 단순한 영업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사업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독점사업의 영역에 해당하며, 특정한 시설과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영역 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사업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정내용 |  | 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자의 지정(원자력안전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적 <br> 성격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특허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12) 이 지정의 조건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제99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지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일부개정, 법률 제7386호)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지정이다. 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서는 주무관청에게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 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 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계획 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제 5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에서는 주무관청에 대하 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으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 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9조).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에게는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 거나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제62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 지 정제도는 민간법인이나 단체 등에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인정함으 로써, 공공사업의 시행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행하는 지정으로서, 공기 업특허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가진다. 다만, 공기업특허와 다른 점은 공기업특허가 공기업의 계속적 경영권을 부여하는 것임에 대하여, 이 경우의 사업시행자 지정제도는 일회적 공공사업의 시행권을 부여함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특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 해 주는 행정행위로서 특허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해당 지역 또는 분

야의 경제활동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되는 반면, 특허권자 외의 자에게는 진입이 금지되는 강력한 규제수단에 해당하 게 된다. ${ }^{13)}$

| 지정내용 |  |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  |  |  |  |  | 지정(사회기반시설에 |  |  |  | 대한 민간투자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법적 } \\ & \text { 성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특허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 4. 검 토

첫째, 인가로서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 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제도,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제도,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제도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대하여 공적으로 인증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이러한 지정은 일정한 법률효과는 발생시키지 않고, 단순히 일반인에게 기 관•단체의 선택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한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의 형식을 통하여 지정하는 것이 다. 결국 이러한 지정은 공증행위로서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법률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임•임직원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 정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특허로서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 13 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지정제도는 민간법인이나

[^3]단체 등에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시행 권을 부여하는 의미의 지정으로서, 공기업 특허와 유사한 법적 성격 을 가진다. 다만, 공기업특허가 공기업의 계속적 경영권을 부여하는 것임에 대하여, 이 경우의 사업자 지정제도는 일회적 공공사업 시행 권을 부여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안에 실시계획을 신청하지 않은 때에 지정의 효력이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구체적인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 35 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자의 지정제도는 공기업특허에 해당하며, 이를 영업허가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것은 일정한 영업의 개시를 허용하는 의미에서 행하는 지정을 의미 하며, 이러한 지정을 받지 않고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 영업허 가와 같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있고, 국가독점사업을 대상 으로 하는 것도 아니어서, 일반적 영업허가와 그 법적 성격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제 3 절 행정업무 부여로서의 지정

## 1. 행정관청 의제로서의 지정

## (1)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도로교통법(1961. 12. 31 제정, 법률 제941호)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 문학원의 지정이다. 즉, 도로교통법 제104조에서는 지방경찰청장에 대 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등록된 학원으로서 일정한 기 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 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지정할 수 없는 학원 도 규정하고 있다(제 2 항). 이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동차운전 전문학 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3항). 또한 도로 교통법 제 113 조에서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항), 이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14조).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 고 있다(제 117 조 제 3 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기능 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 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각각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 118 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 150 조에서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08조 제5항에 따른 수료증 또는 졸업증 을 발급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제5호).

이러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은 행정권한을 직접적으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정한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기관이 한 행위를 사실상 행정관청이 한 행위로 보 도록 함으로써, 지정기관을 사실상 행정관청으로 의제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 운전면허의 기능검정을 수행하고, 기능 검정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할 경우, 행정청이 기능검정을 한 것과 동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 학원의 학감, 부학감, 기능검정원, 강사 등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은 특정업무영역에서 행정기관의 의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

| 지정내용 |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도로교통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법적 } \\ & \text { 성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특허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2) 형식승인기관 등의 지정

계량에 관한 법률(2000. 1. 21 전부개정, 법률 제619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승인기관 등의 지정이다. 즉, 계량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서 는 계량기의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하는 기관, 즉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정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 여 계량기를 검정하는 기관, 즉 검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1조). 그리고 실량표시 오차의 적합성 확인업무를 전문적•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적합성 확인 업무를 하는 기관, 즉 적 합성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이러한 기관 의 지정은 행정권한을 직접적으로 위탁 또는 대행시키는 것은 아니지 만, 일정기관을 지정하고 지정기관이 한 행위를 사실상 행정관청이 한 행위로 보게 되는, 즉 행정관청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검사•검정 등의 비권력적 업무에 한정하여 행하는 지며, 사실상 업 무위탁과 유사한 측면도 있다.

| 지정내용 |  | 형식승인기관 등의 지정(계량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법적 } \\ & \text { 성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특허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 2. 대행•위탁•이양으로서의 지정

## (1) 기부금품모집기관의 지정

보훈기금법(1981. 3. 27 제정, 법률 제3400호)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기관의 지정이다. 즉, 보훈기금법 제 4 조의 2 에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같은 법 제 3 조 제 2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 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기부 금품 모집기관의 지정요건 및 모집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 보훈기금법이 규정하고 있 는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제도는 행정업무를 대행할 기관을 설립 하고, 이 기관에 행정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보 훈기금의 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법인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기관이 보훈기금에 납입할 기부금품을 모집하 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은 바로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에 관하여 공무원이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제도는 행정업무의 대행제도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이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도 본질적으로는 영업허가와 다 를 바 없으나, 지정사업자 또는 지정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일반적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 또는 단체와 구별된다.

| 지정내용 |  |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보훈기금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법적 } \\ & \text { 성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허가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2)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제정, 법률 제9774호) 상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이다. 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 제 35 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판매망•기술인력•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수로도서지 판매를 대 행하는 자, 즉 판매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수

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들 수 있다(제3항).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판매대행업자가 일정 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항). 이 수로도시 지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은 행정기관에서 행하여야 할 업무를 민간기 관 등에 대리하여 행하게 하려는 경우, 즉 행정업무의 대행기관을 정 하는 의미를 가진다.

| 지정내용 |  |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법적 } \\ & \text { 성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지정 요건 | 기준 <br> 위임 | 취소 <br> 근거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공법상 <br> 계약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3) 현금출납사무 대행기관의 지정

지방공기업법(1969. 1. 29 제정, 법률 제2101호)에 따른 현금출납사 무 대행기관의 지정이다. 즉, 지방공기업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직 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하지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 업 업무의 관리•집행에 필요한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 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 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1 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회사 등의 지정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제3항), 관리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금융회사가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상황 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정금융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4항). 이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하는 현금출납사무를 대행할 금융기관 등의 지정제도는 행정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민간기 관 등에 위탁하여 행하려는 때에 그 위탁대상기관을 미리 정해둘 필 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지정이다. 이 경우의 지정은 행정법상 위탁 이 아니라, 민법상 위탁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권한의 이전효과는 발 생하지 않고, 사법상 위탁계약에서 승낙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청약 또는 지정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 에서 다른 지정제도와 차이가 있다.

| 지정내용 |  | 현금출납사무 대행기관의 지정(지방공기업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법적 } \\ & \text { 성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지정 목적 | 수행 업무 | 지정 요건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공무원 <br> 의 <br> 제 | 유사명칭 사용금지 | 벌칙 |
| 공법상 <br> 계약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4) 한국산업표준 적합성 인증기관의 지정

산업표준화법(1992. 12. 8 전부개정, 법률 제4528호)에 따른 한국산 업표준 적합성 인증기관의 지정이다. 즉, 산업표준화법 제 13 조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 업품(가공기술을 포함)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 하는 기관, 즉 한국산업표준 적합성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적합성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사무소 및 인증심사 원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제2 항). 지식경제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 적합성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 우,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도록 하 고 있다(제3항). 이와 함께 산업표준화법 제14조에서는 지식경제부장

관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또한 제36조 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 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러한 산업표준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공업품(가공기술 포함) 또 는 서비스의 한국산업표준 적합성을 인증하는 기관, 즉 인증기관의 지정제도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식경제부장관의 업 무 중 특정한 업무를 지정한 기관에 이양하는 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행하여야 할 업무를 민간기관 등에 이양하여 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기관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도 상대방의 지정청약 또는 지정신청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다른 지 정제도와 차이가 있다.

| 지정내용 |  | 한국산업표준 적합성 인증기관의 지정(산업표준화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법적 } \\ & \text { 성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지정 요건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공법상 계약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3. 검 토

첫째, 행정관청 의제로서의 지정과에 관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 104 조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은 행정권한을 직접적으로 위탁 또는 대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기관이 한 행위를 사실상 행정관청이 한 행위로 봄으로써, 지정기관을 사실상

행정관청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정제도의 경우, 행 정권한은 행정기관에 배분하고, 이를 이전시킬 때에는 위임이나 위탁 의 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 조직법 원리와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조직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권한위탁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부득이하게 이러한 지정제도를 두는 경우에도 지정기관은 사실상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 므로, 지정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감독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 세하게 규정하여 행정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3 항 등에서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업무의 휴•폐지신고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정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 118 조의 예와 같이 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공무원 의제규정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행정업무 대행으로서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서, 보훈기금법 제 4조의 2 에 따른 기부금품 보집기관의 지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35 조에 따른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은 행정기관 이 행하여야 할 업무를 민간기관 등에 대리하여 행하게 하려는 때에 그 대행기관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지정이다. 이 경우,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없으나,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같이 지정요건 등을 법령으로 정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필요도 있을 것이다.

셋째, 행정업무 위탁으로서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 33 조에 따른 현금출납업무 대행기관의 지정은 행정기관에서 행하여야 할 업무 중 비권력적 - 일상반복적인 업무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려는 때에 그 위탁대상기관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 우에 행하는 지정을 말한다．이러한 경우 그 지정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를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지방공기업법과 같이 지방 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위탁대상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다만，이 경우에도 지정의 구체적인 절차•방 법 등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르기 때문에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제 4 절 지정제도의 기타 입법례

## 1．공용제한으로서의 지정

## （1）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온천법（1981．3． 2 제정，법률 제 3377 호）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이다．즉，온천법 제5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일정한 규모 미만의 온 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온천원（溫泉源）이 고갈된 경우，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 졌다고 인정되는 경우，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 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온천 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항）．이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제6항）．이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은 일정한 지역 등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법상 제한을 가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공용제한으로 볼 수 있다.

| 지정내용 |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온천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법적 } \\ & \text { 성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공용 <br> 제한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 (2)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지하수법(1993. 12. 10 제정, 법률 제4599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다. 즉, 지하수법 제12조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수의 보 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 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 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 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또한 같은 조에서는 시•도 지사가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였을 경우, 지 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하고 있다(제5항).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 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지하수의 보 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을 시•도 지사로 하여금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항). 이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7항).

이와 관련하여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제 12 조의 2 ),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제 13 조) 등을 두고 있다. 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도 일정 한 지역 등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법상 제한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용제한이라는 법적 성격을 가진다.

| 지정내용 |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지하수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법적 } \\ & \text { 성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공무원 의제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공용 <br> 제한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3) 문화재호보구역의 지정

문화재보호법(1962. 1. 10 제정, 법률 제961호)에 따른 문화재보호구 역의 지정이다. 즉,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서는 문화재청장에게 보물 및 국보, 명승•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를 지정할 때, 문화재 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1 항). 또한 제 28 조에서는 문화재청 장이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제1항). 또한 제 31 조에서는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 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항), 고시 및 통지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고 있다 (제5항).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구역을 지 정하면, 각종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그 소유자가 토지의 현상변경 또는 개발 등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가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지정의 법적 성격은 행정처분 에 해당한다. 즉,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은 그 대상지역 내 토지소유 자에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소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며, ${ }^{14)}$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이 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 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은 행정법상 이른바 공 용제한 중 부작위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다.

| 지정내용 |  |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문화재보호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적 <br> 성격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취소 <br> 근거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공용 <br> 제한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4) 검 토

공용제한으로서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온천법 제 5 조 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지하수법 제 12 조에 따른 지하수보전 구역의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 27 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은 일정한 지역 등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법상 제한을 가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공용제한으로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공용제한으로서의 지정이 있으면, 예컨대 지정된 토지의 경우, 그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14)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 누 6986 판결(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에서는 " $\cdots \cdots$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 및 의무부담을 규정하고 있는 등 보호 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제한 또는 의무부담을 주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용제한으로서의 지정에서는 지정의 기준• 절차가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고, 지정의 해 제와 고시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 2. 지원 - 육성 대상선정을 위한 지정

## (1) 전문예술법인 - 단체의 지정

문화예술진흥법(1972. 8. 14 제정, 법률 제2337호)에 따른 전문예술 법인 - 단체의 지정이다. 즉, 문화예술진흥법 제 7 조에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시•도에 한정)에게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즉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를 지정하여 지원•육 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전문 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제3 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 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예술활동 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 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항). 그 밖 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7항).

이와 같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의 지정제도는 법률상 지정의 대상에 관한 특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 원•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공권력 행사로서의 지정이라고 하기 보다는 육성•조성 관계법률에서 지원•육성•조성 대상기관•단체를 미리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이다. 이러한 지원•육성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은 앞에서 살펴본 행 정청이 일정한 영업주체에 대하여 허가•인가•특허 등의 영업권한을 부여하면서 행정청이 종래 가지고 있었던 독점적인 영업분야를 민간 사업자가 하도록 하거나, 행정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위탁하 는 경우의 지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즉, 자생적인 영업능력과 관 계없이 특정한 기관이 존속하고, 그 활동을 계속하며, 발전시킬 수 있 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지원•육성의 대상기관을 선정 하기 위한 지정이기 때문이다.

| 지정내용 |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문화예술진흥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적 <br> 성격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사실 <br> 행위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2)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도서개발 촉진법(1986. 12. 31 제정, 법률 제3923호)에 따른 개발대상 도서의 지정이다. 즉,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으 로 하여금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신청에 기초하여 같은 법 제 14 조에 따른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5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발대상도서를 지정한

경우, 개발목표, 개발도서 및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사업의 개요, 개발 사업의 시행기간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개발 촉진법상 개발대 상도서의 지정 또한 전형적인 공권력 행사로서의 지정이라고 하기 보 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도서를 미리 정하는 경 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 지정내용 |  | 개발대상도서의 지정(도서개발 촉진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적 <br> 성격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사실 <br> 행위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3) 검 토

지원•육성대상선정을 위한 지정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 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 른 개발대상도서의 지정은 전형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지정이라기 보다는 육성•조성 관계법률에서 육성•조성의 대상이 되는 기관•단 체를 미리 정하는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서, 지정에 관하여는 고시 외 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 3. 규제대상선정을 위한 지정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0. 12. 31 제정, 법률 제3320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은 대표적인 규 제대상선정을 위한 것으로서, 지정된 자를 규제하기 위한 일종의 행 정명령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진다.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즉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고, 이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 고 있다(제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게는 같은 법 제9조(상호 출자의 금지 등), 제 10 조의 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 11 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제 13 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공정거래위 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항).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은 법적용대상자를 상황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정하기 위하여 법적용대상자의 범위를 개별처분의 형식으로 정하고, 이를 관계인에 게 통지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이 경우 지정의 법적 성격은 하명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술한 허가•인가•특허로서의 지정, 행정 업무 부여로서의 지정, 지원•육성대상선정을 위한 지정과는 달리, 각 종 금지사항과 감독조치가 주를 이루는 유형으로서, 법적용대상자로 정하여 공법상 제한을 가하기 위한 의미로서의 지정, 즉 규제대상선 정을 위한 지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결국 이것은 국가의 특별한 감시 가 필요한 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특별한 규제를 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 지정내용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적 <br> 성격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지정 요건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ㅇㅓㅓㅁㅜ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공무원 의제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하명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 (2) 검 토

규제대상선정을 위한 지정과 관련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은 법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법적용대상자를 상 황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정하기 위하여 법적용대상자의 범위를 개별 처분의 형식으로 정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지정의 법적 성격은 하명에 가깝다고 하겠다. 다만, 공법상 제한을 위한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가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 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법률관계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위하여 이러한 유형의 입법유형은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부관적 성격의 지정

## (1) 근무지의 지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1994. 1. 7 제정, 법률 제4715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근무지의 지정을 들 수 있다. 즉,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 5 조에서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같은 법 제4조 제 2 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익근무요원과 국제협력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국가•지역 및 기관, 즉 근무지를 지정하여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또한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 여금 국제협력요원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 도록 하고 있다(제2항). 종사명령과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이 근무지의 지정은 행정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원래의 행정처분에 부가 하여 발하는 지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의 법적 성격은 원 처분의 법률효과를 일부 제한하거나 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부관적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지정내용 |  | 근무지의 지정(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법적 } \\ & \text { 성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공무원 의제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특허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2) 납세지의 지정

소득세법(1949. 7. 15 제정, 법률 제33호)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을 들 수 있다. 즉, 소득세법 제9조에서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 청장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 한 경우, 그 밖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같은 법 제6조부터 제8조 까지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납세 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위 거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 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 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 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장은 그 취지를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 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또한 위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 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이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 의 지정도 행정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원래의 행 정처분에 부가하여 발하는 부관적 성격의 지정을 의미하고 있다.

| 지정내용 |  | 납세지의 지정(소득세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법적 } \\ & \text { 성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지정 요건 | 기준 <br> 위임 | $\begin{array}{\|l\|} \hline \text { 취소 } \\ \text { 근거 } \end{array}$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공무원 의제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하명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3) 검 토

부관적 성격의 지정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 5 조에 따른 근무지의 지정,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은 원처분의 법률 효과를 일부 제한하거나 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부관적 성격을 가지 는 것으로서, 독자적인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입법례도 납세지의 지정을 제외하고는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근무관계 설정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지정에 관한 입법유형의 분석에 있어서 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 제 5 절 지정기관제도와의 접점

이상에서는 현행법상 지정제도에 전체적 입법현황을 살펴보고, 그 유형의 다양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규제대상 선정으로서의 지정, 공용제한으로서의 지정, 부관적 성격의 지정을 제 외하고는 지정의 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대하여 공적으로 인증하거나 행정관청으로 의제하는 경우, 민간법인이나 단체 등에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지 원•육성 등의 대상이 되는 기관•단체를 미리 정하는 경우, 행정업 무를 민간기관 등에 대리 또는 위탁하는 경우 등, 지정의 형식을 통 하여 일정한 요건•기준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즉, 각각의 법적 성격이 다른 허가•인가•특허로서의 지정, 업무위탁•대리로서의 지정, 지원•육성 등의 대상선정을 위한 지정

등에 의하여 다양한 지정기관이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령 상 지정기관에 관한 개별적 요건•기준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령상 다양한 지정기관제도가 규정•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독일의 사인에 의한 행정이나 일본의 지정기관에 의한 행정, 특히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이라는 현상이 우리 나라에서도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태로 행정사무의 수행을 사인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현행법령상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위탁제도와 지정기관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위탁제도는 기본적으로 국• 공유재산의 관리사무 등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 는 사무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에 비하여, 지정기관제도의 경우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특히 전형적인 행정처분으 로 볼 수 있는 권한을 사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지정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크 다는 점, 법적 통제가 필요한 행정처분이라는 활동을 사인이 행한다 는 점 등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하에 서는 행정현상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현행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지정 기관제도에 한정하여, 그 의의와 입법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 펴보기로 한다.

## 제 3 장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분석

## 제 1 절 지정기관제도의 개관

## 1. 지정기관의 의의와 동향

(1) 지정기관의 의의

지정기관이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 일반화된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은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 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법리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성격상 행정권한의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행정권 한의 민간대행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즉, 지정기관이라는 것은 현행 법령상의 용어로서, 조사•시험실시•증명사무•검정사무 등과 같은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무에 관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자를 지정하 여 그 사무를 행하도록 하고, 지정을 받은 자를 법령상의 행하는 사 무의 종류에 대응하여 검사기관, 검정기관, 시험기관, 증명기관 등으 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정기관 이란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 계되지 않는 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자(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를 지정하여 위탁•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의 총칭으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지정기관의 동향

전술한 바와 같이 지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단순 집행적인 서비스의 제공,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연구•조사 및 검정,

공공시설이나 장비 등의 운영•관리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다만, 현행 지정제도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지정기관의 활동은 검사활동과 자격시험활동 등이 주요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검사를 받는 기업 등 국민, 시험을 받 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그 작용도 금지(규제)의 해제를 유보한 일반적 금지(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많으며, 권력적인 규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국민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에는 검사, 시험 등에서 등록, 강습, 확인, 차량의 이동보관, 전문적 판단분석, 자 격증교부, 계량기의 교정 등과 같이 지정기관의 활동이 다양화•확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지정기관의 활동에 있어서 검 사•검정, 자격시험, 자격의 등록 등의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 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나, 이러한 활동의 규정방식에 있어서는 지정 기관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2. 지정기관의 제도적 근거

## (1)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민간위탁에 대한 확립된 학문적 정의는 없으나, 전술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093호, 2012.9.7, 일부개정, 이 하 "위임-위탁규정"이라 함)에서는 민간위탁을 "각종 법률에 규정되 어 있는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제2조 제3호). 이 위임•위탁규정의 모법 에 해당하고,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에 따 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3항). 이와는 별도로 지방 자치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 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4조 제3항). 이와 같이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에 기초하 여, 법령상 지정이라는 형태를 취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지 정기관에게 행정권한을 위탁하고 있는 것이다.

## (2) 민간위탁의 대상범위

민간위탁의 대상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에서는 조사•검사•검정•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대상을 이른바 행정작용법상 비권력적 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위임 • 위탁규정에서는 구체적인 민간위탁이 가 능한 사무로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 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를 예시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업무 처리지침에서도, 단순 집행적인 서비스 제공,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연구•조사 및 검정기 능, 공공시설이나 장비 등의 운영•관리기능, 외부자원 활용으로 서비 스 향상 및 비용절감이 기대되는 분야, 급속히 발달하는 기술•기능 등의 습득이 필요한 사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 무, 협업 기능 및 생산•제작 기능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서비스 작용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위탁의 대상범위에 대하여는 "국민의 권리 및 자유와 의 관련성"이 한계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상당히 제한적이라 하겠다.

이로부터 다만,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민간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 는 민간위탁의 대상범위 및 범위설정기준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법령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공권력의 작용까지 민 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필요성을 더 욱 증가하게 된다. 여하튼 이러한 민간위탁의 개념 및 한계는 지정을 통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지정기관제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에서, 지정기관제도의 검토에서도 법적 근거 및 업무의 범위를 설정 함에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 민간위탁의 유사개념

첫째,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서 술한 민간위탁의 근거법령 및 대상법위에 관한 규정에서는 위임과 위 탁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위임•위탁규정 제2조에는 "위임"을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 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제1호)으로, "위탁"을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 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제2호)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전술 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의 경우는 "각종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 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제3호). 이러한 위임 및 위탁은 특정한 기능 또는 권한 이 행정기관 간에 완전히 이전되는 "이양"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특

정한 기능 또는 권한의 일부를 필요에 따라 하급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민간기관에 맡겨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대행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행정권한의 대행이란 민간위탁에 의해 사인에게 행정 권 행사를 사실상 독립적으로 행하는 권한이 주어지지만, 위탁기관의 권한이 법적으로는 이전되지 않는 경우로 이해되고 있다. ${ }^{15 \text { ) 실정법에 }}$ 서는 권한의 대행방식이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주로 행정기관이 권 한을 그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 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방식,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으로 권 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는 본래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행 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방식은 사실 상 민간위탁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 후자의 방식은 권한의 대리와 같이 사용되어 민간위탁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이 자기 의 이름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탁과 다르지 않은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 }^{16)}$ 또한 실정법상 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권한의 대행이 아니라 위탁인 경우도 흔히 나타 나고 있다.

## (4) 민간위탁의 방식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은 법률에 의해 권한의 주체를 대외적으로 변 경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권한을 위탁할 경우 국민이 알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를 두게 된다.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은 법
15) 예컨대, 도로교통법 제 36 조 제 1 항이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 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16) 김승열, 정부업무 민간위탁의 한계와 공정성 확보방안, 월간 법제 2000년 9월호, 59-60면 참조.

정위탁과 계약위탁 또는 지정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정위탁은 위탁되는 사무와 수탁자를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계약위탁 또는 지정위탁은 법령에 위탁의 근거를 두고 이에 근거하여 행정기관과 수 탁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행정기관이 수탁자를 지정함으로써 성 립하는 민간위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법정위탁과 계약위탁•지정 위탁은 법령에 위임 - 위탁이라는 제목의 조문을 설치하여 민간에 위 탁할 사무의 종류와 수탁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 하여 지정에 의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의 경우, 위임 • 위탁이라는 조 문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별규정에 기초하여 지정된 지정기관으로 하여금 행정권한을 위탁•대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일반 적인 민간위탁의 방식에서 벗어난 유형이라 하겠다.

## 제 2 절 지정기관제도의 현항

## 1. 개 관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소관 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4 건의 법령에서 8 개의 지정기관을, 교육과학기 술부 소관의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등 5 건의 법령에서 5 개의 지정기관 을, 국토해양부 소관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률 등 25 건 법령에서 40 개의 지정기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김 치산업 진흥법 등 26 건 법령에서 39 개의 지정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7 건의 법령에서 10 개의 지정기관을, 보건복지부 소관의 식품위생법 등 22 건의 법령에서 27 개의 지정기관 을, 지식경제부 소관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20 개의 법령에서 39 개의 지정기관을, 환경부 소관의 대기환경보전법 등 13 건의 법령에서 17 개의 지정기관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도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

원회, 기상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통계청, 해양 경찰청의 소관법령에서 다수의 지정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 행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관은 총 223 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소관부처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7)}$

【표-3】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현황

| 순 번 | 법 령 명 | 조 항 | 지정기관 | 소관부처 |
| :---: | :---: | :---: | :---: | :---: |
| 1 | 산업안전보건법 | §34 | 안전인증기관 | 고용노동부 <br> (총 8건) |
| 2 |  | §36 | 안전검사기관 |  |
| 3 |  | §36의 2 | 지정검사기관 |  |
| 4 |  | §38의 2 | 석면조사기관 |  |
| 5 |  | §49 | 안전 - 보건진단기관 |  |
| 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 § 27 의 2 | 고용업무 대행기관 |  |
| 7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 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5 | 건강진단기관 |  |
| 8 | 자격기본법 | §17 | 민간자 격등록관리 기관 |  |
| 9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기획관리전문기관 | 교육과학 <br> 기술부 <br> (총 5건) |
| 10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 §14 | 나노기술정보관리 전문기관 |  |
| 11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8 | 기탁등록보존기관 |  |
| 12 | 우주개발 진흥법 | §7 | 우주개발전문기관 |  |

17) 전술한 바와 같이 지정기관이란 지정을 통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 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단체"나 " $○ ○$ 법인" 등의 용 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였다.

| 순 번 | 법 령 명 | 조 항 | 지정기관 | 소관부처 |
| :---: | :---: | :---: | :---: | :---: |
| 13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 법 시행령 | §12 | 연구개발사업 기획• 관리 전문기관 |  |
| 14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 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40 | 보안교육기관 | 국토해양부 (총 40건) |
| 15 | 대중교통의 유성 및 이 용촉진에 관한 법률 | §10의7 | 전국호환교통카드 등 인증기관 |  |
| 16 |  | § 22 의 6 | 전담기관 |  |
| 17 | 도시칠또법(197.4, 제징) | § 22 의 4 | 품질인증기관 |  |
| 18 | 해양환경관리법 | §77 | 해양오염영향조사 기관 |  |
| 19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5 | 해양심층수 수질검 사기관 |  |
| 20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35 | 전문검사기관 |  |
| 21 | 해사안전법(1986.12, 제정) | §48 | 인증심사대행기관 |  |
| 22 | 항만법(1967.3, 제정) | §28 | 검사대행기관 |  |
| 23 | 항로표지법(1961.12, 제정) | §32 | 검사대행기관 |  |
| 24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 한 법률 | §28 | 교육기관 |  |
| 25 | 항공법(1961.3, 제정) | §29의 3 | 전문교육기관 |  |
| 26 |  | §60 | 포장 - 용기검사기관 |  |
| 27 |  | §61 | 위험물취급 전문교 육기관 |  |
| 28 | 항공법 시행령 | §60 | 전문검사기관 |  |
| 29 |  | §63 | 항공 영어구술능력 증명 평가기관 |  |
| 30 | 항공법 시행규칙 | §245의 3 | 성능적합성 증명 전 문검사기관 |  |
| 31 | 한국도로공사법 (1969.1, 제정) | §16의 3 | 공익서비스비용산정• 평가 전문기관 |  |


| 순 번 | 법 령 명 | 조 항 | 지정기관 | 소관부처 |
| :---: | :---: | :---: | :---: | :---: |
| 32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16의 2 | 지정측정기관 |  |
| 33 | 건축법 | §65 |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관 |  |
| 34 |  | §65의 2 | 지능형건축물 인증 기관 |  |
| 35 | 측량•수로조사 및 지 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기본측량성과 검증 기관 |  |
| 36 | 철도안전법(2004.10, 제정) | §35 | 성능시험기관 |  |
| 37 |  | §28 | 품질인증기관 |  |
| 38 |  | §36 | 제작검사기관 |  |
| 39 |  | §37 | 정밀진단기관 |  |
| 40 |  | §15 | 적정검사기관 |  |
| 41 |  | §16 | 교육훈련기관 |  |
| 42 | 주택법 | §21 의 2 | 주택성능등급 인정 기관 |  |
| 43 |  | §21 의 4 | 바닥충격음 성능등 급 인정기관 |  |
| 4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5 |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  |
| 45 |  | §5 | 전산관리 지정기관 |  |
| 46 | 주차장법 | §19의 6 | 안전도인증 검사기관 |  |
| 47 |  | §19의 12 | 전문검사기관 |  |
| 48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17의 2 |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기관 |  |
| 49 | 자동차관리법 | §47 | 택시미터전문 검정 기관 |  |
| 50 |  | §68의 2 |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전담기관 |  |
| 51 | 선원법 | §140 | 인증검사업무 대행 기관 |  |


| 순 번 | 법 령 명 | 조 항 | 지정기관 | 소관부처 |
| :---: | :---: | :---: | :---: | :---: |
| 52 | 선박안전법 | §18 | 형식승인 지정시험 기관 |  |
| 53 |  | §23 | 컨테이너지정시험 기관 |  |
| 54 |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 §17 | 주류제조 양성기관 | 기획재정부 <br> (총 1건) |
| 55 | 김치산업 진흥법 | §11 | 교육훈련기관 | 농림수산 <br> 식품부 <br> (총 39건) |
| 56 |  | §12 | 전문인력 양성기관 |  |
| 57 | 수산물품질관리법 | §8 | 품질인증기관 |  |
| 58 |  | §30 | 수산물검사기관 |  |
| 59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 §10 |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시기관 |  |
| 60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5 | 투자관리전문기관 |  |
| 61 | 농산물품질관리법 (1999.1, 제정) | §6 | 농산물우수관리인 증기관 |  |
| 62 | 농산물품질관리법 | §14의 2 | 안전성검사기관 |  |
| 63 |  | §26 | 검사기관 |  |
| 64 |  | §27 | 검정기관 |  |
| 65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 §27 | 시료검정기관 |  |
| 66 | 농약관리법(1957.8, 제정) | § 17 의 4 | 시험연구기관 |  |
| 67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7 | 농어업인재개발전 문기관 |  |
| 68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 진에 관한 특별법 | §46 | 전문연구기관 |  |


| 순 번 | 법 령 명 | 조 항 | 지정기관 | 소관부처 |
| :---: | :--- | :---: | :--- | :--- |
| 69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br> 과리 및 이용에 관한 <br> 붑률 | $\S 14$ | 농수산생명자원 책 <br> 기관 |  |
|  | $\S 15$ | 농수산생명자원 관 <br> 리기관의 |  |  |
| 71 | 농촌진흥청 시험 - 분석 <br> 및 검정 의뢰 규칙 | $\S 5$ | 시험연구기관 |  |
| 72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 <br> 원에 관한 법 | $\S 11$ | 전문인력 양성기관 |  |



| 순 번 | 법 령 명 | 조 항 | 지정기관 | 소관부처 |
| :---: | :--- | :---: | :--- | :--- |
| 107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 <br> 상츼 <br> 관한 규천관릭 | $\S 6$ | 검사 • 측정기관 |  |,


| 순 번 | 법 령 명 | 조 항 | 지정기관 | 소관부처 |
| :---: | :---: | :---: | :---: | :---: |
| 12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 §4 | 국가시험관리기관 |  |
| 125 | 의료기기법 | §27 | 시험검사기관 |  |
| 126 |  | §28 | 품질관리심사기관 |  |
| 12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31 | 지역응급의료기관 |  |
| 128 | 약사법 | §73 | 품질 검사기관 |  |
| 129 | 암관리법 | §22 | 완화의료전문기관 |  |
| 130 | 의료법 | §82 | 안마수련기관 |  |
| 131 | 여성발전기본법 | § 10 의 2 | 정책분석 - 평가지 원기관 | 여성가족부 <br> (총 2건) |
| 132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17 |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  |
| 133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10 | 기술거래기관 | 지식경제부 <br> (총 39건) |
| 134 |  | §35의 2 | 기술평가기관 |  |
| 135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 §12 | 협동연구개발 지원 기관 |  |
| 136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10 | 성능•품질 전문검 사기관 |  |
| 137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 전관리법 | §5 | 품질경영지원기관 |  |
| 138 |  | §7 | 품질경영체제인증 기관 |  |
| 139 |  | §12 | 안전인증기관 |  |
| 140 |  | §19 | 자율안 전확인 대상 공산품 시험•검사 기관 |  |
| 141 | 콘텐츠산업 진흥법 | §21 | 콘텐츠거래사실 인 증사업 수행기관 |  |
| 142 |  | §22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  |



| 순 번 | 법 령 명 | 조 항 | 지정기관 | 소관부처 |
| :---: | :---: | :---: | :---: | :---: |
| 162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11 | 엔지니어링기술 전 문기관 |  |
| 163 |  | §13 | 엔지니어링전문인 력 양성기관 |  |
| 164 | 에너지이용 홥리화법 | §15 | 효율관리시험기관 |  |
| 165 |  | §19 | 대기전력시험기관 |  |
| 166 |  | §22 | 고효율시험기관 |  |
| 167 |  | §32 | 에너지진단전문기관 |  |
| 168 | 에너지법 | §19 | 통계작성 - 분석 관리기관 |  |
| 16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25 | 품질검사기관 |  |
| 170 | 산업표준화법 | §13 | 한국산업표준 적합 <br> 성 인증기관 |  |
| 171 | 산업발전법 | §31 | 생산성경영체제 인 증기관 |  |
| 172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 17 의 2 | 전문인력양성기관 | 환경부 (총 17건) |
| 173 |  | §48의 2 | 인증시험대행기관 |  |
| 174 |  | §74의 2 | 검사대행기관 |  |
| 175 | 먹는물관리법 | §43 | 먹는물 검사기관 |  |
| 176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21 | 환경측정분석사 교 육 및 검정기관 |  |
| 177 |  | §13 | 환경측정기기검사 기관 |  |
| 178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18 | 환경성적표지 인증 기관 |  |
| 179 | 환경교육진흥법 | §12 | 사회환경교육지도 사 양성기관 |  |


| 순 번 | 법 령 명 | 조 항 | 지정기관 | 소관부처 |
| :---: | :---: | :---: | :---: | :---: |
| 180 | 토양환경보전법 | §23의 2 | 토양관련전문기관 |  |
| 18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25의 3 | 고형연료제품의 품 질 인증기관 |  |
| 182 | 자연환경보전법 | §59의 2 | 자연환경해설사 양 성기관 |  |
| 183 | 소음•진동관리법 | §31 의 2 | 인증시험대행기관 |  |
| 184 |  | §45 | 소음도 검사기관 |  |
| 185 | 유해화확물질 관리법 | §14 | 유해화학물질 심험 기관 |  |
| 186 | 야생동 - 식물보호법 | §7 | 서식지외보전기관 |  |
| 187 |  | $\S 47$ | 수렵강습기관 |  |
| 188 | 악취방지법 | §18 | 악취검사기관 |  |
| 189 | 소비자기본법 | §52 | 위해정보 제출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br> (총 1건) |
| 190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10 |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관 | 금융위원회 <br> (총 1건) |
| 19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9 | 표준적합 인증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br> (총 3건) |
| 192 |  | §23의 3 | 본인확인기관 |  |
| 193 | 전파법 | §58의 5 |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  |
| 194 | 기상관측표준화법 | §14 | 검정대행기관 | $\begin{aligned} & \text { 기상청 } \\ & \text { (총 3건) } \end{aligned}$ |
| 195 | 기상법(1961.8, 제정) | §35 | 교육•훈련 담당기관 |  |
| 196 | 기상산업진흥법 | §16 | 기상정보지원기관 |  |
| 197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에 관한 법률 | $\S 9$ 의 2 | 전문교육기관 | 산림청 (총 1건) |
| 198 | 소방시설공사업법 | §29 | 실무교육기관 | 소방방재청 |


| 순 번 | 법 령 명 | 조 항 | 지정기관 | 소관부처 |
| :---: | :--- | :---: | :--- | :--- |
| 199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 <br> 한 법 | $\S 7$ | 절문인력 양성기관 |  |


| 순 번 | 법 령 명 | 조 항 | 지정기관 | 소관부처 |
| :---: | :---: | :---: | :---: | :---: |
| 215 | 중소기업기본법 | §25 | 전문연구기관 |  |
| 216 | 상표법 | §22 | 전문조사기관 | $\begin{aligned} & \text { 특허청 } \\ & \text { (총 3건) } \end{aligned}$ |
| 217 | 디자인보호법(1961. 12, 제정) | § 25 의 2 | 선행디자인 조사전 문기관 |  |
| 218 |  | §77의 2 | 디자인문서전자화 기관 |  |
| 219 | 특허법(1952.4, 제정) | §58의 2 | 선행기술조사 전문 기관 |  |
| 220 | 통계법(1962.1, 제정) | §15 | 통계작성지정기관 | $\begin{aligned} & \text { 통계청 } \\ & \text { (총 1건) } \end{aligned}$ |
| 221 | 수상레저안전법 | §10 | 안전교육 위탁기관 | 해양경찰청 <br> (총 3건) |
| 222 |  | §14 | 시험대행기관 |  |
| 223 |  | $\S 47$ | 검정대행기관 |  |

이와 같이 현행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관제도는 대부분 "지정 $\bigcirc \bigcirc$ 기관"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인증기관"."○○인정기관". " $\bigcirc \bigcirc$ 검사기관" ." $\bigcirc \bigcirc$ 검정기관" ."○○ 조사기관". " $\bigcirc \bigcirc$ 진단기관" "○○관리기관" " $○ ○$ 전문기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훈련기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정기관을 조 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자(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를 지정하여 위탁•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의 총칭으로 정의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이하에서는 지정검사•검정•인증기관, 지정조사•관 리•시험기관, 지정교육•양성•연구기관, 기타 지정기관으로 구분한 후, 주요 입법례를 중심으로 그 현황 및 입법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 2. 지정검사•검정•인증기관의 현황

## (1) 지정검사기관의 현황과 입법구조

## 1) 고압가스안전검사기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973. 2. 7 제정, 법률 제2494호) 제35조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 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받은 사항 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지식경 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시•도지사가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식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해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재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의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지정 또는 재지 정에 따른 검사기관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시•도지사에게 확인•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 항). 같은 법 제 35 조의 2 에서는 지정의 취소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에 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취소), 변경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같은 법 제 35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밖에 검사부적정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35조의3). 검사기관의 임직원을

벌칙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제37조의2).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에 대하여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제 39 조).

| 지정내용 |  | 고압가스안전검사기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 2) 유해•위험기계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1981. 12. 31 제정, 법률 제 3532 호) 제 36 조에서는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즉 유해•위 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항). 이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 은 정해진 유해•위험기계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 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6항). 고 용노동부장관에 대하여 안전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 사기관의 업무수행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7항).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장 비 등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8항).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지정을 받은 경우(취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8항). 이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 63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제66조).

| 지정 | 내용 | 유해• 위험기계 등 안전검사기관(산업안전보건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햄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공무원 <br> 의 <br> 제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 3) 위험물포장 - 용기검사기관

항공법(1961. 3. 7 제정, 법률 제591호) 제60조에서는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즉 포장•용기검 사기관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항). 이에 따른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국토해양 부장관에게 포장•용기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취소), 정해진 지정기준에 맞 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 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용기•포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 154 조의 2 제 7 호), 용기•포장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제155조).

| 지정내용 |  | 위험물운송용기 • 포장검사기관(항공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햄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4) 해양심층수수질 검사기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7. 8. 3, 제정, 법률 제 8629호) 제 25 조에서는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과 관련하여,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같은 법 제 24 조 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양 심층수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을 해양심층수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면허의 대상이 되는 해양심층수의 수질에 대하여 해양심층 수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 른 해양심층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고 시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와 같이 해양심층수수질검사기 관의 경우, 수수료에 관한 규정 외에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이나 벌칙 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 지정내용 |  | 해양심층수수질검사기관(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점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5) 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

철도안전법(2004. 10. 22 제정, 법률 제 7245 호) 제 36 조에서는 철도차량 의 제작검사와 관련하여, 차량제작자 등에게 철도차량 제작•조립에 착수한 때부터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여부에 대하여 국토해 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제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른

제작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철도차 량의 제작검사에 관한 전문기관, 즉 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을 지정하 여 제작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항).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6항). 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등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성능시험기 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취소), 정 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계속하여 제작검사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철도제작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작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철도차량에 대하여 제작검사의 적합판정을 하였을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7항). 철도제작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청문을 하도록 하고(제75조), 벌칙 적용 시 의 제작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제작검사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제76조).

| 지정 | 내용 | 철도제작검사기관(철도안전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지정 요건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 6) 농수산물안전성검가시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011. 7. 21 전부개정, 법률 제 10885 호) 제64조 에서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

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안전성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절차와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65조에서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과 관련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안전성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취소),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 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검사성적서를 거짓 으로 내준 경우,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 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 시해야 하고(제 114 조),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 성검사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제116조).

| 지정내용 |  | 농수산물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지정 요건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공무원 의제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 7)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축산물위생관리법(1962. 1. 20 제정, 법률 제 1011 호) 제 20 조에서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같 은 법 제 4 조제 3 항, 제 12 조, 제 15 조 제 2 항 및 제 19 조제 $1 \cdot 2$ 항에 따른 검토 또는 검사, 즉 축산물위생검사를 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제2호). 이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 관의 지정과 검사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이고(같은 조 제3항),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 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축산물위생검 사기관이 재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같은 조 제4항).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업무를 담당 하는 사람은 매년 축산물위생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지정이 취소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설 립•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가 지정이 취소된 날부 터 3 년이 지나지 않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나 같은 장소에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7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검사 업무정지 기간에 검사업무 를 수행한 경우(이상 취소), 위 축산물위생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교 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 38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출입•조 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검사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항). 이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 하여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43조). 또한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 기관의 임•직원을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제 44 조의 2 제 2 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다(제45조 제2항 제9호).

| 지정 | 용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축산물위생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지정 요건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 8) 소금품질검사기관

염관리법(1963. 10. 28 제정, 법률 제 1419 호) $)^{18)}$ 제 10 조에서는 품질검 사 등과 관련하여,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은 염업조합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 관, 즉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갖출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염제조업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지정을 받은 품질검사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염의 규격과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품질검사를 받는 자에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4항), 품질검사기 관의 검사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
18) 이 염관리법은 2011. 11. 22의 전부개정(법률 제11101호)으로 소금산업 진흥법으 로 변경되었으며, 2012. 11. 23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법 제 10 조의 2 에서는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하여 품질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품질검사 업무를 하는 경우(이상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품질검 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 10 조 제 2 항에 따른 지정요건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품질검 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하며(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규정도 두고 있다(제32조).

| 지정 | 내용 | 소금품질검사기관(염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햄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 9)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위생법(1962. 1. 20 제정, 법률 제1007호) 제24조에서는 식품위 생검사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 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한 식품위생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위생검 사 업무범위별로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같은 법 제19조 제2항 및 제 22조 제 1 항에 따른 검사 중 식품위생검사에 해당하는 검사),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으로 구분하 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식품위생검사시설, 식품위생검사 전문인력과 식품위생검 사기관의 지정•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 25 조에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 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 년으로 하고(제 1 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 회에 한정하여 연 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식품 위생검사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시설 및 검사원에 관한 요건을 갖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는 다시 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출입 등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은 지 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식품위생검사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검사를 행하는 자 또는 그 밖 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 여금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사무소•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장소에 출입하여 식품위생검사시설, 검사일지 및 기록서 등을 검 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식품위생검사와 관련된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 27 조에 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식품위생검사업무를 행하는 경우(이상 취소),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식품위생검사업무의 정지

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 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 다(제 72 조). 또한 식품위생법 제 28 조에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 정할 수 없는 기관으로서, 지정이 취소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설립• 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기 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식품위생검사기 관을 설립 -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을 들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승계에 관하여도 규정 하고 있다. 즉, 같은 법 제 29 조에서는 검사기관의 승계와 관련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즉 검사기관 운영자가 사망하거 나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을 양도하거나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 우,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 중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및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 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영업시설 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서, 같은 법 제 24 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는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 중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 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또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와 관 련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임•직원을 벌칙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제99조).

| 지정 | 내용 | 식품위생검사기관(식품위생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지정 <br> 요건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 10) 화장품안전성검사기관

화장품법(1999. 9. 7 제정, 법률 제6025호) 제 20 조에서는 검사명령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한 화장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기관을 지정하려면,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제 21 조 제 1 항),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발급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검사기관의 지정절차•방법, 지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 지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검사기관이 시험성적서를 거 짓으로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 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 니한 경우,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취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25 조 제 1 항).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 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 지정내용 |  | 소금품질검사기관(염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11)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

의료기기법(2003. 5. 29 제정, 법률 제6909호) 제27조에서는 시험검 사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같은 법 제6조 제 2 항, 제 12 조 또는 제 15 조 제 $2 \cdot 6$ 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기 전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검사명령을 한 경우, 의료기기의 안 전성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할 시험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 로 하여금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시험검사기 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의료기기의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지정된 시 험검사기관가 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작성. 발급하고, 시험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그 밖에 시험검사기 관의 지정요건•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또한 의료기기법 제 37 조에서는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 지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험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취소),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거짓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작성•발급한 경우(취소),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취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제1항). 이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같 은 조 제2항).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하며(제39조), 시험검사기관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제 50 조 제 3 호).

| 지정 | 내용 |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의료기기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12) 의약품등품질검사기관

약사법(1953. 12. 18 제정, 법률 제 300 호) 제 73 조에서는 검사명령과 품질검사기관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의약품의 품 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 지사가 지정한 품질검사기관에서 제조•수입하거나 품목허가를 받거 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등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품질검사기관으로 지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품질검사기관이 의약품 등의 검 사를 하였을 때에는 품질검사성적서를 작성 - 발급하고, 검사기록을 보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같 은 조 제3항).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품질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 73 조의 2 에서는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을 지정받은 날부터 3 년으로 하고
(제1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1 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 2 항).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질검사기관으로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춘 품질검사기관에 대하여는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약사법 제 76 조의 2 에서는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와 관련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품질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품질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경우(이상 취소),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약사법 제 73 조 제 3 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취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9 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1 항). 이 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품질검사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77 조), 품질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서,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95조 제1항).

| 지정내용 |  | 의약품등품질검사기관(약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공무원 <br> 의제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 13) 공산품시험 • 검사기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2000. 12. 29 전부개정, 법률 제6315호) 제 19 조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자율안

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모델별로 같은 조 제3 항에 따라 지정된 공산품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 험 • 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 인(자율안전확인)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 으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지정된 공산품시험 • 검사기관은 지식경제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해야 하지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 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대 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지식경 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 항).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 23 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 검사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공산 품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에는 공고하도 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공산품시험•검사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 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 관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대한 시험•검사의 결과를 상호 인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또한 공산품시험•검 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공산품시험•검사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산품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에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시험•검사를 한 경우(이상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시험•검사를 거부한 경우, 안 전기준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공산품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에 대 하여 필요한 경우 공산품시험•검사기관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9항), 공산품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35조).

| 지정내용 |  | 공산품시험•검사기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rray}{\|l\|} \hline \text { 지정 } \\ \text { 주체 } \end{array}$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지정 요건 | 기준 <br> 위임 | 취소 <br> 근거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14) 석유제품품질검사기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4. 10. 22 전부개정, 법률 제7240호) 제 25 조에서는 품질검사와 관련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 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1항). 다만, 검사 시설•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지식경제 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자체검사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단서). 석유제품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 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 23 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시설 을 확보할 것, 지정 신청일 전 2 년 이내에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 소된 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에 대한 승인요건에 관하여

도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품질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6항).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제 28 조에서는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품질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 한 경우(이상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 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 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항). 수수료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품질검사를 받으려 는 자에게 품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제2항).

| 지정내용 |  | 석유제품품질검사기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15) 그 밖의 지정검사기관

이상에서 서술한 다양한 지정검사기관 외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3 조에 따른 성능검사기관, 유통산 업발전법 제 27 조에 따른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대기환경보전법 제 74 조 의 2 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소음•진동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소 음도검사기관, 악취방지법 제 18 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폐기물관리법 제 13 조에 따른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기관, 항만법 제 28 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항로표지법 제 32 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주차장법 제 19 조의 6 에 따른 안전도인증검사기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 10 조

에 따른 성능•품질전문검사기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정검사 기관의 경우도 전술한 다른 지정검사기관과 유사한 입법구조를 취하 고 있다.

## (2) 지정검정기관의 현황과 입법구조

## 1) 택시요금미터전문검정기관

자동차관리법(1986. 12. 31 전부개정, 법률 제3912호) 제47조에서는 택시미터의 검정 등과 관련하여 택시요금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 는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택시요금미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른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 금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요금미터를 검정할 수 있 는 택시요금미터전문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택시요금미터전문검정기관이 지정을 받으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이러한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택시요금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등과 관련해서는 택시요금미터전문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을 받은 경우(취소),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 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장비 등 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취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 택시요금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해야 하고(제75조),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업무를 대 행하는 택시요금미터전문검정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 다(제 76 조 제 1 항 단서).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벌칙적용에서 공무 원으로 의제하고 있으며(제77조의2),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택시요금미터의 검정을 한 자에 대하여는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하거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79조).

| 지정 | 내용 | 택시요금미터전문검정기관(자동차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지정 <br> 요건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 2) 농산물 - 가공품검정기관

농산물품질관리법(2011. 7. 25 타법개정, 법률 제10932호) 제27조에 서는 농산물의 검정 등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산물 의 거래 및 수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하여 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항).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을 갖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검정기관으로 지정 을 받으려면,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 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검정기관 의 지정기준•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과 관련하여, 제 27 조의 2 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정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 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이상 취소), 검정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항).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하며(제 33 조),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서 공 무원으로 의제되고 있다(제34조의2).

| 지정 | 내용 | 농산물• 가공품검정기관(농산물품질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점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지정 요건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 (3) 지정인증기관의 현황과 입법구조

1) 전국호환교통카드인증기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05. 1. 27 제정, 법률 제7381호) 제 10 조의 7 에서는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운용하는 교통카드• 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증에 관 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경우 전국호환교통카드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 및 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인증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정내용 |  | 전국호환교통카드인증기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ㅇㅓㅓㅁㅜ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2)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

도시철도법(1990. 12. 31 일부개정, 법률 제4308호) 제 22 조의4에서는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도시철도 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 등, 즉 도시철도용품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국토해양부장 관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자, 도시철도운영자와 제작자 등에게 품질 인증을 받은 도시철도용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품질인증을 철 도용품품질인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제23조의2).

| 지정내용 |  |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도시철도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햄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3) 친환경건축물인증기관

건축법(1962. 1. 20 제정, 법률 제984호) 제65조에서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지속가능한 개발 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 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 하여 친환경건축물을 인증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친환경건축물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준•절차, 표시 활용방법,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등급 등의 사 항을 포함하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친환경건축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및 인 증신청절차 등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 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 지정 | 내용 | 친환경건축물인증기관(건축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햄 업무 | 지정 요건 | 기준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4) 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

철도안전법(2004. 10. 22 제정, 법률 제 7245 호) 제 28 조에서는 품질인 증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같은 법 제 27 조 제 1 항 에 따른 철도용품 품질인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관 한 전문기관, 즉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품질인 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업무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품질인증업무를 하였을 때(이상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계속하여 품질인증업무를 하지 아 니하였을 때,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품질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철도용품에 대 하여 품질인증을 한 것으로 인정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 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품질 인증기관에 철도용품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품질인증기관 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제74조 제1항 단서).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하며(제75조 제4호), 품질인증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 • 직원을 벌칙규정의 적 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제76조 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 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78조 제3항 제1호).

| 지정내용 |  | 철도용품품질검사기관(철도안전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기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 1. 27 제정, 법률 제 7382 호) 제 17 조의 2 에서는 교통수단 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교 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이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공동으로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 지정내용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  |  |  | 인증기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취소 <br> 근거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6)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품질관리법(2011. 7. 25 타법개정, 법률 제 10932 호) 제6조에서 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을 하게 할 수 있고 (제1항),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인증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같 은 조 제2항).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인증기관 의 지정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유효하고, 계속적으로 우수관리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정을 갱신 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관련하여, 제6조 의2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한 경우, 인증기관의 해산•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 를 할 수 없는 경우(이상 취소),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수관리인증 업무 를 잘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실적이 없 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 수행하거 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 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 33 조). 또한 지위의 승계와 관련해서는 인증기관 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권리•의무 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 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조의 3 제 1 항 제 1 호). 인증기관에 우수관 리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어야 하며(제32조). 우수관리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 관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제34조의2).

| 지정 | 내용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품질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 7) 술품질인증기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0. 2. 4 제정, 법률 제 10020 호) 제 23 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같은 법 제 21 조 제 1 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술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는 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 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 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인증기관의 지 정이 취소된 후, 2 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 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이나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관련하여, 제 24 조에서는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정을 받은 경우(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 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1 항). 또한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인증을 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 33 조). 술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 부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7조 제1항),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벌칙적 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다(제35조).

| 지정 | 내용 | 술품질인증기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점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 8) 우수식품인증기관

식품산업진흥법(2007. 12. 27 제정, 법률 제8796호) 제24조에서는 우 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같은 법 제 20 조 제 1 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 22 조 제 1 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제 23 조 제 1 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식품인증과 같은 법 제22조 제2항 및 제 23 조 제 3 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우 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하지만, 우수식 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 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 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 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우수식품인증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식품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 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해 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제 24 조의 2 에서는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식품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취소),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우수식품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 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관련 문서를 비치• 보존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식품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 간 중에 우수식품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취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 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우수식 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 33 조의 2 제 1 항 제4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사후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제26조에서는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우수식품인증기관 의 담당자로 하여금 우수식품인증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인증을 획득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제 1 항).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식품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식품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우수식품인증기관에게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식품

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와 같이 우수식품인증기관의 경우, 지정 이후의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상세 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수식품인증기관은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수 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7조). 또한 우수식품인증기관이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식품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제 30 조). 우수식품인증기관 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으며(제 35 조), 우 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않고 우수식품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에 대하여는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36조).

| 지정 | 내용 | 우수식품인증기관(식품산업진흥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 9) 그 밖의 지정인증기관

이상에서 서술한 지정인정기관의 입법례 외에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 17 조의 2 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같은 법 제 20 조의 5 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권리자인증기관,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 12 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21 조에 따른 콘텐츠거래사실인증사업수행기관, 지능형전력 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6 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제품품질인증기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이러닝(전자학습) 산 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3 조에 따른 이러닝제품인 증기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2 조의 2 에 따른 건축물인증기관, 같은 법 제 12 조의 7 에 따른 공급인증기관, 소 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13 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인증기관, 유통산업발전법 제 27 조에 따른 물류설비인증기관, 산업표준화법 제 13 조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적합성인증기관, 산업발전법 제 31 조에 따른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8 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5 조의 3 에 따른 고형연료제품품질인증기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입법례를 살펴보 면, 이상에서 서술한 지정인증기관의 입법구조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 3. 지정시험•조사•평가기관의 현황

## (1) 지정시험기관의 현황과 입법구조

## 1)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

철도안전법(2004. 10. 22 제정, 법률 제7245호) 제 35 조에서는 철도차 량의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을 판매 하려는 차량제작자 등은 철도차량의 성능과 구조•장치의 형상 및 규 격 등이 철도차량의 안전 및 기능 확보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기 위하 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성능시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 여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전문기관, 즉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하 여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이 성능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성능시험기관이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시험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정기 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성능시험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성능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한 철도차량에 대하여 성능시험의 적 합 판정을 하였을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항).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75조 제6호). 성능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성능시험 기관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다(제76조 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을 받 은 자에 대하여는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78조 제3항).

| 지정내용 |  | 성능시험기관(철도안전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 2) 형식승인시험기관

선박안전법(1961. 12. 30 제정, 법률 제 919 호) 제 18 조에서는 선박의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 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이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으려는 자에게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로부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형식승인시험을 담당

하는 형식시험기관(법에서는 "지정시험기관"으로 약칭하고 있음)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와 같이 지정•고시된 형식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 한 선박용 물건을 보관해야 하고,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형식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 독, 선박용 물건의 보관범위, 검정증서의 서식•교부 등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8항).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에 관하여, 제 19 조에서는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형식시험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을 받은 때,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형식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이상 취소), 형식승인시험의 오차•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형식승인시 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형식승인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하며(제78조), 형식승 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기관에 수수료를 납부 하도록 하고 있다(제80조 제1항 제4호). 또한 제 75 조에서는 국토해양 부장관의 형식승인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 고•자료제출명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지정 | 내용 | 형식승인시험기관(선박안전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공무원 <br> 의제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3) 효율관리시험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1979. 12. 28 제정, 법률 제3181호) 제 15 조(효율 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즉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효율관리시 험기관의 지정요건과 관련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 23 조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이와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제 24 조에서는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효율관리시험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이상 취 소),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효율관리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 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68조 제3호).

| 지정내용 |  | 효율관리시험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4) 적합성평가시험기관

전파법(1961. 12. 30 제정, 법률 제924호) ${ }^{19)}$ 제 58 조의5에서는 시험기 관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 요한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 정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험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추고 있는 법인을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법률에서는 "지정시험기관"으로 약 칭하고 있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지 정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지정시험 업무를 일정 기간 중지하거나 지 정시험 업무의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 정시험 업무의 전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정받 은 사항의 변경 또는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양수하거 나 합병을 통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지정시험 기관의 심사, 지정(변경, 폐지 및 승인을 포함)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 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지정시험기관의 지도•감독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제58조의7에 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에 관한 절차, 측 정설비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지 정시험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 한 경우,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 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19) 1961 년에 제정된 전파관리법은 1991. 12. 14 의 일부개정(법률 제4441호)으로 법률 명이 전파법으로 변경되었다(1992. 7. 1 시행).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사유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 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를 들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77조).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검사 등과 관 련하여, 제58조의 6 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이 지정요건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 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적합성평가시험 업무 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 고 있다(제89조).

| 지정내용 |  | 적합성평가시험기관(전파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2) 지정조사기관의 현황과 입법구조

## 1) 석면조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1981. 12. 31 제정, 법률 제 3532 호) 제 38 조의 2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즉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기관석 면조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6항).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석 면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상 취소), 지정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7항). 이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 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63조의 2 제 1 항).

| 지정내용 |  | 석면조사기관(산업안전보건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2)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양환경관리법(2011. 6. 15 일부개정, 법률 제 10803 호) 제 77 조에서 는 해양오염영향조사와 관련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 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 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해 양오염영향조사를 해야 하는 자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지 않거나 긴급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해양요염영향조사기 관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제81조에서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 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 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대표이사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양오염영향 조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양오염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제 82 조에서는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정을 받은 때(취소),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1 년에 2 회 이 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취소), 다른 사람에게 지정기관의 권한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행한 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 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 120 조 제 3 호). 또 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과 관 련하여, 제 83 조에서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해양오 염영향조사기관의 경우, 처분 전에 체결한 해양오염영향조사에 한정 하여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 지정내용 |  |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해양환경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취소 <br> 근거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3) 손실액조사기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1. 3. 31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 부령 제 185 호) 제 49 조에서는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수 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지정신청서에 손실액 조사 계획서, 기관설립증서 사본 및 기관의 조직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신청한 기관을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손실액조사기관 지정서를 내 주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다(제3항). 이 손실액조사기관의 경우, 근거가 되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들고 있으나,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에서는 손실액의 산출 과 관련하여, "법 제 81 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 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4와 같다"고 하여 손실액조사기 관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여기에서 들고 있는 수산업 법 제 81 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지정내용 |  | 손실액조사기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햄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4) 전문조사기관

상표법(1949. 11. 28 제정, 법률 제 71 호) 제 22 조의 2 에서는 전문조사 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 등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 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상표검색과 상품 분류의 부여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른 전 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제 22 조의 3 에서는 특허청장에게 전문조사기 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 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1 항). 이에 따라 전문 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 지정내용 |  | 전문조사기관(상표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지정 요건 | 기준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그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공무원 <br> 의제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3) 지정평가기관의 현황과 입법구조

## 1) 가치평가기관

문화산업진훙기본법(1999. 2. 8 제정, 법률 제5927호) 제 16 조의 2 에서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받으

려는 자는 가치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신청을 받은 가치평가기관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가치평가기관은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 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같은 조 제4 항). 가치평가기관의 장에게는 평가수수료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지정절차,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6항).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취소와 관련 하여, 제 16 조의 4 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평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취소), 가 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가치평가기 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도 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가치평가기관 및 평가수수료의 지 원과 관련하여, 제 16 조의 3 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치평가기 관이 실시하는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가치평가 기법 연구 등의 사 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치평가 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 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 지정 | 내용 | 가치평가기관(문화산업진흥기본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2)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 9. 15 제정, 법률 제11046호) 제 17 조에서 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 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성별영향 분석평가기관의 기능, 지정기준과 지정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경우, 다른 지정평가기관의 입법구조와는 달리 지정의 주체와 목적만 은 법률에 규정하고, 지정기준•요건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 임하고 있다.

| 지정내용 |  |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성별영향분석평가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햄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3) 기술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006. 12. 28 전부개정, 법 률 제 8108 호 $)^{20}$ ) 제 35 조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은 기술
2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00년 1 월 28 일에 제정된 기술이전 촉진법(법률 제6229호)이 2006년 12월 28일의 전부개정으로 법률명 등이 변경된 것 이다.

평가,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기술평가정보의 수집 • 분석 • 유 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 기관이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 이하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취 소), 같은 법 제4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3 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취소), 폐업 등으로 인하여 지 정평가기관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취소),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 3항). 이에 따라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 시하도록 하고 있다(제37조 제5호). 또한 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 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평가정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통보를 받 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사 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기술평가기관 의 지정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6항).

| 지정내용 |  | 기술평가기관(기술의 |  |  |  |  |  | 및 사업화 |  | 촉진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지정 <br> 요건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공무원 <br> 의제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4) 위해성평가기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2001. 3. 28 제정, 법률 제6448호) 제 8 조에서는 수입승인 등과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 체를 수입(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 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 물체를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자가 작성한 위해성평가서와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가 속한 국가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위해성 심사서를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 한 위해성심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없거나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위해성평가기관이 작성한 위 해성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위해성평가기관 에 대한 지도•감독의 방안으로서, 제 36 조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를 위하여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 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 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위해성평가기관의 임•직원은 벌 칙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제 38 조).

| 지정내용 |  | 위해성평가기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취소 <br> 근거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 4. 지정교육•전문•관리기관의 현황

## (1) 지정교육기관의 현황과 입법구조

## 1) 보안책임자 등 보안교육기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2007. 8. 3 제정, 법률 제8618호) 제 40 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 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유 지에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안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시설기준•교수 인원 등 지정요건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 2 항). 보안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 은 경우(취소),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및 제41조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 우,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장관으 로 하여금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 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 항).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제41조에서는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보안교육기관 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또한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48조).

| 지정내용 |  | 보안교육기관(국제항해선박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 2) 항공안전 - 보안교육기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2002. 8. 26 전부개정, 법률 제6734호)21) 제 28 조에서는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수행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제1항), 보안검색 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토해 양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그 밖에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취소),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교 육의 전 과정을 2 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37조).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4]| 지정내용 |  | 항공안전•보안교육기관(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3)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항공법(1961. 3. 7 제정, 법률 제591호) 제61조에서는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과 관련하여, 위험물취급자에게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 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위험물취 급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전문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취소), 지정기 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장 관으로 하여금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 도록 하고 있다(제 154 조의 2 제 8 호).

| 지정내용 |  |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항공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지정 요건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공무원 <br> 의제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4)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노인복지법(1981. 6. 5 제정, 법률 제 3453 호) 제 39 조의 3 에서는 시• 도지사에게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 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취소),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교육과정을 1 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제42조 에서는 복지실시기관에게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 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벌칙에 관한 것 으로서, 지정을 받지 않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게는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 도록 하고 있다(제57조 제2호).

| 지정 | 내용 | 요양보호사교육기관(노인복지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햄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 5) 계측전문인력교육기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07. 7. 27 제정, 법률 제8551호) 제 30 조에서는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과 관련하여, 상시계측관 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 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소방방 재청장에게 방재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 하여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전문기술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계측전문인력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 지정내용 |  | 계측전문인력교육기관(급경사지 |  |  |  |  |  |  |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지정 요건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ㅇㅓㅓㅁㅜ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6) 그 밖의 지정교육기관

이상에서 서술한 지정교육기관 외에도, 항공법 제 29 조의 3 에 따른 전 문교육기관, 철도안전법 제 16 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김치산업진흥법 제 11 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1 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 25 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8 조에 따 른 교육훈련기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 28 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 정신보건법 제6조의 2 에 따른 인권전문교육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8 조에 따른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전 기공사법 제 19 조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 기상법 제 25 조에 따른 교 육•훈련담당기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기관 등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입법례에서는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 로 지정교육기관의 입법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 (2) 지정전문기관의 현황과 입법구조

## 1) 우주개발전문기관

우주개발진흥법(2005. 5. 31 제정, 법률 제7538호) 제7조에서는 우주 개발전문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우주개발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주개발전문기관을 지정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우주개발전문기관은 기본계 획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우주물체의 개발 - 발사 및 그 운용 등 통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같 은 조 제2항).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 지정내용 |  | 우주개발전문기관(우주개발 진흥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2) 투자관리전문기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2010. 1. 25 제정, 법률 제9953호) 제5조에서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지정과 관련 하여, 국가에게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국가는 투자관리전문 기관의 설립•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 자•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4항), 그 밖에 투자관리전 문기관의 설립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5항).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과 관련하여, 제6조에서는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 련하여 융자•회계•자금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였을 것,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을 요청하고 있다.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로는 농식품경영체에 대 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농식품경영 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결성 및 운영, 농식품경영 체에 대한 투자,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민간 및 해외투자자본의 유치 지원,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 - 운용 등을 들고 있다(제9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제 29 조에서는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에게 투자관리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취소),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 고 있다(같은 조 제2항).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 하여, 제 10 조에서는 투자관리전문기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 고 있다. 또한 제 27 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필요한 경우 투 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 상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정내용 |  | 투자관리전문기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3)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제정, 법률 제 9620 호) 제 27 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어업관련 인적 자원 의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 행 - 연구•평가•사업관리 등을 담당할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을 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어업인 재개발전문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농어업인재개발전문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취소), 농어 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 이 1 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기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요 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 은 조 제4항).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28조 제2호).

| 지정내용 |  |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지정 목적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취소 <br> 근거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4)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39 조의 5 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 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게 노인인권보호 관 련 정책제안,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학 대 예방의 홍보와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과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 다(제1항). 또한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하게 처 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도 에 두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에 기초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 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 지정내용 |  |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복지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햄 업무 | 지정 요건 | 기준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5)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979. 12. 28 제정, 법률 제3181호) 제32조에서 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 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3 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마다 그 사업장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여부에 대한 진단, 즉 에너 지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지식

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7항).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제 33 조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취소),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 어 현저히 부적절하게 에너지진단을 하는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2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 시하도록 하고 있다(제68조). 또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 지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제76조).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검사와 관련하여, 제66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 도지사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 지정내용 |  |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햄 업무 | 지정 요건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6)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환경보전법(1995. 1. 5 제정, 법률 제4906호) 제23조의2에서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 항).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 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토양관련전 문기관의 종류와 관련하여, 제 23 조의 2 에서는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 성평가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제1 항).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제 23 조의 3 에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지정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경우 토양관련전문기 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제 23 조의 6 에서는 환경 부장관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취소),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른 자에 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제2항).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26조의5).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등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의 권리•의무를 승 계하도록 하고 있다(제 23 조의 12 제 1 항).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과 관련하여 제 26 조의 2 에서는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사무실•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벌칙으로서, 지정을 받지 않고 토 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 거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29조 제7호).

| 지정내용 |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보전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 7) 그 밖의 지정전문기관

이상에서 서술한 지정전문기관 외에도, 한국도로공사법 제 16 조의 3 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산정 - 평가전문기관, 조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 진에 관한 법률 제 25 조에 따른 홍보•조사•연구전문기관, 외식산업 진흥법 제 10 조에 따른 외식상품표준화전문기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표준화사업추진전문기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0 조에 따른 분류체계표준화전문기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신약연구개발정보관리전문기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암관 리법 제 22 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 25 조에 따른 통계작성전문기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14 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 11 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전문기관, 소방산업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 16 조에 따른 수요조사전문기관, 소방시설 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2 조에 따른 제품검사전문기관, 풍수 해보험법 제 25 조의 3 에 따른 풍수해보험관리지도통합•관리전문기관,

자연재해대책법 제 58 조의 3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전문기관, 중소 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술진흥전문기관 등을 들 수 있다.

## (3) 지정관리기관의 현황과 입법구조

## 1) 민간자격등록관리기관

자격기본법(1997. 3. 27 제정, 법률 제5314호) 제 17 조에서는 민간자 격의 신설 및 등록 등과 관련하여,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은 누구든지 일정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즉 등록관리기관에 등 록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민간자격의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등록관리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 지정내용 |  | 민간자격등록관리기관(자격기본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지정 요건 | 기준 위임 | 취소 <br> 근거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2) 음악산업자료•정보관리기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제정, 법률 제7942호) 제5조 에서는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 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 수준•연구동향•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조사•보존•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즉 자료•정보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이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 지정내용 |  | 음악산업자료 • 정보관리기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ㅇㅓㅓㅁㅜ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3) 통계작성•분석•관리기관

에너지법(2006. 3. 3 제정, 법률 제 7860 호 $)^{22)}$ 제 19 조에서는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 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매년 에너지 사용 및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량 통계를 작성•분석하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 은 조 제2항),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총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항). 이 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통계의 작 성•분석•관리 및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6항).
22) 에너지법은 2006년 3월 3일에 제정된 에너지기본법(법률 제7860호)이 2010년 1월 13 일의 타법개정에 의하여 에너지법으로 법률명 등이 변경되었다.

| 지정 | 내용 | 통계작성 - 분석 • 관리기관(에너지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지정 <br> 요건 | 기준 <br> 위임 | 취소 <br> 근거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5. 지정기관에 관한 기타 입법현황

## (1) 지정진단기관의 현황 및 입법구조

## 1) 안전 - 보건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등과 관련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 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안전•보 건진단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상 취소),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 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4항). 안전•보건진단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63 조의2 제1항 제1호).

| 지정내용 |  | 안전 • 보건진단기관(산업안전보건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2) 건강진단기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84. 1231 제 정, 법률 제 3784 호) 제 15 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 이 같은 법 제 10 조부터 제 13 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 고 있다(제1항).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 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힌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도록 하 고 있다(제3항). 건강진단이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취소),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업무를 한 경우, 건강진단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건강진단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 우, 같은 법 제 15 조의 2 에 따른 평가를 2 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평 가의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이 부 적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지정이 취 소된 날부터 2년간 건강진단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지정취소•변경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7항).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 도록 하고 있다(제31조의3).

또한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과 관련하여, 제 15 조의 2 에서는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 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 분석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 이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 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등 과 관련하여 제 16 조에서는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 지정내용 |  | 건강진단기관(진폐의 |  |  |  | 예방과 |  | 폐근 | 로자의 | 보호 | 등에 | 관한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3) 정밀진단기관

철도안전법 제37조에서는 철도차량의 내구연한과 관련하여, 철도운 영자 등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른 정밀진단을 효율적으로 실 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에 관한 전문 기관, 즉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여 정밀진단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 지정을 받은 정밀진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계속 하여 정밀진단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정밀진단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밀진단기준에 않은 철도차량에 대하여 정밀진단의 적합 판정을 하 였을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정 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 75 조 제 8 호). 수수 료와 관련하여, 제74조에서는 정밀진단을 신청하는 자에게 정밀진단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제1항). 정밀진단업무에 종 사하는 정밀진단기관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 고 있다(제76조 제6호).

| 지정내용 |  | 정밀진단기관(철도안전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ㅇㅓㅓㅁㅜ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 (2) 지정전담기관의 현황과 입법구조

## 1) 기술검토전담기관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4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개선방안의 마련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 지정내용 |  | 기술검토전담기관(자동차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공무원 <br> 의제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2) 말산업육성전담기관

말산업 육성법(2011. 3. 9 제정, 법률 제10451호) 제9조에서는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에게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말산업육성전담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 책의 시행, 말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 항).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과 취소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정 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6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 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다(제29조).

| 지정내용 |  | 말산업육성전담기관(말산업 육성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행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 3)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1999. 2. 8 제정, 법률 제5927호) 제17조에서는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기술개발사업)을 촉 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 진흥원이나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기술개발 사업전담기관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 여 업무의 일부를 문화상품 제작자나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 탁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

| 지정내용 |  |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점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br> 위임 | 취소 <br> 근거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3) 지정수행기관의 현황과 입법구조

## 1)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008. 3. 21 제정, 법률 제8945호) 제 11 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 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하 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행기관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항). 명칭의 사용금지와 관련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행기관 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고(같은 조 제3항),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 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4항).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 12 조에서는 우 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확대를 위한 조 사•연구,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같은 법 제9 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개발 의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제 13 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 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 18 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항).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생 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 고 있다(제21조 제2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제 18 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

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필요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 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제2항). 벌칙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 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거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 22 조).

| 지정내용 |  |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수햄 업무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기준 위임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times$ | $\bigcirc$ | $\bigcirc$ |

2) 콘텐츠거래사실인증사업수행기관

콘텐츠산업 진흥법23) 제21조에서는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 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고, 우수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거래사실 을 확인•증명하는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법인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재정능력•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콘텐츠거래사실인증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하 여 인증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콘텐츠거래사실인증사업수행기 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콘텐 츠거래사실인증사업수행기관은 인증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인증업무의 종류,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5]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인증업무규정을 작성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콘텐츠거래사실인증사업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등과 관련해서는 콘텐 츠거래사실인증사업수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 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인 증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 항).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콘텐츠거래사실인증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콘텐츠거래사 실인증사업수행기관이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수행할 때에 콘텐 츠사업자의 거래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 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항).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콘텐츠거래사실인증사업수행기 관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다(제39조).

| 지정내용 |  | 콘텐츠거래사실사업수행기관(콘텐츠산업 진흥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점 } \\ & \text { 목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수행 } \\ & \text { 업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정 } \\ & \text { 요건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기준 } \\ & \text { 위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취소 } \\ & \text { 근거 } \end{aligned}$ | 청문 | $\begin{aligned} & \text { 업무 } \\ & \text { 정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도 } \\ & \text { 감독 } \end{aligned}$ | 승계 | 해지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유사명칭 <br> 사용금지 | 벌칙 |
| $\bigcirc$ | $\times$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times$ | $\times$ | $\bigcirc$ | $\times$ | $\times$ |

(4) 그 밖의 지정기관

이상에서 서술한 지정기관 외에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7 조의 2 에 따른 고용업무대행기관, 해사안전법 제 48 조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 항만법 제 28 조 및 항로표지법 제 32 조에 따른 검사 대행기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 16 조의 2 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 김치산업 진흥법 제 12 조 및 종자산업법 제 157 조의 4 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 10 조에 따른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 농약 관리법 제 17 조의 4 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농 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른 농수산 생명자원책임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 조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3 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 따른 지능형 전력망산업진흥지원기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7조에 따른 수렵강 습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 조의 3 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디자인보호법 제77조의 2 에 따른 디자인문서전 자화기관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령상 다수의 법률에서 다양한 분 야에 걸쳐 지정기관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검사•검증•인증•조사• 진단•관리•전문•보존•교육•평가•측정•시험•취급•전담•양성• 연구•책임 • 등록 • 추진 • 설치•수행 • 수련 • 지원 • 구독 • 심사 - 대행 • 거래•보전•강습•제출•확인•실시•주관 등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정기관의 다양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을 살펴 보면, 일정한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정기관에 관한 정형적인 법규정, 즉 지정기관제도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정형적인 규정군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법령에 도입되어 있는 지정기관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몇 가지 관점에서 분류•정리한 후, 지정기관제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법학적 검토의 소재를 제시하 기로 한다.

## 제 3 절 지정기관제도의 특징

## 1. 지정기관의 지정

## (1) 지정의 근거

지정기관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규정은 특정한 행정권한이 법 률상 규정된 후, 위임행정청이 지정기관으로 지정하는 단체에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수권규정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권력적인 권한행사에 해당하는 검사.검정, 시험 등의 업무를 지정한 자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다수의 법률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과 기관을 지정하는 행정청이 동 일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권한을 수권 받아 위임을 하는 행정 청과 기관을 지정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경우는 행정권한이 특정된 후에 그 실시가 지정기관에 위임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는 지정기관에 대하여 그것을 수행하도록 할 것을 수권하는 규정에 위임이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사 례도 있다. 이러한 정형적인 규정 외에는 국민에 대하여 정부기관과 아울러 주무장관이 지정한 자가 행하는 시험, 검사 등에 합격할 것을 직접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정기관에게 정부기관과 동등한 권한이 속 하고 있음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2) 지정의 주체

첫째 국가행정기관이 지정주체로서의 행정청이 되는 경우로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 34 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기관 지정, 생명 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8 조에 따른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 10 조의 7 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기관 지정, 항공법 제 60 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포장•용기 검사기관 지정, 수산물품질관리법 제 8 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0 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문화산업진흥법 제 16 조의 2 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가치평가기관 지정, 식품위생법 제 24 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 17 조 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으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의 주체가 되는 경우로는, 노인복지 법 제 39 조의 4 에 따른 시 • 도지사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8 조에 따른 시 - 도지사 등의 활동지원기관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지 역응급기관 지정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특별행정기관이 지정주체가 되는 경우로는 농약관리법 제 17 조 의 4 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화장품법 제 20 조에 따른 식약청장의 검사•측정기관 지정, 의료기기법 제 27 조에 다른 식 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시험 • 검사기관 지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제 14 조 에 따른 기상청장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 9 조의 2 에 따른 산림청장의 전문교육기관 지정,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 30 조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의 계측전문인력 교육 기관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 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중소기업경영•기술지도실시시관 지정, 디자인보호법 제 25 조의 2 에 따른 특허청장의 선행디자인조사전문기관 지정, 수상레저안전법 제 14 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시험대행기관 지정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합의제행정기관이 지정의 주체가 되는 경우로는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해정보제출기관 지정, 금융중심지 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0 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 조의 3 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전파법 제 58 조 의5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시험기관 지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행 정기관이 지정주체로서의 행정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특정하 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 책임기관의 장, 국가 또는 주무장 관 등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즉,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8 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탁등록보존기 관 지정, 농수산식품투자조합 결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 5 조에 따 른 국가의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 15 조에 다른 책임기관의 장의 농수산생명자원관리 기관 지정을 들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지정주체 로 규정함으로써,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가리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김치산업진흥법 제 11 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1 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종자산업법 제 157 조의 4 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을 들 수 있다.

## (2) 지정의 목적

많은 현행법령에서는 지정기관의 지정목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35 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 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선박안전보건법 제 36 조 에서는 "유해• 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할" 유해•위험기계안전검가시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항공법 제 60 조에서는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 문적으로 수행하는" 위험물포장 - 용기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 조에서는 "수 질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이에 대하여 철도안전법 제 36 조에서는 "제작검사를 효율적으로 실 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 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 조의 7 에서는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호환교통카드인증기관을 지정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지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나타 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의 형태를 살펴보면, 지정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경우, 지정의 목적을 규정하되 추 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 우로 구분할 수 있다.

## (3) 지정의 요건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지정을 할 때,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신청 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의 기준 및 요건 등에 관해서는 하위법 령에 위임하고 있다. 하위법령에 위임되는 지정의 기준 등으로는 해 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법인으로서의 요건, 특정설비•시설 의 요건, 특정직원의 배치의 요건, 업무수행의 장소배치의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염관리법 제 10 조에 따른 소금품질검사기관의 경 우, 법률에서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갖출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염제조업자가 아닐 것이라는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도 있다. 이와 같이 지정의 기준 등 의 위임근거를 두거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입법례에서는 업무 의 중립성확보, 전문적 능력의 확보라는 요건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제 77 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기관의 경우와 같이 지정기관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지정기준 을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입 법례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 23 조의 2 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을 들 수 있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구체적인 결격사유로는, 금치산자 또 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지정이 취소 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23조의3).

## (4) 지정의 공시

일반적으로 지정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권한행정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명, 주소, 수행하는 사무의 범위, 사업소의 소재지 등을 공시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예컨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 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수질검사기관, 선박안전법 제 18 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토양환경보전법 제 23 조의 2 에 따른 토양환경전문기관 등의 경우, 지정된 사실을 고시•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법령 상 배분된 권한의 소재를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당연한 규정이라 하 겠다. 권한위임의 경우에 법률의 근거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는 것과 대응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시는 지정•재지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의 중지•폐지를 허가한 때, 지정을 취소한 때, 사업소의 변경을 인가한 때 또는 신청을 수리한 때 및 행정청의 업무 를 재개한 때 등에도 요청되고 있다.

## (5) 지정의 승계

식품위생법 제29조에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승계와 관련하여, 식 품위생검사기관의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기관운영을 양도 또는 합병한 경우,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식품위생검사 기관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농산물품질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식품산업진흥법 제 24 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 전파법 제 58 조의 5 에 따른 적합성평가시 험기관, 토양환경보전법 제 23 조의 2 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에서 도 승계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지정기관의 지위 및 업무의 승 계와 관련하여 법령에서는 지정에 따라 업무가 위임되거나 지정취소 등에 의하여 위임행정청의 업무가 재개되는 경우, 승계의 규정을 두 고 있는 경우가 많다.

## 2. 지정기관의 의무

## (1) 업무정지•폐지 제한

지정을 받은 해당 지정기관은 일반적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권 한을 행사하지만, 다수의 법령에서는 위임된 권한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기관에 대한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지정기 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정지•폐지에 대한 제한으로서, 지정기관의 업무의 정지•폐지에 관하여 허가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 대, 전파법 제 58 조의 5 에 따른 적합성평가시험기관의 경우를 들 수 있 다. 즉, 적합성시험기관이 지정시험 업무를 일정기간 중지하거나 지정 시험 업무의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 정시험 업무의 전부를 폐지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정을 받 은 사항의 변경 또는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 록 하고 있다.

## (2) 신고 - 보고의무

지정기관의 명칭•주소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정내용의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즉, 지정기관의 명칭, 사업소 등

의 변경에 관해서도 주무장관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가 있다. 예컨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그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유해•위험기계안전검사기관 의 경우, 정해진 우해•위험기계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관할 지방고 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 25 조에 따른 석유제품품질검사기관의 경우도 검사 실시에 관한 검사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6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16 조의 2 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경우 도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가치평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치평가기관 은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 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 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 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경우도,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 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평가정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 (3) 기록•보관의무

지정기관에 대하여 장부 등의 비치, 특정한 사항의 기재•기록의무 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화장품법 제 20 조에 따른 화장 품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작성•발급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품질검사기관의 경우, 품질검사성적서를 작성•발급하 고, 검사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5 조에 따른 석유제품품질검사기관의 경우도, 검사기록을 작성•보 관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 24 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 관의 경우도 관련문서의 비치•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기 타

이상에서 서술한 의무 외에도, 지정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러한 지 위에 있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관하여 획득한 비밀을 누설하 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벌칙에 의한 제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특정업무의 실 시와 관련하여, 지정된 특정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정기준으로 정 한 기구, 그 밖의 설비를 구비하거나 특정한 자에게 해당 업무를 실 시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법률에 따라서는 특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정기관의 직원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 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0 조에 따른 축산 물위생검사기관의 경우, 대표자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 여 매년 축산물위생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3. 지정기관의 감독

## (1) 업무규정의 승인

많은 법령에서는 지정기관에 대한 감독행정청의 다양한 감독권을 규정하여 감독청이 지정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권한을 설정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지정기관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승인과 변경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정기관에 대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지정기관에 대한 사

전통제가 미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해당 규정이 해당 업무의 운영상 부적절하게 된 때에는 업무규정의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염관리법 제 10 조에 따른 소금품질검사기관 의 경우, 지정을 받은 소금품질검사기관에 대하여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염의 규격과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품 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 (2) 출입검사권

일반적으로 감독행정청은 그 직원에게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에서 지정기관의 사무소, 사업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서류 등 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 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휴대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해당 출입검사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 을 두고 있다. 예컨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0 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 사기관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그 업 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사무소, 검사 장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38 조의 2 제 1 항). 이에 따라 출입•조사•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식품위생법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경우도, 지정괸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식품위생검사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를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식품 위생검사기관의 사무소•검사장소 등에 출입하여 식품위생검사시설, 검사일지 및 기록서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검사

와 관련된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6조). 이와 같이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지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 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 (3) 지정의 취소

많은 법령에서는 지정의 취소와 관련하여, 감독행정청에 대하여 법 령위반, 업무규정에 따르지 않은 업무수행 등이 있은 경우, 지정기관 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서는 지정취소 를 감독행정청의 의무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감독행정청의 의무 적 취소사유로 하고 있다. 그 밖의 취소사유로는 염관리법 제 10 조에 따른 소금품질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등과 같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들 수 있 다. 이에 더하여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 약 사법 제 73 조에 따른 의약품등품질검사기관 등과 같이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거짓의 해당 검사성적서를 작성•발급한 경우를 포함하는 입법례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해당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4) 업무의 정지

기정기관의 지정취소가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서술한 의무적 취소 사유 외의 업무의 정지사유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35 조에 따른 고압가스안전검사기관과 같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정기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 36 조에 따른 철도차량제작검 사기관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더하여, 다른 입법례에서는 의무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작검사기준에 맞지 않은 철도차량에 대하여 제악검사의 적합판정을 하였을 때를 지정취소 또 는 업무정지의 선택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 등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는 농수산품 품질관리법 제 64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성검사기관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다 른 입법례에서 의무적 취소사유로 하고 있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 하여 계속적으로 안전성검사 및 시험분석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선택 적 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5) 지정의 유효기간

현행법령상 일반적으로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고압가스안전검사기관의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0 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경우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 24 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경우, 지정의 유효기 간을 지정을 받을 날부터 3 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1 년의 범위에서 1 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약사법 제 73 조에 따른 의약품등품질검사기관의 경우도, 유효기간 을 지정을 받은 날부터 3 년으로 하고,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 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법령에서 는 지정기관에 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이 만료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지 정기관에 대한 일정한 감독기능을 법령에 반영하고 있다.

## (6) 기 타

이상에서 서술한 것 외에도 임직원의 선임인가와 해임명령으로서, 지정기관에 대한 조직적 측면에서의 규제로서, 일부의 법령에서는 지 정기관의 임원 또는 특정직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주무장관의 인가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법령위반이나 업무규정위반을 이유로 하는 해임 명령의 근거도 두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업계획 등의 인가로서, 지정 기관은 매 사업연도개시 전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것을 변경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매 사업연도 후에 그 연도의 사업 보고서 및 결산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감독 명령권으로서, 감독행정청은 지정기관이 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 하지 않게 된 때 지정기관이 그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끝으로 보고요청권으로 서, 감독행정청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경리의 상황에 관 해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다.

## 4. 수수료 및 벌칙

## (1) 수수료의 납부

지정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해당업무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수수 료24)를 징수할 것을 지정기관에 수권하거나 그 자에게 지정기관에 대
24) 수수료란 실정법상으로나 학설상으로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하여 그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으로 정의되고 있다. 김원오, 특허 수 수료 감면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산업재산권 제13호(2003), 75 면 참조. 이와 관련하 여 공물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사용료"라 하고, 인적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를 "수수료"로 구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양자의 이용이 혼재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반대급부를 수수료라 부르고 있다. 조정찬, 현행 수수료제도와 개선방안,

한 수수료의 납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중교통 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 조의 7 에 따른 전국호환교통카 드인증기관의 경우,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 및 단말기 등 관련장비의 인증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법 제 22 조의 4 에 따른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의 경우도, 품질인증을 인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인증기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3 조에 따른 술품질인증기관, 선박안전법 제 18 조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토양환경보전법 제 23 조의 2 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경우에도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2) 벌칙에 의한 담보

현행법령상 지정기관의 임•직원 중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 법 및 기타 벌칙적용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해당 기관의 직무수행이 일반적 행정활동과 마찬가지로 보호되는 한 편, 해당 직원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벌칙규정에 따라 그 행동의 제 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35 조에 따른 고압가스안전검사기관, 철도안전법 제 36 조에 따른 철도차량제작검사 기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성검사기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0 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염관리법 제 10 조에 따른 소금품질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 24 조에 따른 심품위생검 사기관 등 많은 법령에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많은 법령에서 지정기관의 활동에 대한 벌칙에 따라 강력한 제제를 예정하고

월간 법제 1985년 2월호, 34 면 참조.

있다. 업무정지명령위반, 지정업무의 무허가 정지•폐지. 보고•통보 의무위반 또는 허위보고, 출입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장부기재• 비치의무위반 등에 관하여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조 치를 규정하고 있다.

# 제 4 장 현행 지정기관제도의 개선방안 

## 제 1 절 지정기관제도의 법룰문제

## 1. 행정청과 지정기관의 관계

(1) 지정의 법적 성질과 의의

현행법령상 지정기관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행정청의 행정작용법 상 행정권한을 전제로 하여 해당 권한을 지정된 사인에게 행하도록 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지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사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행정사무대행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행 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서비스 업무나 지도활동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구조의 법령상 핵심 적 수단이 지정행위이며, 이러한 경우의 "지정"은 국민에게 새로운 권 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특 허•인가•공법상 대리)로 파악되고 있다.25)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의료보험 요양기관의 지정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와 관련하여 그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26) 따라서 전형적인 지정기 관의 권한은 사인의 활동을 권력적으로 규제하거나 일반적으로 금지 한 후 개별적으로 금지(규제)를 해제하는 작용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 러한 한에서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정에 따른 지정기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위탁은 하급행정 청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는 것 을 시사하고 있다. 지정기관의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행정청이 속
25) 최정일, 검사(검정)제도, 월간 법제 2012년 1월호, 39 면 참조.
26) 대판 1999. 11. 26,97 누 10819.

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사인으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에 입각하고 있다．즉，지정기관제도는 사인의 지위를 보장하면서 권한위 임•위탁의 법리가 적용되는 한，이른바 내부법 관계가 사인의 영 역•외부법으로 확장하게 되는 법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전 술한 바와 같이 행정조직법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지정은 전체적 법제도로부터 권한의 위임 • 위탁행위에 해당하지만，이것은 행정청（위 임행정청）이 원래의 행정조직 외의 기관에 대하여，즉 직접 외부에 대 하여 지정에 따른 다양한 법적 규율을 가하는 행위로서，공권력의 행 사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지정기관에 대한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 자체는 법령이 배분한 권한을 사인에게 위임• 위탁하는 것에 해 당하므로，조직법적 관점에서는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며，지정기관에 대하여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규제를 함에는 그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 （2）지정기관과 행정조직법

지정기관을 기능적 행정조직으로 파악하여 행정조직법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즉，지정기관은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일 반적 행정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권한을 담당하는 조직으 로서 파악할 수 있으며，이와 같이 지정기관제도를 행정조직 중에서 파악하는 경우，이것은 기능적 행정조직으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7)}$ 일반적 행정조직이 아닌 것이 기능적으로 행정작용의 담당 조직으로서 법적으로 행정작용에 편입되게 되기 때문이다．지정기관 을 행정조직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도 있을 수 있으나，지정 기관은 일반적 행정조직과 같이 조직법적 통제가 미치지 않는 조직임 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행정조직이 담당하는 권한과 거의 유사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있으며，그것도 임시적 일시적이 아니라 항상적•계

27）米丸恒治，私人による行政（전게），346頁 참조．

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정착된 제도로서 행정조직법 의 대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지정기관과 행정기관론

현행 지정기관제도의 대부분은 자연인인 사인이 아니라 법인인 사 인이 지정되어 행정권한이 위임되고 있으며, 지정된 법인이 행정처분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 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종류 중에 법인인 행정기관이 존재하 게 되며, 일반적 행정기관의 종류로 열거되고 있는 독임제행정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과 함께 법인인 행정기관으로서 지정기관이 권한행 사를 하게 된다. 법인인 행정기관도 그 권한행사는 자연인인 직원이 행하게 되지만, 조직법상 권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법인 그 자체이 다. 다만, 해당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이 해당 법인의 결정에 위임되어 있어, 해당 법인의 직원의 행위를 해당 법인의 행위로 귀속시키기 위 한 권한처리규칙이나 사무처리규칙 등에 따라 법인 내부의 직원의 행 위를 법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을 미리 두게 된다.

## (4) 지정기관에 대한 감독

지정기관의 행정권한의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정기관에 대하여 는 조직이나 활동에 있어서의 권한감독이 매우 강하게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감독은 지정기관이 행하는 활동이 법령상 행정권한의 행사로 볼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보면, 권한위임에 수반하는 입법적 규제방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사인에 대한 행정권한의 위임이 행해지면 특허자는 위임행정청의 감독을 받 게 되어 있으며, 합법성의 감독이나 법적 감독(Rechtsaufsicht)뿐만 아 니라, 합목적성의 감독인 전문감독(Fachaufsicht)도 미치는 것으로 이해 되고 있다. ${ }^{28)}$ 다만, 지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의 범위는 사법주체로서의

사인의 활동 전반에 미칠 수는 없으며，위임된 직무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일반적 행정조직 내에서 상•하급관계가 아 닌 행정청 상호간 또는 다른 행정주체 간에 해당하는 때에도 수임행 정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미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따라서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권한의 위임 은 사인에 대하여 규제적인 행정작용을 행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수권 없이는 지휘•감독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겠다．위임에 따라 당연히 지휘•감독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행정권한 또는 그에 준하는 공공성이 높은 활동으로서 그 업무수행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법률에서 상세하고 엄격한 감독규정이 창설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지정기관의 활동은 행정권한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그 수행에 대한 행정권의 통제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즉，헌법론적 관점에서는 지정기관에 위임한 활동에 관하여 행정권으로서의 책임이 미치는 만큼의 지휘•감독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 경우，위헌의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지정기관에 대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하는 경우，지휘•감독권을 법률에 설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도출할 수 있다．이와 같이 헌법적으로 지휘•감독권의 창설이 요구 된다면，지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불가결의 규정이라 해야 할 것이다．지정기관은 어디까지나 사인에 해당하지만， 지휘•감독•통제를 필요로 하는 행정권한을 수임하여 수행하는 이 상，필요불가결한 구속을 받아야 하는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6]
## （5）지정기관의 활동과 손실보상

지정기관에 위임한 권한이 행정적 규제의 필요성이 없어 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령상 폐지된 경우，권한을 수임하여 일정한 경제적 활 동을 영위한 지정기관의 권리•이익이 보호되는가，손실보상을 필요 로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현행 지정기관제도에 관하여 문 제가 된 것은 아니지만，앞으로 규제완화 및 인•허가제도의 행정개 혁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관 련하여 독일에서는 검사권한을 기술감시협회로부터 주의 검사기관으 로 흡수한 사건을 둘러싸고 문제가 되었다．법원은 결론적으로 검사 권한의 흡수（위임의 철회）자체는 허용하는 한편，위임에 수반하여 발 생한 협회의 경제구조，지위에 대한 침해에 관해서는 보상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29)}$ 지정기관의 경우에도 행정권한의 위임을 철회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철회에 있어 지정기관이 투입한 재산권이나 경제적 이익에 관해서는 사적인 자본투입을 보호할 필요성이라는 관 점에서 손실보상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2．지정기관과 국민의 관계

## （1）지정기관의 행위의 성질

지정기관에 대하여 위임되는 권한의 성질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정기관의 활동은 위임행정청이 지정 또는 위임 이전에 보유하 고 있었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다．이로부터 지정기관이 행하는 행위의 성질도 위임행정청이 행하는 시험，검사，검정 등의 활동 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전형적인 지정기관이 행 하는 검사，검정，등록 등을 위임행정청이 행하는 경우에 그것을 행정 29）米丸恒治，私人による行政（전게），349－350頁 참조．

처분으로 이해한다면, 지정기관의 그러한 행위도 기본적으로 행정처 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지정기관의 처분"에 대하 여 이의신청을 인정하는 규정이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지정기관 중에는 시험의 부정수험자에 대하여 그 합 격을 취소하거나 수험을 금지 또는 정지하는 권한을 위임행정청에 인 정한 후, 지정기관에 대하여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이 부정행위의 존부를 판단하여 합격의 취 소 등을 결정하는 공권력의 행사, 권리제한적 행위를 행하게 된다. 이 와 같이 본래적으로 사인에 해당하는 지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권력적 인 규제를 해제하는 권한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위임받고 있 다는 점에서, 지정기관의 활동은 법기술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 성되는 것이다.

## (2) 지정기관과 행정심판•소송

지정기관과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 지정기관이 공권적인 권한을 스 스로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한, 지정기관은 기능적 의미에서 행정주체 또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법 제 2 조에 따르면,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 는 사인(私人)"으로 정의하고 있다(제4호).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도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 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 함된다"(제2항)고 하고 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인"에는 지정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지 정기관의 행위가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제2조 제1호)과 행정소 송법에서 말하는 처분 등(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0)}$ 물론, 지정기관의 행위가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도 감독청을 피고로 하도록 정하는 경우와 같이, 법률에서 그에 대한 예외를 둘 수는 있을 것이다.

## (3) 지정기관과 행정절차법

지정기관의 시험행위, 검사행위, 등록행위 등에 행정절차법이 적용 되는가의 문제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이다. 이 행정절차법은 주로 행정청의 처분과 행정지도에 적용되는 법률로 볼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와 같이 이 법에 서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인을 행정청 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제2조 제1호 나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또한 행정절차법에서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 으며(제 3 조 제 2 항), 여기에서도 지정기관의 권한행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별법에 예외규정이 없는 한, 지정기관의 처분 등에 대 하여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 (4) 정보공개법의 적용여부

지정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 는가의 여부에 관한 문제도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제2조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 본법 제 2 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 로 정의하고 있다(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제1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이 총 수입액의 2 분의 1 을 초과하는 기관 등(제 2 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제3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 영리법인(제5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중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는 문언 으로부터 보면, 지정기관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아직 불충분 또는 불명확한 상 태라고 보인다.

## (5) 지정기관과 국가배상

지정기관에 위임된 권한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해당 공권력 을 행사하는 지정기관이 위임행정청에 속하는 행정주체로서의 공무원 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기관이 행한 하자있는 권한행사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은 권한을 위임한 행정주체를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정기관은 행정주체인 행정청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으며, 그 활동의 공권력성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지정기관이 스스로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 지정기관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해당 지정기관 자체가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한 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정기관이 스스로의 이름으로 권 한을 행사하더라도 해당 권한은 위임한 행정청이 속하는 행정주체의 권한이라는 점, 수수료를 스스로의 수입으로 징수하더라도 행정경비 의 획득귀속의 문제와 국가배상의 책임소재는 다른 것이라는 점을 고 려하면, 해당 행정권한이 속하는 행정주체가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권한위임의 방식에 적합하며, 국민의 권리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31)}$ 그렇다면, 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등 과 그 사용자의 관계에 입각한 구상권의 행사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 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론적으로 남게 되지만, 국가배상법상 구상권 의 처리는 행정주체와 지정기관 간에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3. 지정기관의 헌법적 한계

지정기관의 활동은 행정권한의 행사를 위임받아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며, 지정기관에 의한 행정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 은 권한행사를 위임하는 행정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실무상 하나의 행 정수법으로 정착되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확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지정기관제도의 헌법적 한계, 즉 어떠한 권한까지 지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즉, 헌법은 행정권이 대 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66조 제4항), 지정기관에 위임되는 행정권이 헌법에 정해져 있는 행정권에 속한다고 볼 때, 직접 정부에 속하지 않는 사인에 해당하는 지정기관 에 대하여 행정권을 위임하는 것이 헌법 제66조 제4항에 위반될 수
31) 이러한 점은 특허자의 활동과 국가책임의 소재에 관한 독일의 논의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기술감시협회의 전문관이 행한 활동에 의해 위법하게 권 리를 침해받은 사인은 전문관에게 권한을 위임한 주에 대하여 국가책임법의 원칙 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김명용, 사인(私人)에 의한 행정 의 한계와 신장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4, 118-121면 참조.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지정기관에 대하여 영구히 또는 계속적으로 행 정권을 위임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 제66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한다고도 할 수 있다. ${ }^{32)}$ 그러나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권의 위임이 일시적•예외적이며, 지정기관의 행정권에 대한 정 부의 적절한 통제조치가 마련되어 있고, 정부가 그에 따른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헌법위반이라는 상황을 면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논의는 사인에 대한 행정권한위임을 제한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되는 독일 기본법의 해석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즉, 기본법 에서는 "공권적 권한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법상의 근무관계, 충성관 계에 있는 공무원에 계속적인 사무로서 위임되어야 한다"고 하여(제 33 조 제4항), 고권적인 권한의 관리에 대한 기능유보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기본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및 "계속적인 사무로서"라 는 2 개 문언으로부터 일시적•예외적인 사인에 대한 행정권한위임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편, 행정권한을 사인에 대하여 계속적• 원칙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행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당시 권력적인 권한에 해당 하였던 항공관제권한을 국가 이외의 사법상의 단체에 위임하는 개혁 의 위헌성이 지적되었으나, 예외적•일시적 권한의 위임만이 허용되 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봄으로써 해결된 바 있다. 여하튼 독일의 경 우, 이러한 헌법적 논쟁의 사례가 있으나, 기본법의 구체적인 규정과 의 관계에서 사인에 대한 권한위임의 한계가 확립되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66조 제4항이 독일기본법 제33조 제4항과 같이 사 인에 대한 권한위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에 관해서는 그다지 논의된 바가 없으며, 규정상으로도 특정한 행정 권한을 명시적으로 국가 또는 공무원에게 유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

[^8]려운 상황이다. 헌법상 특정한 행정권한을 국가가 독점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권력적인 권한을 사인에 대하여 위임하는 것에 한계 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인에 대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행정활동의 민영화의 헌법적 한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원래 국가가 독점하는 공권력행사의 민간위탁이나 사인에 의한 권력적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현재 많은 법률에서 채용되어 있는 지정기관제도에 대하여도 공권력행사의 국가독점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될 가치가 있는가의 합리성을 헌법적 관점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 제 2 절 지정기관제도의 개선과제

## 1. 개 관

이상에서 서술한 지정기관제도의 이용여부에 관한 정책적•법적 판단 또는 현상의 평가를 위해서는 민간단체인 지정기관의 권한수행에 따 른 행정활동의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래 사 인에 대하여 행정활동을 맡기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은 주로 사무•사 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로서, 비권력적인 행정의 역무제공이나 시 설관리의 민간위탁을 둘러싸고 논의되었다. 지정기관에 의한 행정활 동은 그것이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차이는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직 원이 공공성이 높은 활동의 수행에 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부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지 정기관에 의한 행정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정기관의 활동실태를 객관적으로 조 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연구의 한계로 인하여 실증적 자료에 기초한 개선방안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앞으로

지정기관에 의한 행정수법의 도입-확장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문 제점을 확인하고, 그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업무의 중립성과 투명성 확보

## (1) 업무수행의 중립성 • 객관성

지정기관은 위임행정청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특정한 업무 를 수행하지만, 지정기관의 대부분이 공무원에 의한 행정조직이 아니 다. 지정기관의 권한수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행정권한의 행사인 이상, 행정기관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평등원칙, 비례 원칙 등의 일반원칙에 구속되어야 하며, 기본권에 의한 구속도 마찬 가지이다. 그러나 지정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제도적으로 사익에 영향을 받기 쉬운 입장에 놓여있으며, 벌칙적용에 관하여 공 무원으로 간주됨으로써 공무원이 받는 형벌규정에 따른 구속은 받지 만, 벌칙의 부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정도에서, 편중되거나 편견을 가질 수 있다. 나아가 공무원의제규정과 형벌규정의 관계에서 보면, 어느 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지정기 관의 활동 중에는 위임된 권한의 행사로서의 활동 외에도 해당 법인 의 고유한 활동이 있으므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활동과 그 외의 활 동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로부터 형벌에 의한 제재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해당 기관의 사적인 활동으로도 파 악될 수 있는 등의 형태로, 직무수행의 중립성 확보에 관해서도 애매 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단체가 규제대상인 민간기업의 사업자단 체인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평한 사무수행과 차별적 취급, 참가규제적인 장해의 발생 등이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지정기관의 경우는 민법상 공익법인인 단체에

해당하며, 법령에 따라서는 공익법인일 것을 지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예도 많으나, 공익법인도 영리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 다는 점에서, 위임된 활동과 영리적 활동의 구분이나 객관적 중립성 의 확보여부 등에 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일반인 공익법인에 대하여도 위임된 활동과 영리적 활동의 구분이나 객관적 중립성의 확보여부 등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 면, 더욱 더 중립성과 공익성이 요청되고 있는 지정기관의 활동에 대 해서는 영리활동과 사업자단체로서의 활동으로부터 수임활동의 분리, 중립성의 확보 등이 보다 강하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 (2) 지정기관의 투명성

일반적 행정기관의 활동에 관해서는 정부 또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국회의 통제가 미치게 되지만,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적 행정조직 과 단절된 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지정기관의 활동에 관한 정보 가 국민대표의 직접적인 통제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보고요청권이나 출입검사권 등을 수권함으로써, 지정기 관의 활동에 대한 감독이나 정보수집의 수단이 확보되어 있으나, 사 실상으로 지정기관의 경우, 투명성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행정조직이 정부를 통하여 국회의 감시 하에 두어지는 정도가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정기관의 현황 및 활동상황에 관해서는 통일적 인 조사•통계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이러한 의문을 증폭 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정기관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 정기관의 경우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의 실시기관으로서 그 적용범위에 명확하게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되지만, 지정기관이 일반적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점, 지정기관에 관

한 논의가 충분히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부터 보면，현재 명확한 대상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지정기관도 일반적 행정청과 같은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원칙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33)}$

## 3．권리구제와 수익자부담의 고려

## （1）권리구제수단의 확보

권리구제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지정기관의 합법적 행정처분을 유도하는 효과도 가진다는 점에서 완전한 행정구제도의 확립은 민주행정의 첩경이며，정의사회구현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지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은 일반적 행정기관의 활동과 마 찬가지로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에 기초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다만，현실적으로는 지 금까지 이러한 문제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지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구제법의 다양한 제도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에 대하여는 여전히 불안정•복잡한 상황에 있다고 하겠다．또한 특 정한 활동에 관련되는 당사자가 복잡하게 됨으로써，책임소재가 불명 확하게 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따라서 국가배상책임의 소재，책임분담，쟁송의 당사자 등에 관한 공통적인 인식의 확립이 필 요하며，이를 기초로 학문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33）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환경정보법이나 브란덴부르크주의 정보공개법에서는 특허 자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다．米丸恒治，私人による行政（전게），361頁 참조．

## (2) 지정기관과 수익자부담

일반적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 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 }^{34)}$ 이와 관련하여 지정기관은 위임행정청으로부터 위임 된 행정활동에 관하여 스스로의 수입으로 국민으로부터 수수료를 징 수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민은 지정기관의 행정 활동의 대가로서 수수료를 납입하고 있으나, 그것이 해당 활동에 관 한 서비스의 대가라는 관계에 있으며, 해당 지정기관의 수지계산으로 파악되는 경우, 지정기관의 활동 상대방에 대한 수익자부담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지정기관과 수수료의 적절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4. 행정의 종합성과 유연성 강화

## (1) 행정의 종합성 • 정합성

오늘날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해관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현대행정은 다양성과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행정 작용은 전체적으로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정기관에 대하여 권한위임을 하지 않고, 일 반적 행정조직이 시험•검사•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업무 간의 종합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규제효과의 증대도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정기관에 대하여 권한위임을 한 경우, 감독청이 지정기관에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등이 방법을 사용
34) 박상원, 수익자부담원칙의 이해, 재정포럼 제 135 호(조세연구원, 2007), 6 면 참조. 35) 이중호,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법적 평가, 동아법학 제 47 호(2010), 89 면 참조.

하더라도 여전히 지정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의 종합성•정합성이 저하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지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지정기관과 행정의 유연성

지정기관은 위임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특정한 행정적 활동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의 활동과 직원의 배치 및 설비 등 과의 관계에서, 해당 활동에 대한 해당 지정기관의 의존성이 높아지 게 된다. 지정기관의 활동이 위임된 행정활동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 에는 해당 활동 그 자체가 고정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예컨대 검 사•시험활동 그 자체에 대한 조건변화에 따라 해당 활동 그 자체가 소멸하는 등 질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연한 대응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 즉, 전체적 규모로 보아 행정기관의 경우는 행정활동의 변화•개혁에 따른 인원의 이동, 설비의 개편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 응할 수 있으나, 지정기관의 경우는 특정한 활동에 의존하여 검사 등 의 활동을 유지•확보하려 할 것이며, 이로부터 지정기관의 활동이 기득권화•경직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규제행정의 개혁을 위하여 전개된 지정기관의 이용•확대가 결과적으로 해당 규제행정을 기득권 화•경직화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를 결과적으로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정기관에의 자본투하, 지정기관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는 지정의 철회•취소가 필요한 경 우, 그에 대한 손실보상의 필요성과도 관련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 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제 3 절 지정기관제도의 개선방안

## 1. 개 관

이상에서는 지정기관에 의한 행정의 법적 문제로서, 위임행정청과 지정기관의 관계에서는 지정의 법적 성질과 의의, 지정기관과 행정조 직법, 지정기관과 행정기관론, 지정기관에 대한 감독, 지정기관의 활 동과 손실보장 등을 중심으로, 지정기관과 국민의 관계에서는 지정기 관의 행위의 성질, 지정기관과 행정심판•소송, 지정기관과 행정절차 법, 정보공개법의 적용여부, 지정기관과 국가배상 등을 중심으로 각각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적 문제에 기초하여 업무수행의 중립성과 투명 성 제고, 권리구제 및 수익자부담의 고려, 행정의 종합성과 유연성 강 화라는 해결해야 될 공법학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제는 어 디까지나 학문적•이론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지 정기관제도에 관한 공법학의 과제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 서는 이러한 지정기관에 의한 행정의 법적 문제 및 과제에 기초하여,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및 구조를 검토한 후, 지정기관제도의 공통 적 입법구조 내지 내용, 즉 지정의 목적•절차, 지정기관의 의무 등에 관한 주요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지정목적의 명확화

## (1) 종합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 지정기관의 지정목적에 관해서는 지정 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정의 목적을 규정하되 추 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 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정기관제도의 경우, 국민생

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지정의 목적이 법률에 최대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추 상적이거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따 라서 지정의 목적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지적의 목적이 추상적이어서 설정하지 않은 경우와 동 일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지정의 목적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또한 지정의 목적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및 지정 의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는 지정기관제도 자체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 가 있으며, 목적이 구체적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목적의 정당성을 확 인한 후,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관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정기관의 지정목적에 관한 주요 현행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 개선방안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5항에 따른 유해• 위험기계안전검사 기관의 경우,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기관으로 약칭하고 있을 뿐, 지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제7조에 서는 유해•위험기계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조사•평가 및 지도•감독 의 목적으로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 어,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지정의 목적을 지도•감독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래 "안전검사 업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나 "안 전검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라는 목적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생각되지만, 특별히 구체적인 목적을 열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 한 한 구체적으로 목적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해• 위험기 계안전검사기관의 지정목적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 검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 관"으로 하고, 유해•위험기계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목적

으로는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의 적절한 관리"로 변 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현 행) | 산업안전보건법(개선안) |
| :---: | :---: |
| 제 36 조(안전검사) (5)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 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br> (6) <생 략> <br> (7)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 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 36 조(안전검사) (5)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 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br> (6) <생 략> <br> (7)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 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둘째, 항공법 제 60 조 제 3 항에 따른 위험물포장 - 용기검사기관의 경 우는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 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다. 여기에서도 "위 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을 "포장•용기검사기관"으로 약칭하고 있을 뿐, 지정의 목적으로 명 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물론 같은 항 후단의 "제 1 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문언으로부터 지정의 목적을 도출할 수도 있으나, 동일한 항에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와 "제1항에 따른 검사"가 중복적으로 등장함으로써, 지정의 목적은 물론 법령의 이해도 를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제3항을 제1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항공법(현 행) | 항공법(개선안) |
| ---: | ---: |
| 제60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 제60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
| (1)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 (1)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
| 용기를 제조 $\cdot$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 용기를 제조 $\cdot$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


| 항공법(현 행) | 항공법(개선안) |
| :--- | :--- |
| 는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 는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
|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 |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 |
| 아야 한다. | 아야 한다. |
| (2) <생 략> | (2) <생 략> |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위험물의 용기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검사업 |
|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 | 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 |
| 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 • 용기검 | 여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
| 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 | 기관(이하 "포장 • 용기검사기관"이라 |
| 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셋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0 조 제 1 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경우, 축산물위생검사를 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각 호로 규정하 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위생검 사기관(제1호)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 관"(제2호)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지정기관을 각 호로 나열하는 경 우에도 지정의 목적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 대, 식품위생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경우, 식품 위생검사를 행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각 호로 구정하면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제 1 호)과 "식품위생검사를 효율 적으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 검사기관"(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축산물위 생관리법도 이러한 입법례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축산물위생관리법(현 행) | 축산물위생관리법(개선안) |
| :---: | :---: |
| 제20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 20 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
| (1) 제 4 조제 3 항, 제 12 조, 제 15 조제 2 항 | (1) 제 4 조제 3 항, 제 12 조, 제 15 조제 2 항 |
| 및 제 19 조제 1 항 제 2 항에 따른 검토 | 및 제 19 조제 1 항 $\cdot$ 제 2 항에 따른 검토 |
| 또는 검사(이하 "축산물위생검사"라 | 또는 검사(이하 "축산물위생검사"라 |


| 축산물위생관리법(현 행) | 축산물위생관리법(개선안) |
| :--- | :--- |
| 한다)를 하는 기관(이하 "축산물위생 | 한다)를 하는 기관(이하 "축산물위생 |
|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
| 같다. | 같다. |
|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
| 물위생검사기관 | 물위생검사기관 |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축 | 2. 축산물위생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 |
| 산물위생검사기관 |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
|  | 지정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 (3) 개선방향

현행법령상 지정기관의 지정목적은 대부분 " $\bigcirc \bigcirc$ 검사 업무를 효율 적•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또는 " $\bigcirc \bigcirc$ 검사를 위하여"라는 추 상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성검사기관과 같이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 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규정 되어 있다. 또한 약사법 제 73 조 제 1 항에 따른 의약품등품질검사기관 의 경우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위하여"라는 더욱 추상적인 목적 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는 지정기관의 지정목적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현행 법률을 대상으로 최소한 이러한 정도의 지정목적이 필요하 다는 점에서 보편적 입법례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경우 에는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한 식 품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와 같이 구체적으로 지정의 목 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법 제22조의4에 따른 도시철도용 품품질인증기관의 경우도, "도시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 치 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라고 하여 구체적인 지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지정의 목적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서는 약간의 중복적 규정으로 법령이 길어지게 된다는 단점도 있으 나, 지정기관제도의 확대경향을 고려한 바람직한 정착 및 발전을 위 해서는 가능한 한 지정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 3. 지정요건의 구체화

## (1) 종합검토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의 내용은 구체적이 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 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 고,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 록 하고 있다(제5조). 이와 같이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의 기본원칙으 로서 "투명성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의 원 칙으로부터 보면, 행정청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 기관을 지정하고, 지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 또는 의무를 부여 하기 위해서는 지정기관의 요건이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지정기관의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지정기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행정법의 기본이념인 "투명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현행법령상 지정요건에 관한 입법구조를 살펴보면, 첫째 염관리법 제 10 조에 따른 소금품질검사기관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갖출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염제조업자가 아닐 것(제2항)이라는 지정의 요건 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 품투자조합 경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 5 조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 관의 경우도,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융자•회계•자금관리 업

무를 5 년 이상 담당하였을 것 등의 구체적인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 다. 둘째, 의료기기법 제 27 조에 따른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 약사법 제 73 조에 따른 의약품등품질검사기관 등과 같이 법률에서는 필요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제3항),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셋째,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식품위 생법 제 24 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등과 같이 지정요건은 특정하 지 않은 채, 지정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넷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 19 조에 따른 공 산품시험•검사기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5 조에 따른 석 유제품품질검사기관 등과 같이 국가표준기본법 제 23 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등이라는 요건을 규정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를 지정요건으로 하는 입법례도 있다. 다섯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35 조에 따른 고압가스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 보건법 제 36 조에 따른 유해 - 위험기계안전검사기관 등과 같이 법률상 지정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도 현행법령상 지정요건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법구조를 취하 고 있다.

지정요건에 관한 입법구조의 경우, 법률에 직접 지정요건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떠한 사람 이라도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법률에 지정요건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자나 결격사유만을 규정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에서는 필요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후, 구체적인 지정요건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나 다른 법률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를 지정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입법기술상 부득이하게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정요건에 관하여 전적으로 하위법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는 전술한 명확성의 원칙 등 위임입법의 일반적 한계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법령상 지정요건에 관한 주요 규정의 개 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 개선방안

첫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고압가스안전검사기관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지정의 기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이에 기초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 24 조에서는 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과 관련 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이 필요한 검사를 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제 1항), 각각의 지정 및 재지정의 구체적 요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 하고 있다(제2항). 즉,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는 전문검사기관이 갖 추어야 할 지정요건으로서,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법 제 35 조의 2 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2 년 이 지났을 것,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자산능력이 있을 것,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기술 검토를 받았을 것,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의무•기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호). 다음으 로 공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으로는 민법이나 그 밖의 다 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검사대상시설 또는 제품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거나 가스시설의 안전업무를 할 능력이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같은 항 제2호).

이와 같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고압가스안전검사기관의 지 정 및 재지정 요건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와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의 하위법령 내용이 동일하므로 중복적 규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최소한의 것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정요건 을 구체화하고, 위임규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현 행)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선안) |
| :---: | :--- |
|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1) 시 • 도지사 |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1) 시 • 도지사 |
| 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 | 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 |
| 리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 | 리업무를 전문적 • 효율적으로 수행하 |
| 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르로 정하는 | 게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 |
|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요한 기술 및 자산능력 등을 갖춘 자를 |
|  |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2) - (3) <생 략> (2) - (3) <생 략> <br> (4)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따른 검사기관 (4) 제 1 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 <br> 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 • 방법과 그 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방법과 그 <br>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br> 한다. 한다. |  |

둘째, 철도안전법 제 35 조에 따른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의 경우, 제 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을 판매하려는 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 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고(제1항), 이에 따른 성능시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성능 시험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4항), 이러한 성능시험기관 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5항). 이에 기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에서는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으로서,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성능시험에 필요한 시험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성능시험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어떠한 기관이 철도 차량성능시험기관으로 될 수 있는가가 법률 차원에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명확성의 원칙 및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하위법령에 위임될 지정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철도안전법(현 행) | 철도안전법(개선안) |
| :---: | :--- |
| 제35조(철도차량의 성능시험) (4) 국토해 | 제35조(철도차량의 성능시험) (4) 국토해 |
| 양부장관은 성능시험을 효율적으로 | 양부장관은 성능시험을 효율적으로 |
| 실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성능시 |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에 |
| 험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성능시험기 | 필요한 기술인력과 전담조직 등을 갖 |
| 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성능시험을 | 춘 자를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
| 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 |
|  | 다)으로 지정하여 성능시험을 하게 할 |
|  | 수 있다. |
| (5)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 (5)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 <br> 차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차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br>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셋째, 선박안전법 제 18 조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경우, 국토해 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형선박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에게 필요한 검정을 위하여 미리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제1항), 이 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 으며(제2항), 이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형식시험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이에 기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형식시험기관의 지정기준으로서, 형식승 인시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을 것, 형식승인시험 대상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직접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 자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형식승인시험의 특정 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 23 조 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 해당할 것,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선박안전법의 경우, 지정기관제도에 관한 일반적 입법구조에 서는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상의 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하위법령에 위임될 지정 요건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 선박안전법(현 행) | 선박안전법(개선인) |
| :---: | :---: |
| 제 18 조(형식승인 및 검정) (1) $\cdots \cdots$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 (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br>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 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야 한다. $\cdots \cdots<$ 생 략> <br>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시험기 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br> (4) <신 설> | 제 18 조(형식승인 및 검정) (1) $\cdots \cdots$ 미리 <br>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 (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br>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 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야 한다. $\cdots \cdots<$ 생 략> <br> (3) 국토해양부장관은 형식승인시험의 업무에 필요한 전담부서와 장비 및 인 력 등을 갖춘 자를 제 2 항의 규정에 따 른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시험기관 (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br> (4)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넷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16 조의 2 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 문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 고(제1항),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으로서, 문화상품•문화기술의 우수성 및 기 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평가모델 및 구체적인 평가기법을 보유할 것,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출 것, 최근 3 년간 관련평가 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이 있을 것,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 을 위한 정보망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 다. 이와 같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경우에도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요건이 법률상 명확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유사입법례 및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현 행)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선안) |
| :---: | :---: |
| 제 16 조의 2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과 문 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 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 (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br> (2) - (5) <생 략> <br> (6)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16 조의 2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과 문 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 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필 요한 전문인력과 평가기법 및 시설 등 을 갖춘 법인을 가치평가기관(이하 "평 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 (5) <생 략> <br> (6)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 개선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정기관의 신청요건에 관해서는 대부분 입법구조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정요건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예측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가 많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 제 36 조에 따른 유해•위험기계안전 검사기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 조에 따른 해 앙심층수수질검사기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른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0 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 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 19 조에 따른 공산품시험•검사

기관，도시철도법 제 22 조의 4 에 따른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 등 많 은 입법례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5 조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 염관리법 제 10 조에 따른 소금품질검사기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 업법 제 25 조에 따른 석유제품품질검사기관 등과 같이 지정요건을 법 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36 조 에 따른 유해•위험기계안전검사기관，식품위생법 제 24 조에 따른 식 품위생검사기관，화장품법 제 20 조에 따른 화장품안전성검사기관，의료 기기법 제 27 조에 따른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약사법 제 73 조에 따른 의약품등품질검사기관，자동차관리법 제 47 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전 문검정기관，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등과 같이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지정요 건의 대강으로서＂○○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앞으로 지정기관제도에 관한 입법 적 정비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예측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지정취소의 객관화

## （1）종합검토

현행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입법구조에서는 대부분 지정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를 함께 규정하면서，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를 열거 하고 있고，그 중에서 의무적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예컨대，고 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35 조에 따른 고압가스안전검사기관의 경우，지 정기관의 취소사유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은 경우，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지 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그 밖에 검사부적정（檢査不適正）등 검사

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열거한 후, 이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 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35 조의 2 제 1 항). 다 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 으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문 제가 되는 것은 유사한 기정기관제도에 관한 입법례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취소사유가 틀리다는 점과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이 법률상 존 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의 지정취소사유 현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4】 지정기관의 지정취소사유 현황

| 법률 및 지정기관 | 의무적 취소사유 | 선택적 취소•정지사유 |
| :--- | :--- | :--- |
|  |  |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br>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 고압가스 안전관 <br> 리법 제35조에 따 <br> 른 고압가스안전 <br> 검사기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br>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br> 은 경우 | 제 35 조 제 4 항에 따른 지정기준 <br> 에달하게 된 경우 |
| -그 밖에 검사부적정 등 검사기관 |  |  |
| 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  |  |
| 정한 경우 |  |  |


| 법률 및 지정기관 | 의무적 취소사유 | 선택적 취소•정지사유 |
| :---: | :---: | :---: |
|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작검 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철도차량 에 대하여 제작검사의 적합 판정 을 하였을 때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0 조에 따른 축 산물위생검사기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은 경우 <br>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검사성적서를 거짓 으로 발급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 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제5항 전단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br> -제 38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출입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 나 기피한 경우 <br> -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염관리법 제 10 조 에 따른 소금품질 검사기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은 경우 <br> -업무정지 기간 중에 품 질검사 업무를 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 월 이상 품질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br> -제 10 조 제 2 항에 따른 요건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br> -제 10 조 제 3 항에 따라 품질검사 를 하지 아니한 경우 <br>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검사를 거 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
| 식 품 위 생 관 리 법 제 24 조에 따른 식 품위생검사기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은 경우 <br>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거짓의 식품위생검 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 급한 경우 <br> -식품위생검사 업무정 지 처분기간 중에 식품 위생검사업무를 행하 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위생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 반한 경우 |


| 법률 및 지정기관 | 의무적 취소사유 | 선택적 취소.정지사유 |
| :---: | :---: | :---: |
| 화장품법 <br> 제 20 조 에 따른 화장품안 전성검사기관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br> -제 21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br> -제 21 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의료기기법 제 27 조에 따른 의료기 기시험검사기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은 경우 <br>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거짓의 시험검사성 적서를 작성•발급한 경우 <br>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 무를 한 경우 |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 10 조 제 5 항, 제 27 조 제 4 항 또 는 제 28 조 제 4 항에 따른 준수사 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약사법 제73조에 <br> 따른 의약품등품 질 검사기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은 경우 <br> -품질검사성적서를 거 짓으로 작성•발급한 경우 <br>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 무를 한 경우 |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제 34 조의 2 제 3 항, 제 34 조의 3 제 3 항 또는 제 73 조 제 3 항에 따른 준 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품질경영 및 공산 품 안전관리법 제 19조에 따른 공산 품시험 - 검사기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시험•검 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br> -업무정지 기간에 자율 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를 거 부한 경우 <br>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 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 한 경우 <br>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법률 및 지정기관 | 의무적 취소사유 | 선택적 취소•정지사유 |
| :---: | :---: | :---: |
|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 25 조에 따른 석유제 품품질검사기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 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기간에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 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 니한 경우 <br>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 하여 판정한 경우 <br> -제 25 조 제 3 항에 따른 품질검사 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5조 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 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또 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br>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 거나 지연한 경우 |
| 자동차관리법 제 47조에 따른 택시 요금미터전문검정 기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은 경우 <br>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 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를 한 경우 <br>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br>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 달한 경우 <br>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 사를 받지 아니한 검정용기계 기구로 검사를 한 경우 및 정확 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정용기 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정을 한 경우 <br> -제72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법률 및 지정기관 | 의무적 취소사유 | 선택적 취소.정지사유 |
| :---: | :---: | :---: |
|  |  | -제72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 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 철도안전법 제28 조에 따른 철도용 품품질인증기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았을 때 <br>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 하여 그 정지기간 중 품 질인증업무를 하였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계속 하여 품질인증업무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 <br>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 을 때 <br> -품질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 인증을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3 조에 따른 술 품질인증기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계속 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br>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 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 생된 경우 |
| 철도안전법 제35 조에 따른 철도차 량성능시험기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계속 하여 성능시험업무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 <br>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 을 때 <br> -성능시험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성능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한 철도차량에 대하여 성능 시험의 적합 판정을 하였을 때 |


| 법률 및 지정기관 | 의무적 취소사유 | 선택적 취소•정지사유 |
| :---: | :---: | :---: |
| 선박안전법 제18 조에 따른 형식승 인시험기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 는 때 <br> - 형식승인시험기관 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형식승인시험의 오차•실수• <br>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 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br>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 의 실시를 거부한 때 <br>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 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 하게 받은 때 |
| 전파법 제 58 조의 5 에 따른 적합성평 가시험기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은 경우 <br>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br> -2회 이상 업무정지 명 령을 받은 지정시험기 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 반하여 업무정지 사유 에 해당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제58조의6 제1 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br>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
| 기술의 이전 및 사 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 조에 따 른 기술평가기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은 경우 <br>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br>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 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 이하 인 경우 <br> -제 4 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3 회 이 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br>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이와 같이 18 개의 대표적인 지정기관의 취소사유를 살펴본 결과, 지 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의무적 취소사유가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장품법 제 20 조에 따른 화장품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모든 지정기관에 공통되는 의무적 취소사유로서 (ㄱ)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18 개의 입법례 중 12 개에서 (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4 개의 입법례에서 (ㄷ)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시험성적서를 거 짓으로 발급한 경우를 의무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의 무적 취소사유로는 (ㄹ) 2 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지정기관이 다 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ㅁ)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ㄹ)과 (ㅁ)의 경우는 지정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괄적으 로 의무적 취소사유로 하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정기관제도의 취지 및 업무•기능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ㄱ)과 (ㄷ) 및 (ㄷ)의 경우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모 두 의무적 취소사유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 도안전법 제 36 조에 따른 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 화장품법 제 20 조에 따른 화장품안전성검사기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5 조에 따른 석유제품품질검사기관, 철도안전법 제 28 조에 따른 철도용품품질 인증기관 및 같은 법 제 35 조에 따른 철도차량성능검사기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3 조에 따른 술품질인증기관, 전파법 제 58 조의 5 에 따른 적합성평가시험기관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인증•시험결과를 제시한 때를 선택적 취소사유로 규정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정기관에 의한 본질적 사항의 위반에 대한 효율적 지도•감독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기관에 의한 행정 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의 무적 취소사유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개선방안

첫째, 철도안전법 제35조 제6항에서는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의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의무적 취소사유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제1호)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사 항의 위반에 해당하는 "성능시험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성 능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한 철도차량에 대하여 성능시험의 적합 판정 을 하였을 때"(제4호),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를 의무적 취소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철도안전법(현 행) | 철도안전법(개선안) |
| :---: | :---: |
| 제35조(철도차량의 성능시험) (6) 국토해 | 제35조(철도차량의 성능시험) (6) 국토해 |
| 양부장관은 $\cdots \cdots$ 지정을 취소하거나 6 | 양부장관은 $\cdots \cdots$.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 |
|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 |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
| 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 |
|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
| 한다.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br> 지정을 받았을 때 지정을 받았을 때 <br> 2.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계속하여 2.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계속하여 <br> 성능시험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성능시험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br>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 3. 제 5 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 <br> 하게 되었을 때 하게 되었을 때 <br> 4. 성능시험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4. 성능시험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br> 과실로 성능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한 과실로 성능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한 <br> 철도차량에 대하여 성능시험의 적합 철도차량에 대하여 성능시험의 적합 <br> 판정을 하였을 때 판정을 하였을 때 |  |

둘째, 화장품법 제 25 조 제 1 항에서는 화장품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 소와 관련하여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4호)

만을 의무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지정기관제도의 일반적 입법 구조에서 의무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위반 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제1호)도 의무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를 항으로 신설하고, "시험성적서를 거짓으 로 발급한 경우"를 의무적 취소사유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화장품법(현 행) | 화장품법(개선안) |
| :---: | :---: |
| 제25조(지정의 취소 등) (1) 식품의약품안 | 제25조(지정의 취소 등) (1) 식품의약품안 |
| 전청장은 $\cdots \cdots$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 | 전청장은 $\cdots \cdots$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 |
|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
|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 |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 |
| 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
|  | 취소하여야 한다. |
| <신 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 지정을 받은 경우 |
| 1.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2.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 | 3. 제21조제 1 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 |
| 추지 아니한 경우 | 추지 아니한 경우 |
|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 |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 |
| 키지 아니한 경우 | 키지 아니한 경우 |
| 4.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수 | 5.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수 |
| 행한 경우 | 행한 경우 |

셋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4 조에서는 술품질인증 기관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정을 받은 경우"만을 의무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중대한 위 반에 해당하는 "제 26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

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제4호)는 제외 시키고 있어, 이를 의무적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br> (현 행)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안) |
| :---: | :---: |
| 제 24 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1)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은 $\cdots \cdots$ 지정을 취 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 24 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1)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은 $\cdots \cdots$ 지정을 취 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및 제 4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2.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3. 제 23 조제 4 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 23 조제 4 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4. 제 26 조제 1 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 4. 제 26 조제 1 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
| 결과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 결과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
|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
|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
|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

넷째,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인증기관의 경우, 국토해 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 하도록 하고(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에게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 증기관을 지정하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관해서는 국 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5항).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2008. 5. 27 제정, 국토해양부령 제 15 호)에서는 친환경건축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절차(제3조)에 더하여 지정취소(제5조)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 와 같이 건축법에서는 지정기관제도의 입법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취소에 관 한 규정을 법률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건축법(현 행) | 건축법(개선안) |
| :---: | :---: |
|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2) 국토해 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 1 항에 따른 친 환경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br> (3)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 2 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br> (4) <생 략> <br> <신 설> |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2) 국토해 <br> 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 1 항에 따른 친 환경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br> (3)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 2 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br> (4) <생 략> <br>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인 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 정을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br>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br>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 하지 아니한 경우 <br> 3. 제 3 조제 3 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br> 4.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친 환경건축물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br> 5.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 한 경우 |

\(\left.\begin{array}{|c|c|}\hline 건축법(현 행) \& 건축법(개선안) <br>
\hline \& 6.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br>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end{array}\right]\)| (5)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 (6)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
| :--- | :--- |
|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이ㄴㅡㅡㅇ 신청 절차 |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 |
|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 |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 |
| 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 (3) 개선방향

이상에서 서술한 것 외에도, 철도안전법 제 28 조 제 3 항의 철도용품품 질인증기관의 취소사유의 경우도 "제 31 조 제 1 항 각 호의 조치를 한 결과 품질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것으로 인정될 때"(제5호)를 의무적 취소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 제7항의 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의 취소사유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정 비할 필요가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석유 제품품질검사기관의 경우도,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 정한 경우"를 선택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의무적 취소 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정기관제도의 입법구조 개선에 있어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검사•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를 의무적 취소 사유로 하는 방향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 는 경우에는 이를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

## 제 5 장 결 론

행정법령의 제정 및 운용에 있어서 일정한 행정작용을 주체, 목적, 요건, 형식 및 절차, 감독 및 규제, 행정구제 등의 차원에서 체계화함 으로써, 각각의 행정제도에 대한 입법이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이 연구에서는 현행법령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지정제도의 유형적 다양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관제도와의 접점 내지 관련성을 도출하고, 지정기관제도의 의의와 입법현황 및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지정기관제도의 입법 구조를 살펴보면, 지정의 주체, 지정의 목적•요건•절차, 지정기관의 권리와 의무, 지정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 등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입법구조의 도출을 통하여 지정기관제도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지정기관제 도의 학문적•이론적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현행법제의 대표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연구의 한계 등으로 지정기관제도의 전 반적인 사항 및 운영실태 등에 관한 검토까지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앞으로의 과제를 남기면서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행정청이 지정행위를 한 경우, 지정된 자가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법률상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정 기관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각종 인증 기관의 경우, 인증기관이 담당해야 할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이 명확하 게 제시되어야 있어야 함에도 대부분의 입법례에서는 하위법령에 위 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한 해결책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청이 지정행위를 하려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에 대하여도 법률상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법률상 지정의 목적 및 요건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해도, 지정의

절차가 명확하지 못하면 지정과정에 행정청의 자의적인 개입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지정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구조는 지정 의 절차를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가의 여부 및 정도의 문제로서 이에 관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당초 각종 지정제도에 관한 입법례를 대상으로 출발하였 으나, 연구의 기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지정 기관제도로 범위가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관제도에 관한 연구 및 학문적 관심의 부족 등으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 에서 지정기관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연구가 지정기 관제도에 대한 입법이 가지는 구조적인 완전성을 도모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정제도의 학문적 • 실무적 검토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연구를 마 치기로 한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김남진 • 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02.
김동희, 행정작용법, 박영사, 2005.
김동희,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一考, 서울대학교 법학 제 46 권 제 2 호(2005), 238-277면.

김동희, 공익사업의 특허개념에 대한 몇 가지 논점의 검토, 고시연구 제23권 제9호(1996. 9), 41-58면.

김명용, 사인에 의한 행정의 한계와 신장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 법제연구원, 2004.

김민호, 행정주체로서의 공법상 사단법인의 존재의의에 관한 재검토, 저스티스 제74호(2003).

김세규, 사인에 의한 경찰행정, 공법학연구 제 2 권 (영남공법학회, 2000). 김은경•이상대•김태곤•김정태, 농지규제의 개선방향-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2007.

김창규, 지방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한 법제개선 및 정책방향, 한양 법학 제19집(2006), 167-183면.

김효순, 중요무형문화재 무용분야 지정현황 비교조사 연구, 한국무용 기록학회지 제4호(2003), 25-36면.

민봉기,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관한 소고-온천원 보호지구 지정과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 도시문제 제 471 호(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8), 92-101면.

박은철•황덕남•이대희•손명세,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이후의 의료체계 조명, 한국의료법학회지 제 10 권 제 1 호(2002), 123-134면.

박재민•김선우, 연구개발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혁신형 중소 기업 지정제도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논문집(2009), 1-13면.

박정희, 문화재보호의 법리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1집(한국법학회, 2008), 77-96면.

배지헌•김상일•이호영, 변경된 감사인 지정제도가 신규상장기업의 이익조정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 27 권 제 3 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09), 237-272면.

박층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방안, 제 270호(국회입법조사처, 2011. 7), 1-4면.

송운석•이성제,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민간위탁집행-쓰레기수거업무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 13 권 제 3 호(2001).

송시강, 행정행위 유형론에 대한 재검토-허가와 특허, 인가 개념을 중 심으로-, 홍익법학 제 12 권 제 1 호(2011), 483-534면.

송시강, 형정법상 특허 개념의 연혁과 현황, 홍익법학 제 10 권 제 1 호 (2009), 285-314면.

신보성, 사인에의 행정권한위임의 법적 고찰, 법조 제526호(2000).
양청삼,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제도, 학술정보 정보호호 뉴스 제45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1), 1-4면.

양효석, 민간공연예술단체 공공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예술경영 연구 제 17 집(한국예술경영학회, 2010), 31-58면.

유영성•이경선•리철규，환경정비구역 지정제도의 합리적 적용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2.

이상근，서울시 건설신기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대한 토목학회지 제56권 제1호（2008），75－80면．

이세정，「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상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제 도의 주요 내용 및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공법학연구 제 10 권 제4호（한국비교공법학회，2009），327－350면．

이용상•정병현，한국 및 일본의 철도문화유산 보존제도 비교연구，한국 철도학회논문집 제14권 제2호（2011），174－180면．

이정석•조세환，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 분석，한국 조경학회지 제 39 권 제 3 호（2011），98－106면．

오준근，「지정」제도의 입법구조 분석，월간 법제 2002년 6월호，14－31면． 오준근•박영도•김명연，경제규제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한국법제연구원（현안분석 96－1）， 1996.

이준서，건설신기술과 특허는 어떻게 다를까？，대한토목학회지 제 54 권 제1호（2006），161－163면．

이창균，일본의 민관활력 및 지정관리자 제도 도입，지방재정 2005년 1 월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2005），145－155면．

임경호，일본 정령（政令）지정도시의 제도와 문제점，지방행정 제53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04），59－67면．

장흥훈，광양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물류거점으로서의 발전 방안，물류학회지 제14권 제3호（2004），115－139면．

정상철，게임산업 연구개발활동의 정책화와 경제적 효과 ：＇기업부설 창작연구소＇지정제도를 중심으로，경제연구 제 28 권 제 3 호（한국 경제통상학회，2010），121－141면．

정연우•이삼수，유사목적 지역•지구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생태계 및 상수원보전 목적의 지역•지구를 중심으로－，국토계획 제45권 제7호（대한국토•토지계획학회，2010），31－45면．

조용기，일본 교토시의 역사적 경관 관리제도에 관한 해석적 연구，관광 연구 제 23 권 제 3 호（대한관광경영학회，2008），57－73면．

조정찬，사인에 의한 행정에 관한 연구，월간법제 제458호（1996．2）．
조정찬，지방자치에서의 위임 • 위탁 및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고찰，자치 입법실무 제6집（법제처，2001）．

최규영，행정행위가 갖는 특별한 효력의 근거－그 역사적 기원과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법조 제596호（2006．5），174－204면．

최세영，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고－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과 훈련 과정 승인여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법조 제602호（2006．11）， 19－44면．

최정표，기업집단지정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산업조직연구 제 11 권 제 3 호（한국산업조직학회，2003），1－35면．

홍준석•김규연•권오상，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 에서의 통합적 환경관리 요소에 개한 기초적 연구，환경영향평가 제17권 제2호（2008），113－124면．

## 2．국외문헌

米丸恒治，私人による行政，日本評論社， 1999.
三橋良士郎•榊原秀訓，行政民間化の公共性分析，日本評論社， 2006.
總務行政監察局 編，行政代行型法人の透明化•敵性化のために，大蔵省印刷局， 1997.

中矢一義，公共ホールの定策評價，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05.
財團法人土地情報センター 編，土地取引規制便覽，大成出版社， 1989.
財團法人日本都市センター 編，PPPによる自治体経営，公職研， 2005 。


【부 록】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  | $\begin{aligned} & \text { 파 } \\ & \text { Ho } \\ & \text { Ho } \\ & \text { Ho } \\ & \text { odo no } \\ & \text { 강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낻 就 | $\begin{aligned} & \mu \stackrel{H}{N} \\ & \frac{1}{\pi} \\ & \frac{H}{K}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마 싸 } \\ & \text { 아N } \\ & \text { 거 } \\ & \text { 퍼 } \end{aligned}$ | ＇ | ＇ | ＇ |
| $\begin{aligned} & \text { 衣 } \\ & \text { 和 } \end{aligned}$ |  |  | $\frac{\text { स마 }}{\frac{x^{2}}{1+5}}$ |  | $\frac{\text { स마 }}{\frac{1}{k r} \mathbf{x}^{\circ}}$ |
| $\begin{array}{l\|l} \frac{1070}{ \pm} & \stackrel{\Gamma}{\lambda} \\ \frac{\text { 가 }}{} & \text { 여 } \end{array}$ |  | $\frac{\text { Tio }}{\frac{10}{\tau}}$ | $\begin{aligned} & \text { דio } \\ & \text { 파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דु० } \\ & \text { 파 } \end{aligned}$ |  |
| KT ㄷ <br>  머Г | ＇ | ＇ | ＇ | ＇ | 1 |
| 마 | $\bigcirc$ | $\bigcirc$ | ＇ | $\bigcirc$ | 1 |
| $\begin{aligned} & \bar{k} \\ & \mathrm{~K}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羿 } \\ & \vec{k}^{\circ}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text { 碞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羿 } \\ & \vec{k}^{\circ}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stackrel{1}{x_{0}}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寝 } \\ & \stackrel{\rightharpoonup}{0} \end{aligned}$ |
| $\bar{K} 0$ 파 <br> ＂「П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frac{\text { 㐫 }}{\text { OF }}$ | $\frac{\text { 熍 }}{\text { or }}$ | 岀 |  |  |
|  | No <br> 0 $\begin{aligned} & \text { 少寝 } \\ & \frac{1}{2} \end{aligned}$ | 交 <br> 和 <br> 这示 |  | $\begin{aligned} & \frac{1}{\alpha} \\ & \text { स } \\ & \text { 登动 } \\ & \text { से } \end{aligned}$ |  |
| $\begin{aligned} & 1+0 \\ & 100 \\ & K-1 \end{aligned}$ | $\underset{\sim}{ \pm}$ | $\cdots$ | $\begin{aligned} & \text { N } \\ & \text { OT } \\ & 0 \\ & \infty \\ & \infty \end{aligned}$ | $\begin{aligned} & N \\ & \tilde{0} \\ & \infty \\ & \infty \\ & \infty \\ & \hline \end{aligned}$ | $\underset{+\infty}{\underset{\infty}{+}}$ |
| $\begin{aligned} & \text { ㅁ } 0 \\ & \text { 垤 } \\ & \text { 표 } \end{aligned}$ |  |  |  |  |  |
| $\begin{aligned} & \text { 피 } \\ & \langle\boldsymbol{H} \end{aligned}$ | － | $\sim$ | $m$ | $\dagger$ | in |

209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영 } \\ & \frac{1}{ \pm} \\ & \text { 마 } \\ & \text { K } \end{aligned}$ | 낟 枵 | $\frac{\mathrm{K}^{\circ}}{\mathrm{K}} \text { 积 }$ | ＇ | ＇ | K | ＇ |
|  | 玄 硘 |  |  | ＇ | F | ＇ |
|  | $\begin{aligned} & \text { ㄱ } \\ & \text { 여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ㄲo } \\ & \text { 파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피 } \\ & \text { 파 } \end{aligned}$ | ＇ | F |  |
|  | 자 | ＇ | ＇ | ＇ | $\bigcirc$ | ＇ |
|  | 마 | $\bigcirc$ | ＇ | $\bigcirc$ | 1 | ＇ |
|  | $\overline{\text { K }}$ KF | 垦 | $\begin{aligned} & \text { 水 } \\ & x^{0}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x^{\circ} \end{aligned}$ |  | $\xrightarrow{\text { ¹ }}$ |
| 중마 あ「「 |  | $\bigcirc$ | $\bigcirc$ | ＇ | $\bigcirc$ | 1 |
| राश्र刑边 |  |  |  |  |  |  |
|  |  |  |  | 䒚而 <br> 込叫荘 <br> ■ 师 |  | 畑可宊 거가 퍼 마 <br>  |
| $\begin{aligned} & \frac{1}{100} \\ & K-1 \end{aligned}$ |  | $\stackrel{\text { N}}{\stackrel{0}{0}}$ | $\cdots$ | $\stackrel{\wedge}{\infty}$ | $\infty$ | $\pm$ |
| $\begin{aligned} & \text { ㅁ } 0 \\ & \text { 페 } \\ & \text { 吅 } \end{aligned}$ |  | 可曻 <br> 交 的 <br>  <br> 制频理 <br> it of <br> o न |  | $\begin{aligned} & \text { 矿 } \\ & \frac{\text { IIN }}{N} \\ & \frac{N}{N} \\ & \frac{1}{N} \end{aligned}$ |  |  |
| $\begin{aligned} & \text { 피 } \\ & \text { < }-1 \end{aligned}$ |  | $\bigcirc$ | － | $\infty$ | $a$ | $\bigcirc$ |

210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여 } 0 \\ & \frac{1}{د} \\ & \text { 맙 } \\ & \mathrm{KH} \end{aligned}$ | 나 加 | ＇ | ＇ | न | $\begin{aligned} & \text { ㄲo } \\ & \text { 파 } \end{aligned}$ | ＇ |
|  | 夜 和 |  | ＇ | $\bar{x}$ |  | ＇ |
|  | $\begin{aligned} & \text { ㄱ } \\ & \text { 여 } \end{aligned}$ | $\frac{\text { 咱 }}{1}$ | $\frac{\text { 留 }}{\tilde{T}}$ | $\overline{\text { FI }}$ | $\frac{\text { 烪 }}{7}$ | $\frac{\text { 㨔 }}{}$ |
|  | K「 미 | ＇ | $\bigcirc$ | ＇ | $\bigcirc$ | $\bigcirc$ |
|  | 마 지 | $\bigcirc$ | $\bigcirc$ | ＇ | ＇ | ＇ |
|  | $\begin{aligned} & \overline{\bar{k}} \\ & \mathrm{~K}-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水 } \\ & \text { 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住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然 } \\ & \text { 品 } \end{aligned}$ |  |
| 재아 ＂г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 |
|  <br> 焐「0 |  |  |  |  | 㐫 | $\begin{aligned} & \frac{\text { 需 }}{} \end{aligned}$ |
| $\frac{\text { K } 0 \text { ㄱㄱ 」 }}{\bar{K} \bar{n}}$ |  |  |  |  | of「 <br>  | 信归 <br> 性六 <br> 标崔 |
| $\begin{aligned} & \frac{1}{100} \\ & K-1 \end{aligned}$ |  | $\infty$ | $\infty$ | $\stackrel{\text { N }}{\sim}$ | 9 | $\begin{aligned} & \text { 岢 } \\ & \stackrel{0}{\circ}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和 } \\ & \text { 敬 } \\ & \text { 巩 } \end{aligned}$ |  |  |  |  |  | 可州理 낭ㅇㅇㅇ动 0 动 No |
| $\begin{aligned} & \text { T」 } \\ & \text { 仙 } \end{aligned}$ |  | $\exists$ | $\simeq$ | $\cdots$ | $\pm$ | $\cdots$ |

211

| 순 번 | 법 령 명 | 조 항 | $\begin{aligned} & \text { 지 정 } \\ & \text { 기 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ㅂㅓㅓ 적 } \\ & \text { 성 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약 칭 } \\ & \text { 여 부 } \end{aligned}$ | 조문내용 |  |  |  |  |  | 소관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체 | 업 무 | 목 적 | 요 건 | 절 차 | 감 독 |  |
| 16 | 도시철도법 (1979.4, 제정) | §22의 6 | 전담기관 |  | - | 장관 | - | $\bigcirc$ | 부령 | 부령 | 부령 |  |
| 17 |  | § 22 의 4 | 품질인증 기관 |  | $\bigcirc$ | 장관 | - | $\bigcirc$ | 대령 | 대령 | 대령 |  |
| 18 | 해양환경관리법 | §77 | 해양오염 영향조사 기관 |  | - | 장관 | - | - | $\bigcirc$ | $\begin{aligned} & \text { 업뭋젓지 } \\ & \text { 청문 } \end{aligned}$ | - |  |
| 19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5 | 해양 심층 수 수질 검사기관 |  | $\bigcirc$ | 장관 | - | $\bigcirc$ | 부령 | 부령 | 부령 |  |
| 20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35 | 전문검사 기관 |  | $\bigcirc$ | 장관 | - | - | 고시 | 고시 | 고시 |  |
| 21 | 해사안전법 (1986.12, 제정) | §48 | 인증 심사 대행기관 | 대행 | $\bigcirc$ | 장관 | $\bigcirc$ | $\bigcirc$ | 대령 | $\begin{aligned} & \text { 업문젓지 } \\ & \text { 청문 } \end{aligned}$ | 보고의무 |  |

2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여우 } \\ & \frac{1}{J} \\ & \text { 더 } \end{aligned}$ | W「 吅 |  |  | न | ＇ | \＄10 | 피아 |
|  | 夜 和 |  |  |  | $\frac{\text { स }}{\text { ¢ }}$ |  |  |
|  | $\begin{aligned} & \text { ㄱ } \\ & \text { 여 } \end{aligned}$ | 产 | $\begin{aligned} & \text { 피 } \\ & \text { 파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끼 } \\ & \text { 파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和 } 10 \\ & \text { It } \end{aligned}$ | ［矿 | $\begin{aligned} & \text { 䂽 } \\ & \hline \end{aligned}$ |
|  | K「 미 | ＇ | ＇ | ＇ | $\bigcirc$ | ＇ | $\bigcirc$ |
|  | 마 ㅈI | ＇ | ＇ | ＇ | ＇ |  | ＇ |
|  | $\begin{aligned} & \overline{\bar{K}} \\ & \mathrm{KF}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x^{0}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hat{x}^{\circ}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栗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露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text { 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斏 } \end{aligned}$ |
| $\bar{K} 0$ 마 ＂г |  | $\bigcirc$ | $\bigcirc$ | ＇ | $\bigcirc$ | $\bigcirc$ | ， |
| राँㄷ焐 $₹ 0$ |  | $\begin{aligned} & F_{0}^{\boldsymbol{T}^{\prime}}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䨗 } \end{aligned}$ |  |  |  |  |
| $\begin{aligned} & \text { 죽ㄱ } \\ & \bar{K} \frac{1}{n} \end{aligned}$ |  |  |  | $\begin{aligned} & \text { 需 } \\ & \text { of } \\ & \text { ra } \end{aligned}$ | 아 <br> 「 <br>  |  |  |
| $\begin{aligned} & \frac{1}{100} \\ & \mathrm{KH} \end{aligned}$ |  | $\stackrel{\infty}{\infty}$ | $\underset{\sim}{\sim}$ | $\stackrel{\infty}{\infty}$ | $\begin{aligned} & m \\ & 0 \\ & \stackrel{m}{\infty} \end{aligned}$ | 8 | 5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TJ } \\ & \text { 倛 } \end{aligned}$ |  | ત | $\underset{\sim}{\sim}$ | ～ | へ | $\stackrel{\sim}{1}$ | へ |

213

| 순 번 | 법 령 명 | 조 항 | $\begin{aligned} & \text { 지 정 } \\ & \text { 기 관 } \end{aligned}$ | $\text { 법 적 } \text { 석 }$ | 약 칭 | 조문내용 |  |  |  |  |  | 소관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체 | 업 무 | 목 적 | 요 건 | 절 차 | 감 독 |  |
| 28 |  | §60 | 전문검사 기관 |  | $\bigcirc$ | 장관 | - | - | 부령 | 부령 | 부령 |  |
| 29 | 항공법 시행령 | §63 | 항공영어 <br> 구술능력 <br> 증명 평 <br> 가기관 |  | - | 장관 | - | - | 부령 | 부령 | 부령 |  |
| 30 | 항공법 시행규칙 | §245의 3 | 성능적합 성 증명 전문검사 기관 |  | - | 장관 | - | - | 고시 | 고시 | 고시 |  |
| 31 | 한국도로공사법 (1969.1, 제정) | §16의 3 | 공익서비 스비용산 정 - 평가 전문기관 |  | - | 장관 | - | $\bigcirc$ | 부령 | 부령 | 부령 |  |
| 32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16의 2 | 지정측정 기관 |  | $\bigcirc$ | 장관 | - | - | - | - | - |  |

2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여우 } \\ & \frac{1}{J} \\ & \text { 더 } \end{aligned}$ | 以「 勍 | ＇ | $\begin{aligned} & \text { 푸 } \\ & \text { 파 } \end{aligned}$ | ＇ | ＇ | ＇ | ＇ |
|  | 夜 吅 | $\begin{aligned} & \text { Hopdo } \\ & \text { Io 가 } \end{aligned}$ |  | 宕 |  |  |  |
|  | $\begin{aligned} & \text { ㄱ」 } \\ & \text { 여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나꿍 } \\ & \text { Ho까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Tio } \\ & \text { 파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피 } \\ & \text { 파 } \end{aligned}$ | $\frac{\text { To }}{\tilde{F}}$ | 矿 | $\frac{\text { To }}{\tilde{F}}$ |
|  | K「 맏 | $\bigcirc$ | ＇ | ＇ | ＇ | ＇ | $\bigcirc$ |
|  | 마 이 | ＇ | ＇ | ＇ | ＇ | ＇ | $\frac{\text { 敢 }}{1}$ |
|  | $\begin{aligned} & \overline{\bar{k}} \\ & \mathrm{KF}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鬲 } \\ & \hat{N}^{0}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䨗 } \end{aligned}$ |  |  | $\begin{aligned} & \text { 䨗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䨗 } \end{aligned}$ |
| $\bar{k} 0$ 마 ＂г |  | ＇ |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राँㄷ焐 $₹ 0$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K0永 } \\ & \bar{K}- \end{aligned}$ |  |  |  |  |  | No oj知非 |  |
| $\begin{aligned} & \frac{1}{100} \\ & \mathrm{KH} \end{aligned}$ |  | $\stackrel{\sim}{0}$ | $\begin{aligned} & \text { N } \\ & \text { of } \\ & 0 \end{aligned}$ | $\pm$ | $\sim_{\infty}^{\infty}$ | $\stackrel{\infty}{\infty}$ | $\cdots$ |
|  |  | $\begin{aligned} & \text { 矿 } \\ & \text { 怙 } \end{aligned}$ |  |  |  |  |  |
| $\begin{aligned} & \text { TJ } \\ & \text { 仙 } \end{aligned}$ |  | m | m | m | ¢ | － | $\stackrel{\infty}{\sim}$ |

215

| 순 번 | 법 령 명 | 조 항 | $\begin{aligned} & \text { 지 정 } \\ & \text { 기 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버⼋ 적 } \\ & \text { 성 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약 칭 } \\ & \text { 여 부 } \end{aligned}$ | 조문내용 |  |  |  |  |  | 소관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체 | 업 무 | 목 적 | 요 건 | 절 차 | 감 독 |  |
| 39 |  | §37 | 정밀 진단 기관 |  | 0 | 장관 | 대령 | $\bigcirc$ | 대령 | $\begin{aligned} & \text { 업뭋젓지 } \\ & \text { 청문 } \end{aligned}$ | - |  |
| 40 |  | §15 | 적 정 검사 기관 |  | $\bigcirc$ | 장관 | - | - | 대령 | $\begin{aligned} & \text { 업뭋저ㅅㅣㅣ } \\ & \text { 청문 } \end{aligned}$ | - |  |
| 41 |  | §16 | 교육훈련 기관 |  | $\bigcirc$ | 장관 | - | - | 대령 | $\begin{aligned} & \text { 업뭋젓지 } \\ & \text { 춰손 } \end{aligned}$ | - |  |
| 42 |  | § 21 의 2 |  |  | - | 장관 | - | - | 대령 | 취소 | 검사 |  |
| 43 |  | § 21 의 4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br> 인정기관 |  | $\bigcirc$ | 장관 | - | - | 대령 | 취소 | 검사 |  |
| 4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5 | 입주자저 <br> 축 취급 <br> 기관 |  | $\bigcirc$ | 장관 | - | - | - | - | 보고 |  |

216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여우 } \\ & \frac{1}{J} \\ & \text { 더 } \end{aligned}$ | Н「 吅 | 다 | ＇ | ＇ | ＇ | $\begin{aligned} & \text { 㕃 } \end{aligned}$ |
|  | 夜 䀾 | $\bigcirc$ | ＇ | $\frac{\text { 碕 }}{1}$ | $\begin{aligned} & \text { \#ु० } \\ & \text { 파 } \end{aligned}$ |  |
|  | $\begin{aligned} & \text { ㄱ } \\ & \text { 여 } \end{aligned}$ | ＇ | 1 | $\frac{\text { 碕 }}{}$ | $\begin{aligned} & \text { 피 } \\ & \text { 파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ㄲo } \\ & \text { 파 } \end{aligned}$ |
|  | K「 맏 | ＇ | ＇ | ＇ | ＇ | ＇ |
|  | 마 | ＇ | ＇ | ＇ | ＇ | $\bigcirc$ |
|  | $\begin{aligned} & \overline{\bar{k}} \\ & \mathrm{KF}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禞 } \\ & \hline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良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hat{N}^{0}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良 } \end{aligned}$ |
| $\bar{k} 0$ 마 ＂г |  | $\bigcirc$ | ＇ |  | ＇ | $\bigcirc$ |
| राँㄷ焐 $₹ 0$ |  |  |  | $\begin{aligned} & \frac{\pi_{0} 0}{1} \\ & \frac{1}{\tau}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需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죽ㄱ } \\ & \bar{K} \frac{1}{n} \end{aligned}$ |  |  |  | 文 <br> 마 덱 <br> 砍 | 㖿榢 <br> $\bar{\circ}$ <br> 小和云 <br>  |  |
| $\begin{aligned} & \frac{1}{100} \\ & \mathrm{KH} \end{aligned}$ |  | $\cdots$ | $\begin{aligned} & \circ \\ & 0 \\ & \stackrel{0}{2} \\ & \stackrel{2}{\infty}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I } \\ & \text { oi } \\ & \stackrel{\rightharpoonup}{\infty} \end{aligned}$ | $\stackrel{\stackrel{\pi}{0}}{\stackrel{1}{\leftrightarrows}}$ | $\stackrel{4}{4}$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TJ } \\ & \text { 仙 } \end{aligned}$ |  | な | $\%$ | F | $\stackrel{\infty}{+}$ | ช |

217

| 甭파鬲－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영 } \\ & \frac{1}{1} \\ & \text { 머 } \\ & \mathrm{KH} \end{aligned}$ |  | ＇ | 닥 | $\begin{aligned} & \text { 和 } \\ & \text { 파 } \end{aligned}$ | ＇ | ＇ |
|  | 夜 和 | $\frac{\text { 矿 }}{\tilde{1}}$ |  | ＇ | ＇ | $\bigcirc$ |
|  | $\begin{aligned} & \text { ㄷ } \\ & \text { 여 } \end{aligned}$ | $\frac{\text { 敬 }}{\text { 2 }}$ |  | 矿 | Wᄑ | $\bigcirc$ |
|  | $\begin{aligned} & \text { Kए } \\ & \text { 마 } \end{aligned}$ | $\bigcirc$ | ＇ | ＇ | ＇ |  |
|  | 마 ¢ 1 II | ＇ | ＇ | ＇ | ＇ |  |
|  | $\begin{aligned} & \overline{\bar{K}} \\ & \mathrm{KF}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禞 } \\ & \stackrel{1}{0} 0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䨗 } \end{aligned}$ | $\stackrel{\text { 䨗 }}{ }$ | $\begin{aligned} & \text { 水 } \\ & \stackrel{1}{\mathrm{x}} \end{aligned}$ | $\begin{aligned} & \overline{\bar{x}} \mathrm{k}^{\circ} \\ & \text { 忟 } \end{aligned}$ |
| 재암 ○「П |  |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 K「 ${ }^{1}$形 $<0$ |  |  | $\stackrel{\text { 雱 }}{ }$ |  |  |  |
| $\begin{aligned} & \bar{k} 0 \text { न 」 } \\ & \bar{K} \bar{n} \end{aligned}$ |  | 이에 和市如灭 <br>  |  |  |  |  |
| $\begin{aligned} & \frac{1}{100} \\ & K-1 \end{aligned}$ |  | $\begin{aligned} & \frac{\pi}{01} \\ & 0 \\ & 0 \\ & 0 \end{aligned}$ | $\underset{\infty}{q}$ | $\underset{\sim \infty}{\infty}$ | ${ }_{\text {a }}^{\infty}$ | $\stackrel{\sim}{4}$ |
|  |  |  | $\begin{aligned} & \text { 玵 } \\ & \text { 础 } \\ & \text { 阿 } \end{aligned}$ |  |  |  |
| $\begin{aligned} & \text { TJ } \\ & \text { 性 } \end{aligned}$ |  | in | $\bar{n}$ | N | $\cdots$ | 罜 |

218

| 순 번 | 법 령 명 | 조 항 | $\begin{array}{l\|l} \text { 지 정 } \\ \text { 기 관 } \end{array}$ | $\begin{aligned} & \text { 법 적 } \\ & \text { 성 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약 칭 } \\ & \text { 여 부 } \end{aligned}$ | 조문내용 |  |  |  |  |  | 소관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체 | 업 무 | 목 적 | 요 건 | 절 차 | 감 독 |  |
| 55 | 김치산업 진흥법 | §11 | 교육 훈 련 기관 | 위탁 | - | $\begin{gathered} \text { 국가 } \\ \text { 지자체 } \end{gathered}$ | - | $\bigcirc$ | 대령 | 대령 | 대령 | 농림수산식품부 <br> (총 39건) |
| 56 |  | §12 | 전문인력 양성기관 | 위탁 | - | 장관 | - | $\bigcirc$ | 대령 | 대령 | 대령 |  |
| 57 | 수산물품질관리법 | §8 | 품질 인증 <br> 기관 |  | $\bigcirc$ | 장관 | - | - | 부령 | 업무정지 <br> 취소 <br> 청문 | - |  |
| 58 |  | §30 | 수산물검 사기관 |  | $\bigcirc$ | 장관 | - | - | 대령 | 업무정지 <br> 취소 <br> 청문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제 } \end{aligned}$ |  |
| 59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 §10 | 수산동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  | $\bigcirc$ | 장관 | - | - | 고시 | 업무정지 <br> 취소 청문 | - |  |
| 60 | 농림수산식품투 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5 | 투자관리 전문기관 |  | $\bigcirc$ | 국가 | - | $\bigcirc$ | $\begin{aligned} & \text { 대ㄹㅕㅕ } \\ & \text { 부재 } \end{aligned}$ | 대ㅂㅕㅕ 부재 | $\begin{aligned} & \text { 대령 } \\ & \text { 부재 } \end{aligned}$ |  |

219

| 순 번 | 법 령 명 | 조 항 | $\begin{aligned} & \text { 지 정 } \\ & \text { 기 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법 적 } \\ & \text { 성 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약 칭 } \\ & \text { 여 부 } \end{aligned}$ | 조문내용 |  |  |  |  |  | 소관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체 | 업 무 | 목 적 | 요 건 | 절 차 | 감 독 |  |
| 61 | 농산물품질관리법 <br> (1999.1, 제정) | §6 | 농산물우 수관리인 증기관 |  | - | 장관 | - | $\bigcirc$ | 부령 | 싳처소 | 부령 |  |
| 62 | 농산물품질관리법 | §14의 2 | 안전성검 사기관 | 대행 | - | 장관 | - | $\bigcirc$ | 부령 | 싳처소 | 부령 |  |
| 63 |  | §26 | 검사기관 | 대행 | - | 장관 | - | $\bigcirc$ | 부령 | $\begin{aligned} & \text { 싳첫 } \\ & \text { 업무성지 } \end{aligned}$ | 부령 |  |
| 64 |  | §27 | 검정기관 | 대행 | $\bigcirc$ | 장관 | - | $\bigcirc$ | 부령 | 신첫소 | 부령 |  |
| 65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 §27 | 시료검정 기관 |  | - | 장관 | - | $\bigcirc$ | 고시 | 고시 | 고시 |  |
| 66 | 농약관리법 (1957.8, 제정) | § 17 의 4 | 시험연구 기관 |  | - |  | - | $\bigcirc$ | 부령 | 유신척ㄱㅏㅏㄴ | 부령 |  |
| 67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7 | 농어업인 재개발전 문기관 |  | $\bigcirc$ | 장관 | - | $\bigcirc$ | 대령 | $\begin{aligned} & \text { 싳첫 } \\ & \text { 어ㅂㅜㅜ정지 } \end{aligned}$ | 대령 |  |

220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영 } \\ & \text { 立 } \\ & \text { 朝 } \\ & \mathrm{KH} \end{aligned}$ | НГ 吅 | 피아 | $\frac{\text { 敬 }}{1}$ | $\frac{\text { 矿 }}{\tilde{1}}$ | $\begin{aligned} & \text { 마 } \\ & 0 \\ & \text { r- } \\ & \text { 거 } \end{aligned}$ | ＇ |
|  | 夜 吅 |  | 礝 |  | ＇ |  |
|  | $\begin{aligned} & \text { तנ } \\ & \text { 여 } \end{aligned}$ | Wio | $\frac{\text { 矿 }}{7}$ | 矿 | ＇ | ［10 |
|  | K「 맏 | $\bigcirc$ | $\bigcirc$ | $\bigcirc$ | 1 | $\bigcirc$ |
|  | 마 이 | $\bigcirc$ | $\bigcirc$ | $\bigcirc$ | 1 | ＇ |
|  | ¢ K KF | $\begin{aligned} & \text { 然 } \\ & \text { 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露 } \end{aligned}$ |  | NAtplo $\frac{10}{\mathrm{~K}^{0}}$ Ho K． |  |
| 주ㅇㅏㅏ ＂г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 |
| K「 ${ }^{\pi}$ <br> 刑「0 |  | $\begin{aligned} & \text { 䨗 } \end{aligned}$ |  |  |  |  |
| $\begin{aligned} & \text { K } 0 \text { ल｣ } \\ & \bar{K} \bar{n} \end{aligned}$ |  | 4 <br> एJ <br> 啊 寝 |  |  | H <br> ए <br> 要需 |  |
| $\begin{aligned} & \frac{1}{100} \\ & K-1 \end{aligned}$ |  | 9 | $\underset{i \infty}{ \pm}$ | $\frac{n}{\infty}$ | $\cdots$ | $\bar{\square}$ |
| $\begin{aligned} & \text { 和 } \\ & \text { 敬 } \\ & \text { 刑 } \end{aligned}$ |  |  |  |  |  |  |
| $\begin{aligned} & \text { IJ } \\ & \text { 抄 } \end{aligned}$ |  | $\stackrel{\circ}{6}$ | 8 | $\gtrless$ | N | N |


| 순 번 | 법 령 명 | 조 항 | $\begin{aligned} & \text { 지 정 } \\ & \text { 기 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벗 적 } \\ & \text { 성 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약 칭 } \\ & \text { 여 부 } \end{aligned}$ | 조문내용 |  |  |  |  |  | 소관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체 | 업 무 | 목 적 | 요 건 | 절 차 | 감 독 |  |
| 73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25 | 홍보•조 사-연구 전문기관 |  | - | $\begin{aligned} & \text { 국가 } \\ & \text { 자차 } \end{aligned}$ | - | $\bigcirc$ | 부령 | - | - |  |
| 74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 §27 | 동물용의 <br> 약품 검 <br> 정기관 |  | - | 장관 | - | $\bigcirc$ | - | - | - |  |
| 75 |  | §7 | 등록기관 |  | - | 장관 | - | $\bigcirc$ | 부령 | 부령 | 부령 |  |
| 76 | 말산업 육성법 | §9 | 말산업 <br> 육성전 담 기관 |  | $\bigcirc$ | 장관 | $\bigcirc$ | $\bigcirc$ | 대령 | 대령 | 대령 |  |
| 77 |  | § 17 의 2 | 친환경농 산물 인 증기관 |  | $\bigcirc$ | 장관 | - | - | 부령 |  | 부령 |  |
| 78 |  | § 20 의 5 | $\begin{aligned} & \text { 공시 및 } \\ & \text { 품질 인증 } \\ & \text { 기관 } \end{aligned}$ |  | - | 장관 | - | - | 부령 | $\begin{aligned} & \text { 신ㅊㅓㅓ } \\ & \text { 업추시 } \\ & \text { 청손 } \end{aligned}$ | 부령 |  |

【부 록】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 $\begin{aligned} & \text { 甭 } \\ & \text { 까 } \\ & \text { ㄱ｣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영 } \\ & \frac{1}{1} \\ & \text { 的 } \\ & \mathrm{KH} \end{aligned}$ | НГ 吅 | $\begin{aligned} & \text { 账 자 } \\ & \text { o } \\ & \text { of } \\ & \text { of } \end{aligned}$ | ＇ | ＇ | ＇ | ＇ | ＇ | ＇ |
|  | 市 䀾 |  | $\frac{\text { 砛 }}{\tilde{Z}}$ | \＄${ }_{\text {T10 }}$ | $\frac{\text { 硭 }}{1}$ |  | ＇ |  |
|  | $\begin{aligned} & \text { ㄱ } \\ & \text { 여 } \end{aligned}$ |  | $\frac{\text { 矿 }}{5}$ |  | $\frac{\text { 敬 }}{\tilde{1}}$ | 留 | $\frac{\text { T10 }}{\text { \％}}$ | 矿 |
|  |  |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마 피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overline{\bar{k}} \\ & \mathrm{KF}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蔹 } \end{aligned}$ | $\frac{i \sqrt{\bar{x}}}{\substack{\frac{1}{x}}}$ | $\frac{\stackrel{\rightharpoonup}{\sqrt{x}}}{\sqrt[k]{\frac{k}{k}}}$ |  | $\begin{aligned} & \text { 永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艆 } \end{aligned}$ |
| $\bar{K} 0$ 파 ＂「ர |  | $\bigcirc$ | ＇ | ＇ | ＇ | $\bigcirc$ | ＇ | ＇ |
| K「 ${ }^{2}$巩「0 |  |  | $\frac{\bar{W}^{\circ} 0}{\tilde{y}}$ | 㑑 |  | $\frac{\text { \％}}{\text { \％}}$ |  |  |
|  |  |  |  | 碳 <br> 10） <br> 嘲伹 <br> ra |  | N／0 ${ }^{\circ}$则官啝 |  | 効府衣 |
| $\begin{aligned} & \frac{1}{100} \\ & K-1 \end{aligned}$ |  | $\stackrel{\sim}{\infty}$ | $\begin{aligned} & \text { 哉 } \\ & \stackrel{n}{n} \end{aligned}$ | $\bar{m}$ | $\cdots$ | N | Eos |  |
| $\begin{aligned} & \text { ㅁ0 } \\ & \text { 프 } \\ & \text { 표 } \end{aligned}$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IJ } \\ & \text { 仙 } \end{aligned}$ |  | $\approx$ | $\infty$ | $\bar{\infty}$ | N | $\infty$ | $\infty$ | $\infty$ |


| $\begin{aligned} & \text { 甭 } \\ & \text { Iㅏ } \\ & \text { ㄱ｣ } \\ & \text { <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여 } 0 \\ & \text { ㅎ } \\ & \text { 만 } \\ & \text { K- } \end{aligned}$ | 내「 就 | ＇ | ＇ | ＇ | ， | ＇ | ＇ | ＇ |
|  | 玄 吅 | 礝 | 矿 | 磳 | 礝 | ＇ |  | ＇ |
|  | तJ 여 | $\frac{\text { 留 }}{\text { 2 }}$ | $\bigcirc$ |  | $\frac{\text { 忽 }}{1}$ | ＇ | $\bigcirc$ | $\frac{\text { 矿 }}{\text { \％}}$ |
|  | 지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 | $\bigcirc$ |
|  | 마 | ＇ | ＇ | ＇ | ＇ | ＇ | ＇ | ＇ |
|  | $\overline{\text { K }}$ KF | $\begin{aligned} & \text { 䨗 } \end{aligned}$ | $\stackrel{\text { 露 }}{ }$ |  | $\begin{aligned} & \text { 食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hline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㕻 } \\ & \text { 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露 } \end{aligned}$ |
| $\bar{k} 0$ 파 ＂「Г |  | ＇ | ＇ | ＇ | ＇ | ＇ | $\bigcirc$ | ＇ |
| राँㄷ <br> 刑₹0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죽ㄱ」 } \\ & \bar{K} \bar{n} \end{aligned}$ |  |  |  | 硙 <br> 10） <br> 嘲宊 <br> $\mathrm{F} \boldsymbol{A}$ |  |  | 京则寝非 |  |
| $\begin{aligned} & \frac{1}{100} \\ & \mathrm{KH} \end{aligned}$ |  | $\underset{\sim}{\text { ¢ }}$ | － | $\underset{\sim \infty}{\infty}$ | $\frac{a}{\infty}$ | $\stackrel{9}{+}$ | $\bigcirc$ | － |
| $\begin{aligned} & \text { ㅁ } 0 \\ & \text { 敬 } \\ & \text { 巩 } \end{aligned}$ |  |  |  |  |  |  | $\begin{aligned} & \text { 㺲 } \\ & \text { T] } \\ & \text { 霖 } \end{aligned}$ |  |
| $\begin{aligned} & \text { 피 } \\ & \text { 詣 } \end{aligned}$ |  | $\infty$ | $\stackrel{\infty}{\infty}$ | $\infty$ | ¢ | 8 | Ј | N |


| $\begin{aligned} & \text { 甭 } \\ & \text { 가 } \\ & \text { ㄱ｣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여울 } \\ & \frac{1}{د} \\ & \text { 매 } \\ & \mathrm{KH} \end{aligned}$ | W「 吅 | ＇ | $\begin{aligned} & \text { 마 } \\ & \text { or } \\ & \text { 퍼 } \\ & \text { wot } \end{aligned}$ |  | $\frac{\text { 砍 }}{\tilde{7}}$ | ＇ | 矿 |
|  | 交 和 | ， | $\frac{\text { 麇 }}{}$ |  | $\frac{\text { 留 }}{\tilde{1}}$ | $\frac{\text { 砍 }}{\tilde{T}}$ | $\frac{\text { 矿 }}{\mathcal{Z}}$ |
|  | $\begin{aligned} & \text { T」 } \\ & \text { 여 } \end{aligned}$ | ＇ | $\frac{\text { 砤 }}{\tilde{1}}$ | $\frac{\text { 矿 }}{\text { º }}$ | $\frac{\text { To }}{\tilde{T}}$ | $\bigcirc$ | $\frac{\text { 砤 }}{\tilde{1}}$ |
|  | K ${ }_{\text {K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  | 마 ㅈI | ＇ | ＇ | ＇ | ＇ | 1 | ＇ |
|  | $\begin{aligned} & \overline{\bar{K}} \\ & \mathrm{KF}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栗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水 } \\ & \text { 品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栗 } \end{aligned}$ | $\stackrel{\star+\overline{\bar{x}}}{\substack{\frac{k}{k}}}$ |
| 주ㅇㅏㅏ ＂гர |  |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 |
| K「 ${ }^{\pi}$ <br> 形₹0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K } 0 \text { 対 } \\ & \bar{K} \bar{n} \end{aligned}$ |  |  |  | 形加不 <br>  |  |  |  |
| $\begin{aligned} & \frac{1}{100} \\ & \mathrm{KH} \end{aligned}$ |  | $\stackrel{O}{i \infty}$ | $\begin{aligned} & \text { 귱 } \\ & \underset{-\infty}{0} \end{aligned}$ | $\stackrel{\wedge}{\infty}$ | $\stackrel{0}{\infty}$ | $\stackrel{\infty}{\infty}$ | $\stackrel{\sim}{\infty}$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피 } \\ & \text { < }-1 \end{aligned}$ |  | ু | す | $\approx$ | $\approx$ | 人） | $\stackrel{\sim}{\circ}$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영 } \\ & \frac{1}{1} \\ & \text { 的 } \\ & \mathrm{KH} \end{aligned}$ | 나 加 | ＇ | ＇ | ＇ | ＇ | ＇ |
|  | 玄 㕲 | ＇ | ＇ | ＇ | ＇ | 1 |
|  | $\begin{aligned} & \text { i」 } \\ & \text { 여 } \end{aligned}$ | $\frac{\text { 敬 }}{\text { 2 }}$ | $\frac{\text { 矿 }}{\tilde{z}}$ | $\frac{\text { 敬 }}{7}$ | ＇ | 1 |
|  | $\begin{aligned} & \text { 지 } \\ & \text { 매 } \end{aligned}$ | $\bigcirc$ | $\bigcirc$ | ＇ | $\bigcirc$ | $\bigcirc$ |
|  | 마 | ＇ | ， | $\bigcirc$ | ＇ | ＇ |
|  | $\overline{\text { k }}$ KF | $\begin{aligned} & \text { 水 } \\ & x^{0}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然 } \\ & \text { 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x^{0}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寝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x^{0} \end{aligned}$ |
| 주ㅇㅏㅏ ＂гः |  | ＇ | ， |  | ＇ | 1 |
| K「 K <br> 刑「0 |  |  |  |  |  |  |
| $\begin{aligned} & \text { K } 0 \text { ন」 } \\ & \bar{K} \bar{n} \end{aligned}$ |  |  |  |  |  | 变夜宛弯矿明 |
| $\begin{aligned} & \frac{1}{100} \\ & K-1 \end{aligned}$ |  | $\infty$ | $\cdots$ | $\sim$ | 2 | $\stackrel{\infty}{\infty}$ |
| $\begin{aligned} & \text { ㅁ } 0 \\ & \text { 페 } 0 \\ & \text { 표 } \end{aligned}$ |  |  |  |  |  |  |
| $\begin{aligned} & \text { ㅍ] } \\ & \text { < }-1 \end{aligned}$ |  | \％ | 8 | $\stackrel{\square}{\square}$ | § | ¢ิ |

【부 록】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여 } 0 \\ & \frac{1}{3} \\ & \text { 마니․ } \\ & \text { K- } \end{aligned}$ | 파 吅 | $\frac{\mathrm{K}^{\circ} \mathrm{O}}{\mathrm{x}} \mathrm{HDO}$ | \＄ | $\frac{\text { T10 }}{\text { \％}}$ | $\bar{x}$ |  | $\frac{\text { 菲 }}{\tilde{T}}$ |
|  |  |  | $\frac{4 d y}{2}$ | 礵 |  | $\frac{1}{4}$ | $\delta^{\text {II }}$ |
|  | $\begin{aligned} & \text { त」 } \\ & \text { 여 } \end{aligned}$ | $\bigcirc$ | \＃ᄑ0 | 矿 | \＃10 | \＃\＃1 | $\frac{\text { ¹0 }}{\text { \％}}$ |
|  | $\begin{aligned} & \text { K } \Gamma \\ & \text { 매 } \end{aligned}$ | ＇ | $\bigcirc$ | $\bigcirc$ | ＇ | ＇ | $\bigcirc$ |
|  | 마 | $\bigcirc$ | ＇ | $\bigcirc$ | ＇ | ＇ | ＇ |
|  | ¢ K KF | ＇ | $\frac{H}{2} \frac{\dot{x}}{\frac{1}{2}}$ | $\stackrel{i}{\text { i }}$ |  |  |  |
| 중파 ＂г |  | $\bigcirc$ |  | ＇ | $\bigcirc$ | ＇ | $\bigcirc$ |
| K「 ${ }^{\pi}$刑「0 |  |  |  | $\frac{\text { 亦 }}{\sigma F}$ |  |  |  |
| $\begin{aligned} & \text { 쥭ㄱ। } \\ & \bar{K} \bar{n} \end{aligned}$ |  |  |  |  |  | $\frac{\frac{\text { तं }}{\frac{\pi}{N}}}{\frac{1}{x}}$ | 「非和効哿仆 N10 和叶云 <br>  |
| $\begin{aligned} & 100 \\ & 100 \\ & K-1 \end{aligned}$ |  | $\underset{\infty}{\text { H }}$ |  | $\begin{aligned} & n \\ & 0 \\ & \stackrel{n}{\infty} \\ & \infty \end{aligned}$ | $\infty$ | \％ | $\bar{\sim}$ |
| $\begin{aligned} & \text { 和 } \\ & \text { 敬 } \\ & \text { 刑 } \end{aligned}$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巩 } \\ & \text { 仙 } \end{aligned}$ |  | ¢ | ® | $\stackrel{\circ}{\circ}$ | ¢ | $\stackrel{\infty}{\square}$ | Q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영 } \\ & \frac{1}{د} \\ & \text { 마닌 } \end{aligned}$ | 以「 勍 | ＇ | ＇ | ＇ | ＇ | ＇ |
|  | 交 和 |  | $\begin{aligned} & \text { 留 } \end{aligned}$ |  |  |  |
|  | $\begin{aligned} & \text { ㄱ } \\ & \text { 여 } \end{aligned}$ | $\frac{\text { 碕 }}{}$ | $\begin{aligned} & \text { 留 } \end{aligned}$ | $\bigcirc$ | $\bigcirc$ | $\begin{aligned} & \text { \#10 } \\ & \text { II } \end{aligned}$ |
|  | $\begin{aligned} & \text { 지 } \\ & \text { 마 } \end{aligned}$ | $\bigcirc$ | $\bigcirc$ | ＇ | ＇ | ＇ |
|  | 마 이 | $\bigcirc$ | ＇ | ＇ | ＇ | ＇ |
|  | $\begin{aligned} & \overline{\bar{k}} \\ & \mathrm{KF}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hat{N}^{0}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䨗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text { 品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露 } \end{aligned}$ |
| 주ㅇㅏㅏ ＂г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K0守」 } \\ & \bar{K} \bar{n} \end{aligned}$ |  | 水页而示 <br>  |  |  | lof of六 1 न㖠市 |  |
| $\begin{aligned} & \frac{1}{100} \\ & K-1 \end{aligned}$ |  | $2$ | $\begin{gathered} \text { गु } \\ \text { Oुण } \end{gathered}$ | $\bigcirc$ | $\pm$ | io |
| $\begin{aligned} & \text { 和 } \\ & \text { 敬 } \\ & \text { 刑 } \end{aligned}$ |  |  |  |  |  |  |
| $\begin{aligned} & \text { T」 } \\ & \text { 仙 } \end{aligned}$ |  | $\stackrel{\square}{\square}$ | ヨ | I | $\stackrel{m}{3}$ | $\pm$ |

【부 록】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0$\bar{د}$마KH | 以 勍 | ＇ | ＇ | $\begin{aligned} & \text { 呚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㕃 } \\ & \text { 现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症 } \end{aligned}$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त」 } \\ & \text { 여 } \end{aligned}$ | ＇ | ＇ | \＄10 | \＃ᄑ0 | $\bigcirc$ | $\bigcirc$ |
|  | $\begin{aligned} & \text { K } \Gamma \\ & \text { 매 } \end{aligned}$ | ＇ | $\bigcirc$ | ＇ | $\bigcirc$ | ＇ | ＇ |
|  | 마 | ＇ | ＇ | ＇ | ＇ | $\bigcirc$ | $\bigcirc$ |
|  | $\begin{aligned} & \overline{\bar{k}} \\ & \mathrm{KF} \end{aligned}$ | 垦 | $\frac{\sqrt{\bar{k}}}{\sqrt{\frac{k}{k}}}$ | $\frac{H}{\alpha} \frac{\partial_{\alpha}^{K}}{\alpha} \mu_{0}$ | $\frac{H}{x} \frac{\dot{\alpha}}{x} H_{0}$ | $\begin{aligned} & \text { 水 } \\ & \text { 品 } \end{aligned}$ |  |
| $\bar{K} 0$ 파 ＂「「 |  | ＇ | ＇ | ＇ | $\bigcirc$ | $\bigcirc$ | ＇ |
| र「 ${ }^{\pi}$ <br> 刑「0 |  |  |  |  |  |  |  |
|  |  | خ <br> ＂${ }^{\circ}$砍寝 |  | उए $\bar{K}$ 나육伿 |  |  |  |
| $\begin{aligned} & \frac{1}{100} \\ & K-1 \end{aligned}$ |  | $\stackrel{\text { N }}{\sim}$ | $\stackrel{\infty}{\infty}$ | $\stackrel{\infty}{\infty}$ | $\stackrel{\infty}{\infty}$ | $\underset{\infty}{\infty}$ | $\stackrel{9}{20}$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巩 } \\ & \text { 仙 } \end{aligned}$ |  | $\stackrel{\square}{ }$ | $\stackrel{\square}{=}$ | ミ | $\stackrel{\infty}{\square}$ | ق | 익 |

2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여0 } \\ & \frac{1}{د} \\ & \text { 만 } \\ & \mathrm{KH}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더 마 귝 } \\ & \text { 퍼 } \frac{1}{1} \text { 퍼 } \end{aligned}$ |
|  | 夜 吅 |  | \＄10 | ＇ | ＇ | $\frac{4-1750}{}$ |  |
|  | $\begin{aligned} & \text { तנ } \\ & \text { 여 } \end{aligned}$ | $\bigcirc$ | Wᄁ | $\bigcirc$ | $\bigcirc$ | Wio | Wᄁ |
|  | K「 맏 | ＇ | $\bigcirc$ | ＇ | ＇ | ＇ | ＇ |
|  | 마 | $\bigcirc$ | ＇ | ＇ | ＇ | ＇ | $\bigcirc$ |
|  | $\begin{aligned} & \overline{\bar{k}} \\ & \mathrm{kt}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露 } \end{aligned}$ | $\frac{\sqrt{2} \frac{\bar{k}}{\frac{k}{k}}}{\substack{x}}$ | $\begin{aligned} & \text { 永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霰 } \end{aligned}$ |  | すかり品 <br> 艼った灭 |
| 주ㅇㅏㅏ ＂г |  | ＇ |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K } 0 \text { ন」 } 」 \\ & \bar{K} \bar{n} \end{aligned}$ |  |  |  |  |  | 交酌寝 |  |
| $\begin{aligned} & \frac{1}{100} \\ & K-1 \end{aligned}$ |  | \％ | $\stackrel{\text { N }}{\sim}$ | $\pm$ | $\pm$ | त | $\stackrel{\infty}{\infty}$ |
| $\begin{aligned} & \text { ㅁ } 0 \\ & \text { ㅍN } \\ & \text { 叫 } \end{aligned}$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T」 } \\ & \text { 仙 } \end{aligned}$ |  | ® | ה | $\underset{\sim}{\text { ® }}$ | $\underset{\sim}{4}$ | ๙ | $\stackrel{\square}{7}$ |

【부 록】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 $\begin{aligned} & \text { 甭 } \\ & \text { 가 } \\ & \text { ¢j｣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영 } \\ & \frac{1}{ \pm} \\ & \text { 的 } \\ & \mathrm{KH} \end{aligned}$ | 내 加 | ＇ |  | ＇ | ， |  | ＇ |
|  | 玄 K］ | $\frac{1}{4}$ |  |  | ＇ | $\frac{1}{4}$ | ＇ |
|  | $\begin{aligned} & \text { त」 } \\ & \text { 여 } \end{aligned}$ | \＃ᄑ0 | \＃ᄑㅏ | \＃10 | ＇ | न | 矿 |
|  | 다 맏 | $\bigcirc$ | ， | ＇ | ＇ | $\bigcirc$ | $\bigcirc$ |
|  | 마 ¢ ${ }^{\text {II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overline{\bar{k}} \\ & \mathrm{KF} \end{aligned}$ |  |  | $\begin{aligned} & \text { 水 } \\ & \hline{ }^{0}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hline{ }^{2}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斏 } \end{aligned}$ | $$ |
| $\bar{k} 0$ 파。「П |  | ＇ | $\bigcirc$ | $\bigcirc$ | ＇ | $\bigcirc$ | $\bigcirc$ |
| र「 ${ }^{\pi}$ <br> 刑「0 |  |  |  |  |  |  |  |
| $\frac{\bar{k} 0 \text { 市 }}{\bar{K} \bar{n}}$ |  |  | $\begin{aligned} & \frac{\dot{x}}{\text { 鿬 }} \\ & \text { 则㲾 } \\ & \text { 非 } \end{aligned}$ |  |  |  |  |
| $\begin{aligned} & \frac{1}{100} \\ & \mathrm{KH} \end{aligned}$ |  | $\bar{\infty}$ | $\cdots$ | N | $\stackrel{\sim}{\infty}$ | $\begin{aligned} & \text { N} \\ & \stackrel{\rightharpoonup}{0} \\ & \hline \infty \end{aligned}$ | $\stackrel{5}{\infty}$ |
| $\begin{aligned} & \text { ㅁ } 0 \\ & \text { 페 } \\ & \text { 표 } \end{aligned}$ |  |  | $\begin{aligned} & \text { 㺲 } \\ & \frac{1}{x} \\ & \frac{0}{0}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㺲 } \\ & \text { 示 } \\ & \text { 放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珒 } \\ & \text { 朋 } \\ & \text { 爫 } \end{aligned}$ |  |  |
| $\begin{aligned} & \text { 脜 } \\ & \text { 似 } \end{aligned}$ |  | ㅊ | $\stackrel{\sim}{\sim}$ | ัิ | $\stackrel{\text { ¢ }}{\sim}$ | $\cdots$ | 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여 } 0 \\ & \frac{1}{د} \\ & \text { 마니 } \\ & \text { K- } \end{aligned}$ | Н「 吅 | 砣 | 마 ㅇ⿸广 파 H0 | ＇ | \＄10 | ＇ | $\begin{aligned} & \text { 마 } \\ & 0 \\ & \text { r- } \\ & \text { 거 } \end{aligned}$ | \＄100 |
|  | 夜 吅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ㄱ } \\ & \text { 여 } \end{aligned}$ |  | 褊 | ， | ［矿 | ＇ | Wio | 㯲 |
|  | 지 믿 | $\bigcirc$ | $\bigcirc$ | ＇ | ＇ | $\bigcirc$ | ＇ | $\bigcirc$ |
|  | 마 이 | $\bigcirc$ | $\bigcirc$ | ＇ | ＇ | $\bigcirc$ | $\bigcirc$ | ＇ |
|  | ¢ K KF |  |  | $\begin{aligned} & \text { 亦听丽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text { 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蔹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x^{0}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露 } \end{aligned}$ |
| 중마 ＂г |  | $\bigcirc$ | $\bigcirc$ | ＇ | ＇ | ， | $\bigcirc$ | $\bigcirc$ |
| K「 ${ }^{\pi}$ <br> 巩「0 |  |  |  |  | $\frac{\text { \％}}{\text { \％}}$ |  |  |  |
| $\begin{aligned} & \text { K } 0 \text { ন」 } 」 \\ & \bar{K} \bar{n} \end{aligned}$ |  |  | 六 <br> 酤 <br> 细寝 |  |  |  | － 중则 $\bar{x}$ 示倾亦 | No <br> 0 <br> 出 <br> 市 |
| $\begin{aligned} & \frac{1}{100} \\ & K-1 \end{aligned}$ |  | $\stackrel{\circ}{4 \infty}$ | $\cdots$ | $\underset{\sim}{1}$ | $\stackrel{O}{i}$ | $\cdots$ | － | $\stackrel{\mathrm{N}}{\sim}$ |
| $\begin{aligned} & \text { 和 } \\ & \text { 敬 } \\ & \text { 刑 } \end{aligned}$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IJ } \\ & \text { 抄 } \end{aligned}$ |  | ल | \＃ | $\stackrel{\sim}{n}$ | $\stackrel{\sim}{\sim}$ | － | $\stackrel{\sim}{\sim}$ | $\stackrel{\text { \％}}{ }$ |

232
【부 록】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 $\begin{aligned} & \text { 甭 } \\ & \text { 가 } \\ & \text { 게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영 } \\ & \stackrel{1}{د} \\ & \text { 마 } \\ & \text { KH } \end{aligned}$ | W「 勍 | ＇ |  | ＇ | ＇ | ＇ |
|  | 交 和 |  |  |  |  | $\frac{{ }_{2}^{W}}{x+}$ |
|  | $\begin{aligned} & \text { ㄷ」 } \\ & \text { 여 } \end{aligned}$ | ［ |  | 砣 | ［10 | Wip |
|  | K「 마 |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마 ¢ ${ }^{\text {II }}$ | ＇ | ＇ | ＇ | ＇ | $\bigcirc$ |
|  | $\begin{aligned} & \overline{\bar{k}} \\ & \mathrm{KF}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永 } \end{aligned}$ | $$ |  | $\begin{aligned} & \text { 沝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斏 } \end{aligned}$ |
| 재암。「П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bigcirc$ |
| КГ ${ }^{\pi}$ <br> 巩「0 |  |  |  |  |  |  |
| K0』」$\bar{K} \bar{n}$ |  |  |  |  | $\begin{aligned} & \frac{\text { 霡 }}{1} \\ & \frac{\sqrt{0 \mid 0}}{} \end{aligned}$ |  |
| $\begin{aligned} & \frac{1}{100} \\ & \mathrm{KH} \end{aligned}$ |  | $\frac{2}{\infty}$ | $\stackrel{\rightharpoonup}{\infty}$ | İm | $\stackrel{0}{\infty}$ | $2 \times$ |
| $\begin{aligned} & \text { ㅍ0 } \\ & \text { स } 0 \\ & \text { 焐 } \end{aligned}$ |  |  |  |  |  |  |
| $\begin{aligned} & \text { T」 } \\ & \text { 似 } \end{aligned}$ |  | q | J |  | $\underset{\sim}{\square}$ | $\pm$ |


| 순 번 | 법 령 명 | 조 항 | $\begin{aligned} & \text { 지 정 } \\ & \text { 기 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벅 적 } \\ & \text { 성 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약 칭 } \\ & \text { 여 } \end{aligned}$ | 조문내용 |  |  |  |  |  | 소관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체 | 업 무 | 목 적 | 요 건 | 절 차 | 감 독 |  |
| 145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9 | 지 능 형 로봇제품 품질 인증 기관 |  | $\bigcirc$ | 장관 | - | $\bigcirc$ | 대령 | 대령 | - |  |
| 146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9 | 안전인증 기관 |  | - | 장관 | $\bigcirc$ | $\bigcirc$ | 부령 | $\begin{aligned} & \text { 업뭋젓지 } \\ & \text { ㅊㅊㅇ문 } \end{aligned}$ | $\bigcirc$ |  |
| 147 | 전기공사법 | §19 | 지정교육 훈련기관 | 대행 | $\bigcirc$ | 장관 | - | $\bigcirc$ | 대령 | 췽손 | $\begin{aligned} & \text { 공무원 } \\ & \text { 의 제 } \end{aligned}$ |  |
| 148 |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 §9 | 전문인력 양성기관 |  | - | 정부 | - | $\bigcirc$ | 대령 | - | - |  |
| 149 |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13 | 이러닝제품 인증기관 |  | - | 정부 | - | $\bigcirc$ | 대령 | 대령 | - |  |
| 15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 12 의 2 | 건축물인 증기관 |  | $\bigcirc$ | 장관 | 부령 | - | $\bigcirc$ | - | - |  |
| 151 | 개발-이용 - 보 급 촉진법 | § 12 의 7 | 공급인증 <br> 기관 |  | $\bigcirc$ | 장관 | $\bigcirc$ | $\bigcirc$ | $\bigcirc$ | 업무정지 <br> 취소 | - |  |

【부 록】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235

| 奀가悲－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영 } \\ & \frac{1}{د} \\ & \text { 만 } \\ & \text { K- } \end{aligned}$ | НГ 就 | ＇ | ＇ |  | ＇ | ＇ | ＇ |
|  | 玄 K＾U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 } \\ & \text { 여 } \end{aligned}$ | $\frac{\text { 等 }}{}$ | 留 |  | $\frac{\text { 矿 }}{5}$ | $\frac{\text { 矿 }}{\tilde{T}}$ | $\frac{\text { 砍 }}{\tilde{T}}$ |
|  | K「 맏 | $\bigcirc$ | ， |  | ＇ | ＇ | $\bigcirc$ |
|  | 마 | ＇ | ， |  | ， | ＇ | ， |
|  | $\begin{aligned} & \overline{\bar{k}} \\ & \mathrm{KF}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露 } \end{aligned}$ |  |  |  |  | $\begin{aligned} & \text { 势 } \\ & \hat{x}^{\prime} \end{aligned}$ |
| 주ㅇㅏㅏ ＂г「 |  | ＇ | $\bigcirc$ |  | $\bigcirc$ | $\bigcirc$ | ＇ |
| र「 ${ }^{\pi}$ <br> 巩「0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ㅈㅇㄱㄱ। } \\ & \bar{K} \bar{n} \end{aligned}$ |  |  |  |  |  |  |  |
| $\begin{aligned} & \frac{1}{100} \\ & \mathrm{KH} \end{aligned}$ |  | $\underset{\infty}{\infty}$ | － |  | $\infty$ | $\underset{\infty}{\infty}$ | $\bar{\sim}$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侕 } \\ & \text { 仙 } \end{aligned}$ |  | $\stackrel{\sim}{\sim}$ | i |  | 8 | $\stackrel{\square}{\square}$ | $\underset{\sim}{\square}$ |

2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여우 } \\ & \frac{1}{J} \\ & \text { 더 } \end{aligned}$ | W「 吅 | ＇ | ＇ | ＇ | ＇ | $\begin{aligned} & \bar{x} \text { 가 } \\ & \text { 명 여 } \\ & \bar{x}, ~ ㅇ ㅔ N ~ \end{aligned}$ | ＇ |
|  | 夜 和 | $\frac{\text { 萳 }}{\tilde{T}}$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ㄱ } \\ & \text { 여 } \end{aligned}$ | $\frac{\text { 敬 }}{\tilde{1}}$ | $\bigcirc$ | $\bigcirc$ | $\bigcirc$ | $\frac{\text { 矿 }}{5}$ | ＇ |
|  | K「 미 | ＇ | ＇ | ＇ | ＇ |  | ＇ |
|  | 마 이 | ＇ | ＇ | ＇ | ＇ |  | ＇ |
|  | $\begin{aligned} & \overline{\bar{K}} \\ & \mathrm{KF}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파 } \\ & \mathbf{x}^{2}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text { kno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text { 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永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text { 品 } \end{aligned}$ |  |
| $\bar{k} 0$ 마 ＂г |  |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 राँㄷ焐 $₹ 0$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죽ㄱ } \\ & \bar{K} \frac{1}{n} \end{aligned}$ |  |  |  |  |  |  |  |
| $\begin{aligned} & \frac{1}{100} \\ & K-1 \end{aligned}$ |  | $\underset{\infty}{\infty}$ | $\frac{n}{\infty}$ | $\frac{2}{2}$ | N | $\mathrm{N}_{\infty}$ | $\frac{2}{2}$ |
| $\begin{aligned} & \text { ㅁ } 0 \\ & \text { 꾸 } 0 \\ & \text { 吅 } \end{aligned}$ |  |  |  |  |  |  | $\begin{aligned} & \frac{\text { 矿 }}{K} \\ & \frac{T}{\bar{J}}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TJ } \\ & \text { 倛 } \end{aligned}$ |  | $\stackrel{0}{6}$ | G | $\because$ | $\bigcirc$ | － | $\stackrel{\circ}{\circ}$ |

237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영 } \\ & \frac{1}{1} \\ & \text { 마- } \\ & \mathrm{KH} \end{aligned}$ | 내「 吅 |  | ＇ | ＇ | $\begin{aligned} & \text { 硕 } \\ & \frac{\bar{x}}{\text { In }} \end{aligned}$ |  |
|  | 夜 相 |  |  |  | $\begin{aligned} & \text { 呮雨 } \end{aligned}$ | 파 |
|  | $\begin{aligned} & \text { i」 } \\ & \text { 여 } \end{aligned}$ | $\bigcirc$ | Wio | Wix | $\frac{\text { 駝雨 }}{}$ | \＄10 |
|  | 자 | ＇ | $\bigcirc$ | ＇ | $\bigcirc$ | $\bigcirc$ |
|  | 마 | ＇ | ＇ | ＇ | ＇ | ＇ |
|  | $\overline{\text { k }}$ KF | $\begin{aligned} & \text { 浻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斏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然 } \\ & \text { 品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郞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婩 } \\ & \text { 和 } \end{aligned}$ |
| 주ㅇㅏㅏ ＂гः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bigcirc$ |
| K「 K巩「0 |  |  |  |  |  | $\begin{aligned} & \frac{\pi_{0} 0}{1} \\ & \frac{1}{\tau}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K } 0 \text { ন」 } \\ & \bar{K} \bar{n} \end{aligned}$ |  |  | 矿近 <br>  <br>  |  |  |  |
| $\begin{aligned} & \frac{1}{100} \\ & \mathrm{KH} \end{aligned}$ |  | N | $\underset{\sim}{m}$ | $\bar{\infty}$ | $\frac{\text { N }}{\substack{0 \\ \hline}}$ | $\begin{aligned} & \text { N } \\ & \text { of } \\ & \infty \\ & \infty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ㅁ } 0 \\ & \text { 페 } 0 \\ & \text { 표 } \end{aligned}$ |  |  |  |  |  |  |
| $\begin{aligned} & \text { TJ } \\ & \text { 性 } \end{aligned}$ |  | \％ | 은 | ミ | N | $\cong$ |

【부 록】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O\#\#0 } \\ & \bar{د} \\ & \text { 姑 } \\ & \mathrm{KH} \end{aligned}$ | 낻 勍 | $\begin{aligned} & \text { of } \\ & \bar{\pi}^{\circ} \\ & \Gamma \\ & \Pi \square \end{aligned}$ | $\frac{\text { सम० }}{\frac{\text { po }}{j}}$ | $\begin{aligned} & \text { 파 } \\ & \text { 파 } \end{aligned}$ |  | $\frac{H}{K} \frac{H T}{N}$ | $\frac{\text { सम० }}{\frac{10}{1}}$ |
|  | 衣 䙺 | \＄10 파 |  |  |  | $\begin{aligned} & \text { 파 } \\ & \text { 파 } \end{aligned}$ | $\frac{\text { सम० }}{\frac{\text { po }}{1}}$ |
|  | $\begin{aligned} & \text { ㄱ } \\ & \text { 여 } \end{aligned}$ | \＄10 파 | $\begin{aligned} & \text { सु० } \\ & \text { 파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तुण } \\ & \text { 파 } \end{aligned}$ | $\frac{\text { 斒 }}{\tilde{T}}$ | $\bigcirc$ | $\frac{\text { 卡 }}{\tilde{1}}$ |
|  | $\begin{aligned} & \text { ㄷ } \\ & \text { 머 } \end{aligned}$ | $\bigcirc$ | $\bigcirc$ | $\bigcirc$ | 1 | $\bigcirc$ | ＇ |
|  | 마 이 | ＇ | ＇ | ＇ | 1 | ＇ | 1 |
|  | $\begin{aligned} & \bar{k} \\ & \mathrm{KF}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寝 } \\ & \hat{k}^{\circ}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㲾 } \\ & \vec{k}^{0}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鬲 } \\ & \stackrel{1}{0}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hat{N}^{\circ}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hat{N}^{\circ}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水 } \\ & \text { 碞 } \end{aligned}$ |
| $\bar{K} 0$ 마 <br> 茴「 |  | $\bigcirc$ | $\bigcirc$ | ＇ | $\bigcirc$ | $\bigcirc$ | 1 |
|  |  | $\frac{7_{10}}{\frac{1}{y}}$ |  |  |  |  |  |
| 反0「」$\bar{K} \bar{n}$ |  |  |  |  | 和 $\frac{1}{x}$ <br> 烟 <br> 下0 त的 <br> 夜 $\frac{\pi}{\lambda}$ |  | 检 ${ }^{\circ}$ <br> 夜市 |
| $\begin{aligned} & \frac{1}{100} \\ & \mathrm{KH} \end{aligned}$ |  | $\begin{aligned} & N \\ & \stackrel{N}{+} \\ & \underset{\infty}{+\infty} \end{aligned}$ | $\stackrel{\sim}{\infty}$ | $\stackrel{\rightharpoonup}{\infty}$ | $\frac{m}{\infty}$ | $\frac{\infty}{\infty}$ | $\stackrel{N}{\infty}$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T」 } \\ & \text { 性 } \end{aligned}$ |  | さ | in | $\stackrel{\bigcirc}{\square}$ | 츤 | $\stackrel{\infty}{ \pm}$ | 2 |

239

| 순 번 | 법 령 명 | 조 항 | $\begin{aligned} & \text { 지 정 } \\ & \text { 기 관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ㅂㅓㅓ 적 } \\ & \text { 성 격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약 칭 } \\ & \text { 여 } \end{aligned}$ | 조문내용 |  |  |  |  |  | 소관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체 | 업 무 | 목 적 | 요 건 | 절 차 | 감 독 |  |
| 180 | 토양환경보전법 | § 23 의 2 | 토양관련 전문기관 |  | - | 장관 | - | - | 대령 | $\begin{aligned} & \text { 업뭋젓지 } \\ & \text { ㅊㅊㅇ문 } \end{aligned}$ | 권리의무 |  |
| 18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5의 3 | 고형연료 <br> 제 품 의 <br> 품질 인 <br> 증기관 |  | 0 | 장관 | - | - | - | - | - |  |
| 182 | 자연환경보전법 | §59의 2 | 자연환경 해 설 사 양성기관 |  | $\bigcirc$ | 장관 | - | $\bigcirc$ | 부령 | 취소 | - |  |
| 183 |  | §31 의 2 | 인증시험 대행기관 |  | $\bigcirc$ | 장관 | - | $\bigcirc$ | 부령 | $\begin{aligned} & \text { 업문젓지 } \\ & \text { 최손 } \\ & \text { 순 } \end{aligned}$ | - |  |
| 184 |  | §45 | 소 음 도 검사기관 | 대행 | - | 장관 | - | - | 대령 | $\begin{aligned} & \text { 업뭄저ㅅㅣㅣ } \\ & \text { 청문 } \\ & \hline \end{aligned}$ | - |  |
| 185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14 | 유해화학 물질 시 험기관 |  | - | 장관 | - | $\bigcirc$ | 부령 | $\begin{aligned} & \text { 업무ㅊㅓㅓㅅㅈㅣ } \\ & \text { 췅문 } \end{aligned}$ | 평가 <br> 보고 |  |

240
【부 록】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 $\begin{aligned} & \text { 奀 } \\ & \text { 파 } \\ & \text { ㄹ․ } \\ & \text { < } \end{aligned}$ |  |  |  |  |  |  |  | $\begin{aligned} & =\sqrt{1} \\ & \text { y } \\ & 0 \text { ovt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영 } \\ & \frac{1}{ \pm} \\ & \text { 的 } \\ & \mathrm{KH}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少 } \\ & \text { 现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尛 } \\ & \hline \end{aligned}$ |
|  | 京 和 | 砣 | ［100 |  | ＇ | ＇ |  |  |
|  | 「」 | $\frac{\text { 矿 }}{}$ | Wio | $\bigcirc$ | ＇ | ＇ |  | ＇ |
|  | 자 마 | $\bigcirc$ | ＇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마 | ＇ | ＇ | $\bigcirc$ | ， | ＇ | ＇ | $\bigcirc$ |
|  | ¢ KF | 哭 | $\begin{aligned} & \text { 水 } \\ & \hline{ }^{2} \end{aligned}$ | 䬰 |  |  |  | $\begin{aligned} & \frac{\text { 何 }}{\frac{0}{01}} \\ & \frac{1}{\sigma 1} \end{aligned}$ |
| $\bar{k} 0$ 파 ＂「「 |  | $\bigcirc$ | $\bigcirc$ | ＇ | ＇ | ＇ | $\bigcirc$ | ＇ |
| K「 ${ }^{\pi}$ <br> 刑「0 |  |  |  |  |  | 㐫 |  |  |
| $\begin{aligned} & \text { 쥭ㄱ। } \\ & \bar{K} \bar{n} \end{aligned}$ |  |  |  | 交 짜 霡 |  |  |  |  |
| $\begin{aligned} & \frac{1}{100} \\ & \mathrm{KH} \end{aligned}$ |  | － | $\stackrel{4}{4}$ | $\underset{\sim \infty}{\infty}$ | N | $\bigcirc$ | 20 | $\begin{aligned} & \text { m } \\ & \text { on } \\ & \text { in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和 } \\ & \text { 敬 } \\ & \text { 矿 } \end{aligned}$ |  |  |  |  | $\begin{aligned} & \text { 矿 } \\ & \frac{\text { ITJ }}{N} \\ & \frac{1}{N} \\ & \frac{\pi}{K} \end{aligned}$ |  |  | $\bar{\sigma}$ Ho man 10ㅓㅓㅔ 퍼 夜 퍼 각 ko |
| $\begin{aligned} & \text { 巩 } \\ & \text { 仙 } \end{aligned}$ |  | $\otimes$ | $\stackrel{\infty}{\infty}$ | $\infty$ | $\infty$ | 8 | $\bar{\square}$ | 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여0 } \\ & \frac{1}{J} \\ & \text { 만․ } \\ & \text { K- } \end{aligned}$ | 내「 勍 | ＇ |  | $\begin{aligned} & \text { 끼 } \\ & \text { 파 } \end{aligned}$ | 砣 | ＇ | ＇ |
|  | 衣 K冗U |  | － |  |  | $\begin{aligned} & \text { आूo } \\ & \text { 파 } \end{aligned}$ |  |
|  | $\begin{aligned} & \text { ㄷ」 } \\ & \text { 여 } \end{aligned}$ | $\bigcirc$ | Tio | 矿近 | 留 | ［矿 | ［矿 |
|  | $\begin{aligned} & \text { K「 } \\ & \text { 마 } \end{aligned}$ | ＇ | $\bigcirc$ |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마 | ＇ | ＇ | ＇ | ＇ | ＇ |  |
|  | $\overline{\bar{k}}$ KF | $\begin{aligned} & \frac{\text { 霍 }}{} \end{aligned}$ | $\begin{aligned} & \overrightarrow{\hat{N}_{0}^{0}} \\ & \bar{x}^{0} \end{aligned}$ | $\begin{aligned} & \overrightarrow{k_{0}^{0}} \\ & \hat{x}^{2} \end{aligned}$ | $\begin{aligned} & \overrightarrow{k_{0}^{0}} \\ & \bar{x}^{0} \end{aligned}$ | $\begin{aligned} & \dot{K}^{2} \circ \frac{H}{2} \frac{1}{x} \end{aligned}$ |  |
| K0까 <br> 片 |  | $\bigcirc$ | $\bigcirc$ | ＇ | $\bigcirc$ | $\bigcirc$ | ＇ |
|  |  |  |  | 㐫 |  |  |  |
| $\frac{\bar{k} 0 \text { 対 }}{\bar{K} \bar{n}}$ |  |  | 而 <br> 政 <br>  | 䏚啊 的「न |  | of <br> तन <br> 啊 | of <br> 下A <br> 마 和 $\frac{1}{\pi}$ |
| $\begin{aligned} & \frac{1}{100} \\ & \mathrm{KH} \end{aligned}$ |  | $\begin{aligned} & n \\ & 0 \\ & 0 \\ & \infty \\ & \infty \end{aligned}$ | $\pm$ | $\infty_{\infty}^{\infty}$ | $\stackrel{\circ}{\infty}$ | $\stackrel{\text { N }}{\substack{\text { of }}}$ | \％ |
| $\begin{aligned} & \text { 和 } \\ & \text { 敬 } \\ & \text { 刑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㺲 } \\ & \frac{1}{1} \end{aligned}$ |  |  |  |  |  |
| $\begin{aligned} & \text { TJ } \\ & \text { 仙 } \end{aligned}$ |  | $\stackrel{\sim}{\Omega}$ | \％ | $\approx$ | $\stackrel{\circ}{\circ}$ | ล | $\stackrel{\circ}{\sim}$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영 } \\ & \frac{1}{1} \\ & \text { 的 } \\ & \mathrm{KH} \end{aligned}$ | L ${ }_{\text {「 }}$ 加 | ＇ | ＇ | ＇ | $\begin{aligned} & \text { ㄲo } \\ & \text { 파 } \end{aligned}$ |  |
|  | 交 和 | ＇ | ＇ | ＇ | $\begin{aligned} & \text { 磂 } \end{aligned}$ |  |
|  | $\begin{aligned} & \text { ㄷ } \\ & \text { 여 } \end{aligned}$ | $\frac{\text { 郦 }}{\text { 2 }}$ | $\frac{\text { 碕 }}{}$ | $\frac{\text { 矿 }}{\text { ºn }}$ | $\begin{aligned} & \text { 磁 } \\ & \hline \end{aligned}$ | \＄ |
|  | $\begin{aligned} & \text { 지 } \\ & \text { 마 } \end{aligned}$ |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마 지 | ＇ | $\bigcirc$ | $\bigcirc$ | ， | ＇ |
|  | $\begin{aligned} & \overline{\bar{k}} \\ & \mathrm{KF} \end{aligned}$ | $\begin{aligned} & \overrightarrow{\hat{N}_{0}^{0}} \\ & \bar{x}^{2} \end{aligned}$ | $\begin{aligned} & \stackrel{\rightharpoonup}{\mathrm{N}_{0}} \end{aligned}$ | $\begin{aligned} & \overrightarrow{\hat{k}_{0}^{0}} \\ & \hat{x}^{2} \end{aligned}$ | $\begin{aligned} & \overrightarrow{\hat{k}_{0}^{0}} \\ & \hat{x}^{2} \end{aligned}$ | $\begin{aligned} & \overrightarrow{k_{0}^{0}} \\ & \overrightarrow{x_{0}} \end{aligned}$ |
| 재암 ○「П |  | ＇ | ＇ | ＇ | ＇ | $\bigcirc$ |
| K「 ${ }^{1}$形 $<0$ |  |  | $\frac{\text { 莅 }}{F}$ | $\frac{\text { 㐫 }}{\frac{1}{o r}}$ | $\frac{\stackrel{i}{~}}{\frac{1}{\sigma}}$ |  |
| $\begin{aligned} & \text { К0ゥ｣ } \\ & \bar{K} \bar{n} \end{aligned}$ |  |  | 寝宊烟 析明 स |  | 叶 겨 <br> 苋 os of |  |
| $\begin{aligned} & \frac{1}{100} \\ & K-1 \end{aligned}$ |  | － | a | $\stackrel{0}{0}$ | ¢ | $\underset{\sim}{\text { f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IJ } \\ & \text { 俱 } \end{aligned}$ |  | 2 | $\stackrel{\text { ® }}{ }$ | $\stackrel{\rightharpoonup}{\sim}$ | ત̃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영 } \\ & \frac{1}{د} \\ & \text { 마닌 } \end{aligned}$ | 以「 勍 |  | ＇ | ＇ | ＇ |
|  | 玄 则 | $\begin{aligned} & \text { od, dio } \\ & \text { Wio } \end{aligned}$ | ＇ |  | ＇ |
|  | $\begin{aligned} & \text { तנ } \\ & \text { 여 } \end{aligned}$ | ［ᄑㄲ | ＇ | $\frac{\text { 敬 }}{7}$ | 1 |
|  | $\begin{aligned} & \text { 지 } \\ & \text { 마 } \end{aligned}$ | ＇ | ＇ | $\bigcirc$ | $\bigcirc$ |
|  | $\begin{aligned} & \text { 마 } \\ & \text { 이 } \end{aligned}$ | ＇ | ＇ | ＇ | ＇ |
|  | $\begin{aligned} & \overline{\bar{k}} \\ & \mathrm{KF} \end{aligned}$ | $\begin{aligned} & \overrightarrow{\hat{k}_{0}^{0}} \\ & \mathrm{x}^{2}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倠 } \end{aligned}$ |  | $\begin{aligned} & \overrightarrow{\hat{k}_{0}^{0}} \\ & \hat{x}^{2} \end{aligned}$ |
| 주ㅇㅏㅏ ＂г |  | ＇ | ＇ | $\bigcirc$ | ＇ |
| K「 ${ }^{\pi}$ <br> 刑「0 |  |  |  | $\begin{aligned} & \frac{\pi_{0}^{0}}{\tilde{T}} \end{aligned}$ | $\begin{aligned} & \frac{\pi_{0} 0}{1} \\ & \frac{1}{\tau} \end{aligned}$ |
| $\frac{\text { K } 0 \text { 所」 }}{\bar{K} \bar{n}}$ |  |  |  | ${ }^{7}{ }^{7}{ }^{\circ}$ No | 衣下的晾衣页页唯 |
| $\begin{aligned} & 100 \\ & 100 \\ & K-1 \end{aligned}$ |  | $\begin{gathered} \infty \\ 0 \\ 0 \\ \infty \end{gathered}$ | $\underset{\infty}{\infty}$ | $\begin{aligned} & \text { NT } \\ & \underset{\infty}{\infty}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m } \\ & 0 \\ & 0 \\ & \infty \\ & 0 \end{aligned}$ |
|  |  | $\begin{aligned} & \text { 㺲 } \\ & \text { 鿬 } \\ & \text { 퍼 } \\ & \frac{10}{10} \\ & \text { 낭 } \end{aligned}$ |  |  <br> o下 何夜夜 <br> ofm of <br>  <br> ㅈㅇ 可 征 <br> 市研页 <br> 衣 |  |
| $\begin{aligned} & \text { T」 } \\ & \text { 仙 } \end{aligned}$ |  | $\stackrel{ \pm}{\text { ® }}$ | べ | $\stackrel{\circ}{\circ}$ | － |

【부 록】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여 } 0 \\ & \frac{1}{د} \\ & \text { 마 } \\ & \mathrm{KH} \end{aligned}$ | 以「 勍 |  | ＇ | ＇ | ＇ | ＇ | ＇ |
|  | 玄 吅 | 矿 | ＇ | $\frac{\text { 矿 }}{\tilde{T}}$ | $\frac{\text { 烪 }}{\tilde{1}}$ | ＇ | ז |
|  | $\begin{aligned} & \text { तנ } \\ & \text { 여 } \end{aligned}$ | $\stackrel{\text { ¹0 }}{\text { ¹ }}$ | ＇ | 矿 | 留 | ＇ | 不 ${ }^{\text {¢ }}$ |
|  | K「 맏 | $\bigcirc$ | $\bigcirc$ |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마 | ＇ | $\frac{\text { \＃0 }}{\text { ¹ }}$ | 1 | $\bigcirc$ | ＇ | ＇ |
|  | $\begin{aligned} & \overline{\bar{k}} \\ & k \mid \end{aligned}$ |  |  |  | $\begin{aligned} & \overrightarrow{k_{0}} \\ & \vec{k} 0 \end{aligned}$ | $\begin{aligned} & \frac{1}{k_{0}} \\ & \hat{x}^{2} \end{aligned}$ |  |
| 중마 ＂г |  | ＇ | ＇ | 1 | $\bigcirc$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K0ㄷ｣ } \\ & \bar{K} \bar{n} \end{aligned}$ |  |  |  |  |  |  |  |
| $\begin{aligned} & \frac{1}{100} \\ & K-1 \end{aligned}$ |  | 安 | 4 | $\stackrel{9}{4}$ | $\infty$ | $\bar{\square}$ | $\pm$ |
| $\begin{aligned} & \text { 和 } \\ & \text { 敬 } \\ & \text { 刑 } \end{aligned}$ |  |  |  |  |  |  |  |
|  |  | $\stackrel{\sim}{\sim}$ | ¢ | $\stackrel{i}{\sim}$ | $\bar{\sim}$ | $\stackrel{\text { N}}{\sim}$ | $\stackrel{\sim}{\sim}$ |

245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여우 } \\ & \frac{1}{د} \\ & \text { 머 } \end{aligned}$ | 낟 吅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파 } \\ & \text { 파 } \end{aligned}$ |
|  | 夜 的 | ＇ | $\frac{\text { 和 }}{\overline{1}}$ |  | ＇ | $\frac{1}{4}$ |
|  | $\begin{aligned} & \text { i」 } \\ & \text { 여 } \end{aligned}$ | ＇ | $\frac{\text { 矿 }}{7}$ | 谳 | $\frac{\text { 敬 }}{7}$ | \＄10 |
|  | $\begin{aligned} & \text { 지 } \\ & \text { 마 } \end{aligned}$ | ＇ | ＇ | ＇ | ＇ | $\bigcirc$ |
|  | 마 | $\begin{aligned} & \text { र or } \\ & \text { 가 or } \end{aligned}$ | $\bigcirc$ | $\bigcirc$ | ＇ | ＇ |
|  | $\begin{aligned} & \overline{\bar{k}} \\ & \mathrm{KF} \end{aligned}$ | $\stackrel{\text { k }}{\substack{\text { ² }}}$ | $\begin{aligned} & \overrightarrow{\hat{N}_{0}^{0}} \\ & \bar{x}^{2} \end{aligned}$ | $\begin{aligned} & \frac{1}{\mathrm{k}_{0}} \\ & \mathrm{~N}^{2} \end{aligned}$ | $\begin{aligned} & \overrightarrow{\hat{R}_{0}^{\prime}} \\ & \overrightarrow{k N o} \end{aligned}$ |  |
| 즈ㅁㅏㅏ ＂г |  | $\bigcirc$ | $\bigcirc$ | ＇ | ＇ | $\bigcirc$ |
| K「 K刑「0 |  |  |  |  | 碰 |  |
| $\begin{aligned} & \text { K } 0 \text { न｣ } \\ & \bar{K} \bar{n} \end{aligned}$ |  |  K० 万o of k <br>  | H उ㖠 $\frac{\text { 俞 }}{\text { N }}$ | K K K |  | 叶 狩万市 <br>  |
| $\begin{aligned} & 100 \\ & \mathrm{KH} \end{aligned}$ |  | $\stackrel{n}{\infty}$ | N | N | $\begin{aligned} & \text { N } \\ & \text { on } \\ & \text { in } \end{aligned}$ | $\stackrel{\text { No }}{\stackrel{N}{\infty}}$ |
| $\begin{aligned} & \text { ㅁ } 0 \\ & \text { 피 } 0 \\ & \text { 표 } \end{aligned}$ |  |  |  | $\begin{aligned} & \text { 玵 } \\ & \text { 明 } \\ & =1 \end{aligned}$ |  |  |
| $\begin{aligned} & \text { IJ } \\ & \text { 性 } \end{aligned}$ |  | $\stackrel{ \pm}{\sim}$ | $\stackrel{n}{n}$ | $\stackrel{\square}{\sim}$ | $\stackrel{\text { N }}{ }$ | $\stackrel{\infty}{\sim}$ |

246
【부 록】 현행 법령상 지정기관제도의 입법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영 } \\ & \frac{1}{د} \\ & \text { 매 } \\ & \mathrm{KH} \end{aligned}$ | НГ 就 | $\begin{aligned} & \text { \$10 } \\ & \text { 파 } \end{aligned}$ | ＇ | ＇ | ＇ | ＇ |
|  | K 䙺 |  | $\frac{k_{1}}{k+}$ | $\frac{\text { 和 }}{\ddagger}$ |  | $\begin{aligned} & \text { 마 } \\ & =-{ }_{k} 0 \end{aligned}$ |
|  | $\begin{aligned} & \Gamma\rfloor \\ & \text { 겨 } \end{aligned}$ | $\frac{\text { 站 }}{1+1}$ | $\frac{\text { 和 }}{\tilde{\top}}$ | $\frac{\text { 站 }}{1+1}$ | $\frac{\text { 和 }}{\underline{1}}$ | $\frac{\text { 和 }}{\frac{1}{2}}$ |
|  | $\begin{aligned} & \text { ㄷ } \\ & \text { 머Г } \end{aligned}$ | 1 | $\bigcirc$ | 1 | ＇ | 1 |
|  | 마 | ＇ | ＇ | $\bigcirc$ | ＇ | $\bigcirc$ |
|  | $\begin{aligned} & \overline{\bar{k}} \\ & \mathrm{~K} \end{aligned}$ | $\begin{aligned} & \dot{k}^{0} \\ & \mathbb{N}^{0} \end{aligned}$ | $\begin{aligned} & \frac{1}{k_{0}} \\ & \mathbb{N}_{0} \end{aligned}$ | $\begin{aligned} & \dot{k}^{0} \\ & \mathbb{N}^{0} \end{aligned}$ | $\begin{aligned} & \frac{1}{k_{0}} \\ & \bar{x}^{0} \end{aligned}$ | $\begin{aligned} & \frac{1}{x_{0}} \\ & \bar{x}^{0} \end{aligned}$ |
| $\begin{aligned} & \bar{K} 0 \text { 파 } \\ & \text { 吅 } \end{aligned}$ |  | 1 |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  |  |  | 宙 |  | 橆 |
| K0币」$\bar{K} \bar{n}$ |  |  |  |  |  |  |
| $\begin{aligned} & \frac{1}{100} \\ & \mathrm{KH} \end{aligned}$ |  | $\begin{aligned} & N \\ & \tilde{N} \\ & \infty \\ & \infty \\ & \infty \end{aligned}$ | $\frac{n}{\infty}$ | $\frac{0}{\infty}$ | $\pm$ | $\underset{\infty}{\mathcal{F}}$ |
| $\begin{aligned} & \text { ㅍㅁ0 } \\ & \text { 垤 } \\ & \text { 표 } \end{aligned}$ |  |  |  |  |  |  |
| $\begin{aligned} & \text { T」 } \\ & \text { 似 } \end{aligned}$ |  | $\stackrel{2}{\sim}$ | 슷 | ત̇ | N | N |


[^0]:    1) 이와 같이 학문상의 개념에 해당하는 허가•특허는 실정법상 지정•승인•면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김동희, 행정작용법, 박영사, 2005, 34, 42, 48면 참조.
    2) 지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정의) 제 2 항에서는 "민원사무"로서,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승인 • 지정 • 인정 • 추천•시험 • 검사 • 검정 등의 신청,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 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등을 들고 있다.
    3) 이에 관한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임병수, 지정제도에 관한 입법례 연구, 법제연구 총서•법제개선자료 제3집(법제처, 1996), 64-95면 ; 오준근, 「지정」제도의 입법구조
[^1]:    분석, 월간법제 2002년 6월호, 14-31면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전자를 "임병수, 지정제도(1996)"로, 후자를 "오준근, 지정제도(2002)"로 인용한다.

[^2]:    4）신보성，사인에의 행정권한위임의 법적 고찰，법조 제49권 제7호（2000），77면 참조．
    5）대표적인 연구로는 米丸恒治，私人による行政，日本評論社， 1999 ；325－375頁；김명용，

[^3]:    13) 오준근, 지정제도(2002), 18 면 참조.
[^4]:    2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1974년 12월 26 일에 제정된 항공기운항안전법 (법률 제2742호)이 2002년 8월 26일의 전부개정으로 법률명 등이 변경되었다.
[^5]:    23)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경우, 2002년 1 월 14 일에 제정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 전법(법률 제6603호)이 2010년 6월 10일의 전부개정(법률 제10369호)으로 법률명 등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6]:    28）米丸恒治，私人による行政（전게），347頁 참조．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서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자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제1항）고 하 여，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은 합법성의 감독에 국한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반대해석하는 경우，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합목적성의 감독까지 미친 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7]:    30)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과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 등"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강학상의 행정행위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인가의 여부 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신보성, 사인에의 행정권한위임의 법적 고찰, 법조 제49권 제7호(2000), 89-90면 참조.
[^8]:    32) 신보성, 사인에의 행정권한위임의 법적 고찰(전게), 91-92면 참조.
